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67-10

통계청승인번호 11767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3
2. 법적근거	3
3. 자료수집과정	4
4. 자료분석	4
5. 주요내용	4

제2장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1) 전체 신고접수	9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12
3) 신고자 유형	16
4) 신고접수 및 인지경로 유형	19
2. 노인학대 상담	22
1) 월별 상담횟수	22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23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26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28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30
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33

제3장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37
2. 사례판정	40



제4장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47
1) 학대피해노인 성별	47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7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48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0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1
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52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53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54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55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55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56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56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57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60
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62
2. 학대행위자 현황	65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65
2) 학대행위자 지역 및 기관별 분포	66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68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72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73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74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75
8) 학대행위자 장애 및 중독유형	75
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77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79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79

CONTENT

제5장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80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3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84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84
6)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노인학대 유형	85
7) 학대발생장소	86
8) 학대발생빈도	87
9) 학대지속기간	88
10)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89
11)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90
12)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93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현황	99
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99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100
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101
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102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104
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104
2. 재학대 현황	105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105
2) 재학대 신고자유형	107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	109
4) 재학대 사례판정	110
5)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111
6) 재학대 행위자 유형	113
7) 재학대 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동거여부	114
8)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15



9) 재학대 발생장소	115
10)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117
11)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18
12) 재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대	119
13)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121
14)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121
3. 노인단독가구 현황	121
1)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121
2) 지역별 노인단독가구 현황	122
3)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124
4)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125
5)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26
6)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126
7)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127
8)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	128
9)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29
10)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30
11)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131
12)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132
13)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132
14)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32
1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기간별 노인학대 유형	133
16)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134
17)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134
4. 시설학대 현황	135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35
2) 시설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38
3)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39
4)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41

CONTENT

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42
6)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43
7) 시설학대 학대 유형	145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46
9)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46
1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7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147
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147
2)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148
3)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150
4)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152
5)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152
6)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153
7)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3
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153
9)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154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	155
1)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5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156
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56
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57
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58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58



제6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61
1) 보호노인 현황	161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163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163
4) 보호노인 가구형태	164
5) 보호노인 주거형태	165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166
7) 보호노인 치매여부	167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167
9) 퇴소 후 거주 현황	168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168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170

제7장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8년)

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173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174
3. 연도별 신고자 구분	175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177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178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179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180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181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82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83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86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87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89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0

CONTENT

제8장 결론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1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92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95
1) 신고접수 건수	195
2) 신고자 유형	196
3) 상담횟수	197
2.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197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97
2) 학대피해노인 현황	200
3) 학대행위자 현황	203
3.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204
1)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사례	204
2) 재학대	205
3) 노인단독가구 현황	207
4) 시설학대 현황	207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208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209

제9장 부록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13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14



[표 2-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10
[표 2-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11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12
[표 2-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14
[표 2-5] 신고자 유형 I	17
[표 2-6]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18
[표 2-7]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19
[표 2-8] 신고접수 경로	19
[표 2-9] 신고접수 유형	20
[표 2-10] 신고 인지경로 유형별 신고자 구분	21
[표 2-11] 월별 상담횟수	22
[표 2-1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24
[표 2-1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26
[표 2-1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28
[표 2-1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31
[표 2-1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33
[표 3-1] 현장조사	37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38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41
[표 3-4]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	43
[표 3-5] 신고자 유형별 사례판정 결과	44
[표 4-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47
[표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48
[표 4-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48
[표 4-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0
[표 4-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1
[표 4-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52
[표 4-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53
[표 4-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53

표목차

[표 4-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54
[표 4-10]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55
[표 4-11]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55
[표 4-12]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56
[표 4-13]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56
[표 4-14]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57
[표 4-15]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58
[표 4-16]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59
[표 4-17]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60
[표 4-18]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60
[표 4-19]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61
[표 4-2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63
[표 4-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65
[표 4-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66
[표 4-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68
[표 4-24]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69
[표 4-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70
[표 4-26]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71
[표 4-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72
[표 4-28]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73
[표 4-29]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73
[표 4-3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연령대	74
[표 4-31]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74
[표 4-32]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75
[표 4-33]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76
[표 4-34]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77
[표 4-35]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77
[표 4-3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0
[표 4-37]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80



[표 4-38]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82
[표 4-39]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3
[표 4-40]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84
[표 4-41]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85
[표 4-42]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노인학대 유형	86
[표 4-43]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87
[표 4-44] 학대발생빈도	88
[표 4-45] 학대지속기간	88
[표 4-46]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89
[표 4-47] 학대행위자 원인	91
[표 4-48]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92
[표 4-49] 가족 - 환경 원인	93
[표 5-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99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100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101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103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104
[표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104
[표 5-7]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105
[표 5-8] 신규 - 재학대 신고자 유형	108
[표 5-9]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09
[표 5-10]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110
[표 5-11]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111
[표 5-12]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112
[표 5-13] 재학대 행위자 유형	113
[표 5-14]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여부(학대행위자수 기준)	114
[표 5-15]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15
[표 5-16]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116
[표 5-17] 재학대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6

표목차

[표 5-18]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117
[표 5-19]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18
[표 5-20]	재학대 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19
[표 5-21]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119
[표 5-22]	연령별 재학대 행위자 유형	120
[표 5-23]	재학대 행위자 증독 유형	121
[표 5-24]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121
[표 5-25]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122
[표 5-26]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현황	122
[표 5-27]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124
[표 5-28]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125
[표 5-29]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26
[표 5-30]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127
[표 5-31]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127
[표 5-32]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별 주거환경	128
[표 5-33]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128
[표 5-34]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29
[표 5-3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30
[표 5-3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131
[표 5-37]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132
[표 5-38]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132
[표 5-39]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33
[표 5-40]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기간별 학대 유형 건수	133
[표 5-41]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134
[표 5-42]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134
[표 5-43]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35
[표 5-44]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38
[표 5-45]	시설학대 신고자유형	139
[표 5-46]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41



[표 5-47]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42
[표 5-48]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43
[표 5-4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44
[표 5-50]	시설학대 학대 유형	145
[표 5-51]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46
[표 5-52]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46
[표 5-5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7
[표 5-54]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148
[표 5-55]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149
[표 5-56]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151
[표 5-57]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152
[표 5-5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152
[표 5-59]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153
[표 5-60]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3
[표 5-61]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154
[표 5-62]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154
[표 5-6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155
[표 5-6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연령대	155
[표 5-6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156
[표 5-6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57
[표 5-67]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57
[표 5-68]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58
[표 5-69]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58
[표 6-1]	보호노인 현황	161
[표 6-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162
[표 6-3]	보호노인 결혼유형	163
[표 6-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163
[표 6-5]	보호노인 가구형태	164
[표 6-6]	보호노인 주거형태	165

표목차

[표 6-7] 보호노인 학대 유형	166
[표 6-8] 보호노인 치매여부	167
[표 6-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167
[표 6-10] 퇴소 후 거주현황	168
[표 6-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퇴소자)	169
[표 6-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170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173
[표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174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175
[표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177
[표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178
[표 7-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179
[표 7-7] 연도별 현장조사 실시 현황	180
[표 7-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181
[표 7-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82
[표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84
[표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86
[표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88
[표 7-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89
[표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0
[표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1
[표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192



[그림 2-1] 전체 신고건수 비율	10
[그림 2-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1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11
[그림 2-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13
[그림 2-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16
[그림 2-6] 신고자 유형 I	17
[그림 2-7] 신고자 유형 II	18
[그림 2-8] 신고접수 유형	20
[그림 2-9]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1
[그림 2-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1
[그림 2-11] 월별 상담횟수	23
[그림 2-12] 학대 상담구분	25
[그림 2-13]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30
[그림 2-14]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32
[그림 3-1]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42
[그림 3-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43
[그림 3-3] 사례판정 결과별 학대 신고자 유형	44
[그림 4-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48
[그림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0
[그림 4-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52
[그림 4-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65
[그림 4-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68
[그림 4-6] 노인학대 유형 I	80
[그림 4-7] 노인학대 유형 II	81
[그림 4-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비율	87
[그림 4-9] 학대발생빈도	88
[그림 4-10] 학대지속기간 비율	89
[그림 4-11] 학대행위자 원인 건수 및 비율	91
[그림 4-12]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주요유형	92

그림목차

[그림 4-13] 가족 - 환경 원인	93
[그림 5-1]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107
[그림 5-2]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09
[그림 5-3] 재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110
[그림 5-4]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111
[그림 5-5]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12
[그림 5-6] 재학대 행위자 유형	113
[그림 5-7] 재학대 피해노인의 행위자 동거여부	114
[그림 5-8] 재학대 사례의학대유형	115
[그림 5-9]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117
[그림 5-10]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18
[그림 5-11]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비율	120
[그림 5-12]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비율 추이	122
[그림 5-13]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126
[그림 5-14]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비율	127
[그림 5-1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30
[그림 5-1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131
[그림 5-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138
[그림 5-18]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비율	142
[그림 5-19]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비율	143
[그림 5-20] 시설학대 학대 유형 비율	145
[그림 5-2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148
[그림 5-22]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152
[그림 6-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162
[그림 6-2] 보호노인 가구형태	164
[그림 6-3] 보호노인 주거형태	165
[그림 6-4] 보호노인 학대 유형	166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 추이	174
[그림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174



[그림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176
[그림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비율)	177
[그림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179
[그림 7-6]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180
[그림 7-7]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181
[그림 7-8]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변화	183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85
[그림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185
[그림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87
[그림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88
[그림 7-13]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189
[그림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90
[그림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91
[그림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192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적 치료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부양의무자

-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보호자

- 노인을 보호자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노인학대 신고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상담 및 신고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로 당해 연도(2018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노인학대 사례

▣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일반사례

- 신고접수 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노인학대 유형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발생장소에 따른 노인학대 구분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이용시설 학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과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병원(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노(老) - 노(老)학대

- 65세 이상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 등을 말함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건강상태

치매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치매의심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ADL/IADL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몹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개요

- 본 보고서는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15,482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15,482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5,188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할 수 있음.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노인학대 신고접수

-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신고 건수는 15,482건이었음.
 - 일반사례¹⁾ 10,294건(66.5%), 학대사례²⁾ 5,188건(33.5%)
-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 건수는 16.3% 증가(13,309건 → 15,482건)하였음.
 - 전체사례³⁾ 중 일반사례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일반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5% 증가(8,687건 → 10,294건)
 - 학대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2% 증가(4,622건 → 5,188건)
 - 다만 학대사례는 전년도 대비 전체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p 감소
 - 일반사례 비중('17년 65.3% → '18년 66.5%)
 - 학대사례 비중('17년 34.7% → '18년 33.5%)
- 학대사례 5,188건 중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901건(17.4%), 서울특별시 522건(10.1%), 인천광역시 436건(8.4%)의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 학대사례 5,188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67건(14.8%)이며 비신고의무자는 4,421건(85.2%)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767건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98건 (51.9%),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94건(25.3%),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72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비중이 77.2%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

- 1) 일반사례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3) 전체사례란,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합한 모든 신고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 인지경로 유형 중 663건(86.4%)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으로 전년대비 0.5%p 감소(17년 552건, 86.9%)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신고의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활발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학대사례 5,188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4,421건(85.2%)으로 신고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신고자 유형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에 대한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지킴이단⁴⁾,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기관⁵⁾이 3,402건(77.0%), 친족 472건(10.7%), 학대피해노인 본인 387건(8.8%), 타인이 156건(3.5%)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인지경로 유형

- 2018년 학대사례 5,188건 중 신고접수 경로 유형은 112이관을 통한 접수 2,418건 (46.6%)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112이관 2,418건(46.6%), 자체접수 2,390건(46.1%), 보건복지콜센터 129이관 108건 (2.1%), 희망복지지원단⁶⁾ 72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고접수 유형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로 신고한 유형이 2,539건 (48.9%)으로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함.
 -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서신 2,391건(46.1%), 대면 180건(3.5%), 온라인 78건(1.5%) 등이 있음.

4)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직된 실버스마일 사업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발굴·예방, 학대사례의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물, 교육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업무를 하는 사업단을 의미함.

5)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6)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함.

- 학대사례 중 신고 인지경로 유형은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4,070건(78.5%)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기관안내”가 251건(4.8%),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246건(4.7%)으로 나타남.
 - 신고자가 이미 인지가 있어 신고하거나 직접홍보를 통해 신고한 경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의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비신고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어 신고한 비율이 전년대비 8.3%p 대폭 증가했다는 결과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비신고자의 신고 인지경로(이미 인지가 있는 경우) : (17년) 2,744건(68.8%) → (18년) 3,407건(77.1%)

▣ 노인학대 상담

- 신고접수 건수 15,482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27,965회임.
 - 학대상담 횟수 102,172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19.7회
 - 일반상담 횟수 25,793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2.5회
- 전년대비 상담횟수는 15.0% 증가(111,245회 → 127,965회)하였음.
 - 학대상담 횟수 14.9% 증가(88,919회 → 102,172회)
 - 일반상담 횟수 15.5% 증가(22,326회 → 25,793회)
- 학대상담 횟수 102,172회를 상담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진행상담 78,398회 (76.7%), 사후관리 13,243회(13.0%), 종결상담 5,287회(5.2%), 접수상담 5,244회(5.1%) 순으로 나타남.

▣ 상담원 업무량

-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상담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교육 횟수, 직접홍보 활동 횟수를 산정함.
-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은 신고접수 업무부터 현장조사, 서비스제공에 이르기까지 상담원 1인이 학대사례에 대한 모든 영역을 수행하는 업무구조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상담원 1인당 평균 업무량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업무량을 상담원 248명(기관장 제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2018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62.4건, 상담횟수는 516.0회, 현장조사는 20.0건, 방문상담횟수는 103.9회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1인당 제공서비스는 586.9회, 학대행위자 1인당 제공서비스는 110.7회임.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 2018년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4,965건이며, 현장조사 실시비율은 95.7%임.
 -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 현장조사 실시 비율 : '14년(93.5%) - '15년(95.8%) - '16년(92.8%) - '17년(96.1%) - '18년(95.7%)
- 전체 학대사례 5,188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25,767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0회로 나타남.
 -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사례판정

- 2018년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05건(2.0%), 비응급 사례가 3,221건(62.1%), 잠재적 사례가 1,862건(35.9%)으로 나타남.
 - 각 사례판정 유형 추이를 보면
응급 사례의 경우 '14년(5.2%) → '18년(2.0%),

비용급 사례의 경우 '14년(62.6%) → '18년(62.1%),
 잠재적 사례의 경우 '14년(32.2%) → '18년(35.9%)으로 응급 사례와 비용급 사례는
 감소하고 잠재적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응급 사례의 학대 유형은 “신체적 - 정서적 - 자기방임” 학대, 비용급 사례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의 순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으며, 비용급 사례 및 잠재적 사례는 정서적 학대 유형이 응급 사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재학대

- 2018년 학대사례 5,188건 중 재학대 건수는 488건으로 9.4%에 해당되며 여성노인이 386명(79.1%), 남성노인이 102명(20.9%)으로 나타남.
 - 2010년~2011년 9% 이상이던 재학대 건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6년 5.8%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증가추세를 보임
 - ※ 연도별 재학대율 : '14년(5.9%) - '15년(6.0%) - '16년(5.8%) - '17년(7.8%) - '18년(9.4%)

학대피해노인 현황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사례 중 여성노인 3,835명(73.9%), 남성노인 1,353명(26.1%)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70대를 기점으로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0대 819명(15.8%), 70대 2,443명(47.1%), 80대 1,608명(31.0%)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노인의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778건(38.6%) - 신체적 학대 689건(34.2%) - 방임 230건(11.4%)
 - 여성노인의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 2,730건(44.3%) - 신체적 학대 2,357건(38.3%) - 방임 488건(7.9%)

❑ 결혼 및 동거가족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2,863건(55.2%), 배우자 없음이 2,325건(44.8%)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5,188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3,662명(70.6%)이며, 비동거는 1,526명(29.4%)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3,662명에 대한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5,531명이며, 그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218명(40.1%)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731명(31.3%), 손자녀가 471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 노인부부가구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부부가구 증가 추이 : '14년(701건) - '15년(808건) - '16년(1,023건) - '17년(1,216건) - '18년(1,512건)
-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으로 된 집에 거주하는 자택 3,113건 (60.0%)으로 가장 높고, 전세가 581건(11.2%), 월세가 467건(9.0%)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851명으로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16.4%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졸이 2,225명(42.9%)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603명(30.9%), 중졸이 635명(12.2%)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초졸과 무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직이 4,581명(88.3%)으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종사자가 199명(3.8%),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55명(3.0%)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건강상태

- 전체 학대피해노인 5,188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4,312건임.
- 전체 학대피해노인 5,188명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548명으로 10.6%로 나타남.

- 548명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 376건(68.6%), 정신장애 172건(31.4%)으로 분류됨.
- 세부 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154건(28.1%), 우울장애가 124건(22.6%), 청각장애 80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207명(23.3%)임.
 - 이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507건(9.8%)이며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 진단은 700건(13.5%)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경우는 6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1.2%에 해당되며, 62건에 대한 세부유형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59건(95.2%)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두 가지 영역에서 69% 이상이 “완전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 학대사례 5,188건에 대해 총 145,552회로 한 사례당 평균 28.1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이 중 상담서비스가 84,346회(57.9%)로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48,988회(33.7%), 복지서비스 제공이 9,691회(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대

- 전체 학대행위자는 5,665명⁷⁾으로 남성이 4,008명(70.8%), 여성이 1,657명(29.2%)임.
 -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아들이 2,106명으로 37.2%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남성 학대행위자 4,008명 중 약 52.5%에 해당하는 수치임.
 -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은 학대행위자 유형의 아들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7)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학대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30.0%(1,701명)를 차지함.
 - 여성 학대행위자 1,657명 중 50~59세가 476명(28.7%), 60~69세가 381명(23.0%), 40~49세가 376명(22.7%)으로 나타남.
 - 남성 학대행위자 4,008명 중 70세 이상이 1,402명(35.0%), 50~59세가 938명(23.4%), 40~49세가 877명(21.9%)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전체 학대행위자 5,665건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이 2,106명(37.2%), 배우자가 1,557명(27.5%), 기관이 788명(13.9%)의 순으로 나타남.
 -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4,469명(78.9%)으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240명(4.2%)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1.5%p 감소하였음.
 - ※ 피해자 본인 : '17년(290건, 5.7%) - '18년(240건, 4.2%)

▣ 결혼 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 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3,402명(60.1%), 배우자 없음은 2,263명(39.9%)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 학대행위자의 5,665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91명(10.4%)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 수준으로 살펴보면 고졸이 2,217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137명(20.1%)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3,371명(59.5%)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539명(9.5%), 서비스·판매종사자가 534명(9.4%), 전문직이 506명(8.9%) 순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 학대행위자 5,665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766명으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13.5%에 해당됨.

- 이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 562명(73.4%), 신체장애가 204명(26.6%)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신분열 239명(31.2%), 우울장애 177명(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중 949명(16.8%)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887명(15.7%), 도박중독이 32명(0.6%), 약물 사용 장애가 30명(0.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5,665건에 대해 총 27,464회로 한 사례당 평균 4.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이는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145,552회의 약 18.9% 수준임.
 -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15,422회(56.2%)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서비스가 11,026회(4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담과 정보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노인학대 유형 및 학대발생원인

▣ 노인학대 유형

-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학대 유형을 중복으로 집계한 것으로 2018년 학대 유형 건수는 8,176건⁸⁾으로 나타남.
 - 정서적 학대 3,508건(42.9%), 신체적 학대 3,046건(37.3%), 방임 718건(8.8%), 경제적 학대 381건(4.7%), 자기방임 240건(2.9%), 성적 학대 228건(2.8%), 유기 55건(0.7%)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학대 등의 학대 유형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3정도의 수준으로 전체 성별비율과 비례하고 있으나, 자기방임과 유기는 다른 양상을 보임.

8)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노인학대 수치와 노인 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 신체적 학대 : 여성 2,357명(77.4%), 남성 689명(22.6%)
 - 정서적 학대 : 여성 2,730명(77.8%), 남성 778명(22.2%)
 - 성적 학대 : 여성 165명(72.4%), 남성 63명(27.6%)
 - 경제적 학대 : 여성 277명(72.7%), 남성 104명(27.3%)
 - 방임 : 여성 488명(68.0%), 남성 230명(32.0%)
 - 자기방임 : 남성 125명(52.1%), 여성 115명(47.9%)
 - 유기 : 여성 31명(56.4%), 남성 24명(43.6%)
- 학대 유형별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주로 70~80대 비율이 7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신체, 정서, 자기방임 학대 유형의 경우 7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방임과 유기 학대 유형은 8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함.
 - 정서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 - 배우자 - 딸” 이며,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 아들 - 딸”이고 방임의 경우는 “아들 - 기관⁹⁾ - 딸” 순으로 나타남.
 -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 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딸 - 배우자)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배우자)

▣ 학대발생장소

-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4,616건(8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정 내 4,616건(89.0%), 생활시설 380건¹⁰⁾(7.3%), 병원 65건(1.3%), 기타 44건(0.8%), 공공장소 42건(0.8%), 이용시설 41건(0.8%) 등으로 나타남.

9)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10)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 매년 가정 내 학대 신고건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정 내 학대발생 예방과 더불어 사례 발굴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2년~2014년 6% 이상을 상회하던 생활시설 학대추이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전년대비 0.2%p 증가함.
- ※ 생활시설 학대 추이 : '14년 246건(7.0%) - '15년 206건(5.4%) - '16년 238건(5.6%) - '17년 327건(7.1%) - '18년 380건(7.3%)

▣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 노인학대사례의 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574건(30.3%), 1개월에 한번 이상 1,434건(27.6%), 일회성 720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일 및 1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를 받는 경우가 2,263건(43.6%)으로 학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5년 이상이 1,738건(33.5%), 1년 이상 5년 미만인 1,696건(32.7%),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934건(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3,434건(66.2%)으로 나타남.
 - 이는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대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학대행위자 원인

-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된 학대사례 중에서 학대 발생원인이 학대행위자에게서 발견된 경우 그 세부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중복)하게 했을 때 총 9,591건 중 개인의 내적 문제가 3,171건(33.1%), 개인의 외적문제가 1,728건(18.0%)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학대행위자 원인이 51.1%로 과반을 차지함.
 - 개인의 내적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 자신감 결여, 폭력 및 충동성 등의 조절 또는 통제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해당되며,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부양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하고, 개인의 외적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의 문제를 나타냄.

㉑ 가족 - 환경 원인

- 학대 발생원인이 가족 - 환경 원인에 있는 경우는 총 5,045건으로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3,064건(60.7%)으로 가장 높고,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1,268건(25.1%),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713건(14.1%)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를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 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의미함.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㉒ 보호노인 현황

- 2018년 보호노인은 총 1,225명이며 입소자가 517명, 이용자가 708명으로 센터 1개당 월 평균 5.7명이 입소 및 이용하였음.

㉓ 보호노인 연령대

- 보호노인 전체 연령 비율은 주로 70대에서 80대 초반에 분포되어 있음.
 - 입소자 : 70~84세 연령대 수 369명(71.4%)
 - 이용자 : 70~84세 연령대 수 529명(74.7%)

㉔ 보호노인 결혼 유형

- 보호노인 전체 결혼 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639명(52.2%), 배우자 없음이 585명(47.8%)으로 나타남.
 - 입소자와 이용자 간의 결혼 유형 비율은 입소자의 배우자 있음의 비율이 더 높았음 (입소자 288명 55.7%, 이용자 351명 49.6%).

㉕ 보호노인의 가구형태

- 입소자의 가구형태 비율은 노인부부 - 자녀동거 - 노인단독의 순인 반면, 이용자의 가구형태 비율은 노인단독 - 노인부부 - 자녀동거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입소자 : 노인부부 230명(44.5%) - 자녀동거 179명(34.6%) - 노인단독 71명(13.7%)
- 이용자 : 노인단독 288명(40.7%) - 노인부부 219명(30.9%) - 자녀동거 147명(20.8%)

▣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 입소자의 동거자 유형은 배우자 264명(50.2%), 아들 163명(31.0%), 손자녀 30명(5.7%)의 순이며,
 - 이용자는 배우자 265명(50.7%), 아들 159명(30.4%), 손자녀 37명(7.1%) 등임.

▣ 보호노인 주거형태

- 보호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자가 344명(66.5%), 월세 74명(14.3%), 전세 49명(9.5%), 기타 38명(7.4%) 등의 순이며
 - 이용자는 자가 429명(60.6%), 월세 128명(18.1%), 전세 101명(14.3%) 순이었음.

▣ 보호노인 학대 유형

- 입소자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447건(46.5%), 신체적 학대 368건(38.3%), 경제적 학대 53건(5.5%)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정서적 학대 526건(48.7%), 신체적 학대 352건(32.6%), 방임 60건(5.6%)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노인 치매여부

- 보호노인의 치매여부를 보면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는 입소자의 경우 49명(9.5%), 이용자는 16명(2.3%)으로 나타남.

▣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보호노인은 사전·사후 자가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2018년 보호노인 1,225명 중 급작스런 퇴소, 학대피해노인의 거부,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제외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사례는 1,069건이며 그 중 1,063명(99.4%)이 우울증이 감소하였음.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서비스 제공현황

- 입소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53,334회, 104,522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제공된 서비스는 식사제공, 법률상담연결 및 법률소송지원등의 법률서비스, 학대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원 상담 및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및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이용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2,754회, 5,837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과정

4. 자료분석

5. 주요내용



제1장 서론

1 ·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제도적 발달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지난 10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18개¹¹⁾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2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자료를 분석하였음

11) 이 중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여 경상북도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3 •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해 연도 별 변화(05년~18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다.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사례(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이다.

5 • 주요내용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내 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및 상담 건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및 인지경로 유형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사례판정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노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직업유형, 교육정도 -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 -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학대행위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직업유형, 교육정도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 - 건강상태,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 유형 건수)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현황 • 재학대 현황 • 노인단독가구 현황 • 시설학대 현황 • 노(老) - 노(老)학대 현황 •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 현황 	
기타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재학대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연도별 생활시설학대 현황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연도별 피해자 가구형태 • 연도별 학대행위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제2장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노인학대 신고접수

2. 노인학대 상담



제2장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 노인학대 신고접수

1) 전체 신고접수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학대사례 개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및 서신에 의한 접수,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¹²⁾, 보건복지콜센터 129¹³⁾, 112, 119 신고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접수된 사례는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노인학대의심사례와 일반사례를 판정한다. 노인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응급(12시간),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72시간)를 말하며, 일정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 조치 등을 확인하고 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로 노인학대와 관련 없이 단순 시설입소, 기관안내 등의 문의와 자녀 간 재산 갈등의 법적 분쟁

12) 행정안전부가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2015.1.27.). 비응급 일반 민원이나 전문상담은 110을 이용하며, 2016년 7월부터 정부민원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문의콜 콜센터 상담사가 접수하여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함.

13) 행정안전부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2016년 10월부터 전면시행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긴급 신고 번호를 112로 통합함.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및 노인학대로 신고되었지만 정보부족(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부족, 주소불명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신고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일반사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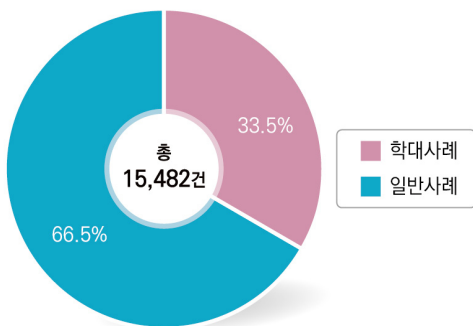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학대사례에 포함되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 접수 건수의 총계를 전체 신고접수 건수로 보았다.

[표 2-1]에서 보듯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15,482건이며, 이 중 일반사례 건수는 10,29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6.5%이며 학대사례는 5,188건, 33.5%로 나타났다. 접수된 학대사례 건수에는 2018년 처음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신규사례 4,700건(90.6%)과 2018년 이전 또는 당해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되어 접수된 사례 488건(9.4%)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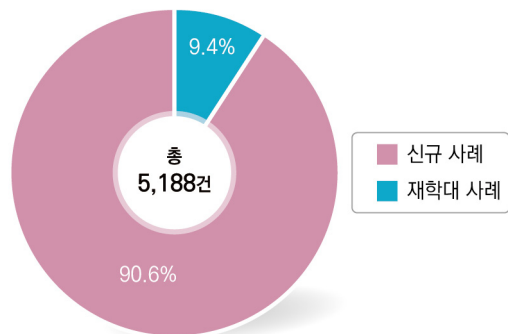
[표 2-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 체	
건 수	5,188	10,294	15,482	488
비 율	33.5	66.5	100	9.4



[그림 2-1] 전체 신고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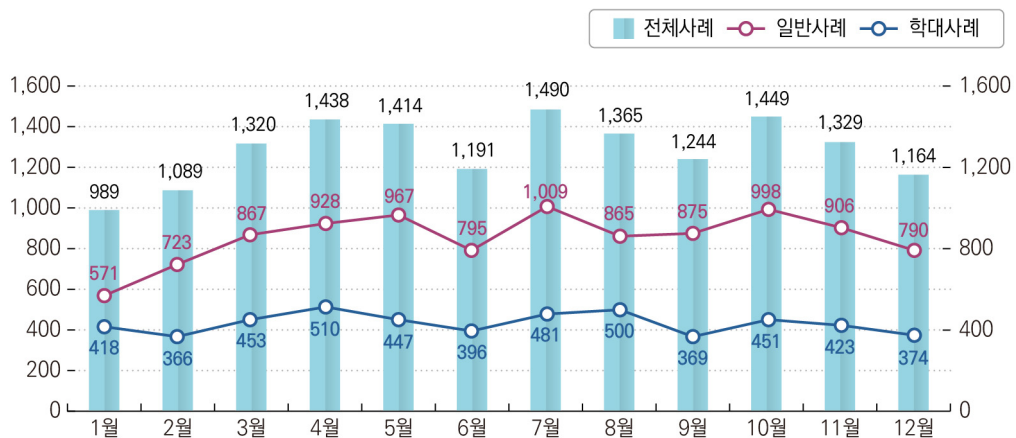
[그림 2-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2018년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접수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1,290.2건(8.3%)이 접수되었고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이 1,490건(9.6%)으로 가장 높았으며, 10월이 1,449건(9.4%), 4월 1,438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수준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1월의 신고건수가 989건(6.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418	8.1	571	5.5	989	6.4
2월	366	7.1	723	7.0	1,089	7.0
3월	453	8.7	867	8.4	1,320	8.5
4월	510	9.8	928	9.0	1,438	9.3
5월	447	8.6	967	9.4	1,414	9.1
6월	396	7.6	795	7.7	1,191	7.7
7월	481	9.3	1,009	9.8	1,490	9.6
8월	500	9.6	865	8.4	1,365	8.8
9월	369	7.1	875	8.5	1,244	8.0
10월	451	8.7	998	9.7	1,449	9.4
11월	423	8.2	906	8.8	1,329	8.6
12월	374	7.2	790	7.7	1,164	7.5
계	5,188	100	10,294	100	15,482	100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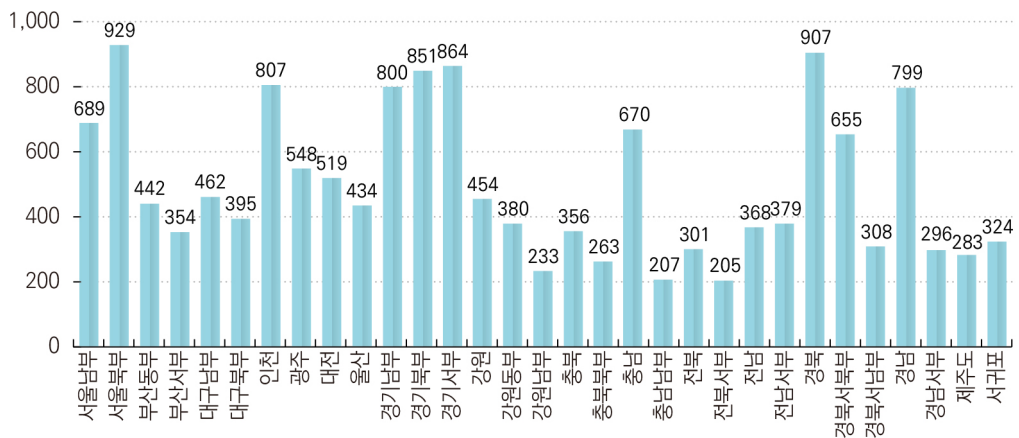
[표 2-3]과 같이 전체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신고접수 건수 평균은 910.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8년 한 해 동안 2,515건이 신고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가 1,870건, 서울특별시가 1,618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고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434건인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298	43.3	391	56.7	689	100
	서울북부	224	24.1	705	75.9	929	100
	소계	522	32.3	1,096	67.7	1,618	100
부산	부산동부	199	45.0	243	55.0	442	100
	부산서부	180	50.8	174	49.2	354	100
	소계	379	47.6	417	52.4	796	100
대구	대구남부	111	24.0	351	76.0	462	100
	대구북부	99	25.1	296	74.9	395	100
	소계	210	24.5	647	75.5	857	100
인천		436	54.0	371	46.0	807	100
광주		202	36.9	346	63.1	548	100
대전		126	24.3	393	75.7	519	100
울산		102	23.5	332	76.5	434	100
경기	경기남부	167	20.9	633	79.1	800	100
	경기북부	379	44.5	472	55.5	851	100
	경기서부	355	41.1	509	58.9	864	100
	소계	901	35.8	1,614	64.2	2,515	100
강원	강원	225	49.6	229	50.4	454	100
	강원동부	93	24.5	287	75.5	380	100
	강원남부	116	49.8	117	50.2	233	100
	소계	434	40.7	633	59.3	1,067	100
충북	충북	75	21.1	281	78.9	356	100
	충북북부	64	24.3	199	75.7	263	100
	소계	139	22.5	480	77.5	619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충남	충남	192	28.7	478	71.3	670	100
	충남남부	90	43.5	117	56.5	207	100
	소계	282	32.2	595	67.8	877	100
전북	전북	130	43.2	171	56.8	301	100
	전북서부	103	50.2	102	49.8	205	100
	소계	233	46.0	273	54.0	506	100
전남	전남	153	41.6	215	58.4	368	100
	전남서부	184	48.5	195	51.5	379	100
	소계	337	45.1	410	54.9	747	100
경북	경북	179	19.7	728	80.3	907	100
	경북서북부	128	19.5	527	80.5	655	100
	경북서남부	124	40.3	184	59.7	308	100
	소계	431	23.0	1,439	77.0	1,870	100
경남	경남	217	27.2	582	72.8	799	100
	경남서부	79	26.7	217	73.3	296	100
	소계	296	27.0	799	73.0	1,095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6	37.5	177	62.5	283	100
	제주도서귀포시	52	16.0	272	84.0	324	100
	소계	158	26.0	449	74.0	607	100
계		5,188	33.5	10,294	66.5	15,482	100



[그림 2-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지역별 신고 접수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551,80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가 1,410,297명, 부산광역시 589,961명으로 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노인인구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19.8%, 전라북도가 19.5%로 나타나 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하나, 각 지역의 전체인구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노인인구수 천 명당 노인학대 신고접수율을 추정해보면 노인인구 천 명당 학대 신고 접수율은 2.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6.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3.7명, 경상북도 3.5명 순이었다.

그러나 위의 수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에 의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학대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노인은 더 많을 수 있어 실제 노인학대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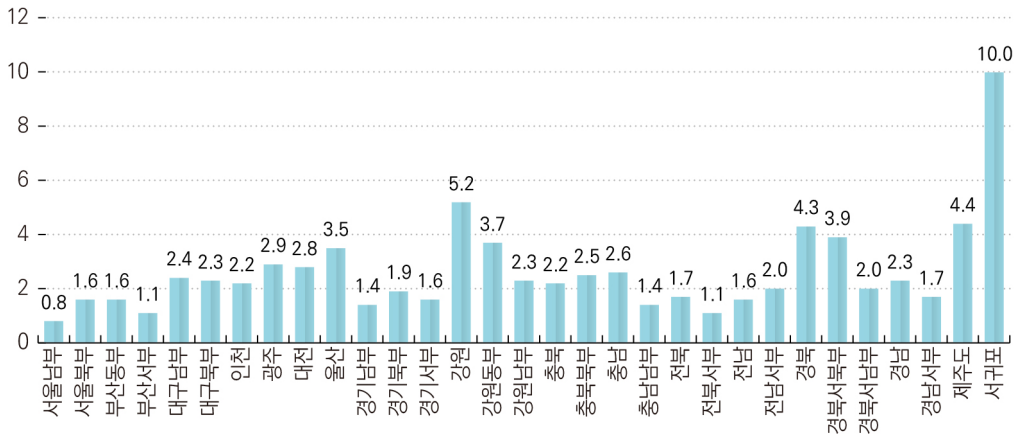
[표 2-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5,995,644	814,592	13.6	689	0.8
	서울북부	3,769,979	595,705	15.8	929	1.6
	소계	9,765,623	1,410,297	14.4	1,618	1.1
부산	부산동부	1,611,328	280,541	17.4	442	1.6
	부산서부	1,830,125	309,420	16.9	354	1.1
	소계	3,441,453	589,961	17.1	796	1.3
대구	대구남부	1,407,216	192,997	13.7	462	2.4
	대구북부	1,054,553	169,937	16.1	395	2.3
	소계	2,461,769	362,934	14.7	857	2.4
인천		2,954,642	362,675	12.3	807	2.2
광주		1,459,336	187,186	12.8	548	2.9
대전		1,489,936	188,530	12.7	519	2.8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울산		1,155,623	123,919	10.7	434	3.5
경기	경기남부	4,646,315	568,650	12.2	800	1.4
	경기북부	3,399,848	456,890	13.4	851	1.9
	경기서부	5,030,990	526,261	10.5	864	1.6
	소계	13,077,153	1,551,801	11.9	2,515	1.6
강원	강원	477,630	86,804	18.2	454	5.2
	강원동부	509,728	102,145	20.0	380	3.7
	강원남부	555,694	100,437	18.1	233	2.3
	소계	1,543,052	289,386	18.8	1,067	3.7
충북	충북	1,088,144	158,226	14.5	356	2.2
	충북북부	511,108	103,537	20.3	263	2.5
	소계	1,599,252	261,763	16.4	619	2.4
충남	충남	1,859,358	253,171	13.6	670	2.6
	충남남부	581,050	148,522	25.6	207	1.4
	소계	2,440,408	401,693	16.5	877	2.2
전북	전북	961,143	172,184	17.9	301	1.7
	전북서부	875,689	186,226	21.3	205	1.1
	소계	1,836,832	358,410	19.5	506	1.4
전남	전남	1,080,531	223,311	20.7	368	1.6
	전남서부	802,439	189,821	23.7	379	2.0
	소계	1,882,970	413,132	21.9	747	1.8
경북	경북	1,035,183	209,151	20.2	907	4.3
	경북서북부	597,569	166,185	27.8	655	3.9
	경북서남부	1,044,079	154,013	14.8	308	2.0
	소계	2,676,831	529,349	19.8	1,870	3.5
경남	경남	2,610,556	348,908	13.4	799	2.3
	경남서부	763,432	174,257	22.8	296	1.7
	소계	3,373,988	523,165	15.5	1,095	2.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85,946	63,813	13.1	283	4.4
	제주시	181,245	32,394	17.9	324	10.0
	소계	667,191	96,207	14.4	607	6.3
계		51,826,059	7,650,408	14.8	15,482	2.0

주. 65세 이상 인구 수 : 행정자치부 2018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12 기준)



[그림 2-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노인)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으로 분류된다.

[표 2-5]는 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전체 학대사례 5,188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 본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67건으로, 전년 대비 20.8% 가량 증가하였다('17년 635건 → '18년 767건). 반면 비신고의무자는 4,421건으로 작년 대비 약 10.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년 3,987건 → '18년 4,42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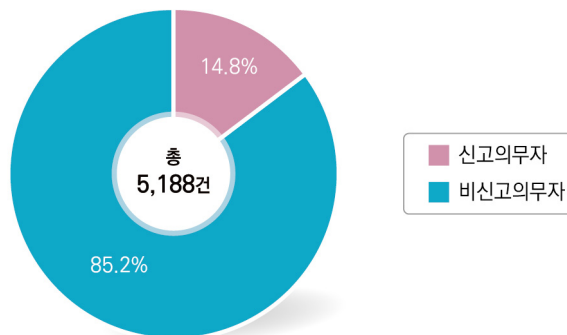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표 2-5]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767	4,421	5,188
14.8	8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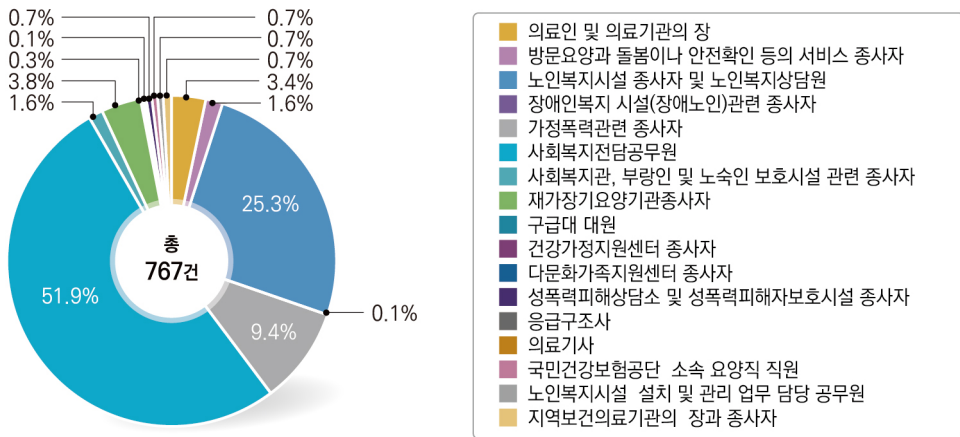
[그림 2-6] 신고자 유형 I

[표 2-6]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전체 신고의무자의 각 직군별 신고건수와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 767건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98건(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194건(25.3%)으로 나타났다.

[표 2-6]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 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 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구급대 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26	12	194	1	72	398	12	29	2	-	1	5	-	-	5	5	5	767
3.4	1.6	25.3	0.1	9.4	51.9	1.6	3.8	0.3	-	0.1	0.7	-	-	0.7	0.7	0.7	100



[그림 2-7] 신고자 유형 II

비신고의무자의 세부 유형의 경우 전체 4,421건 중 관련기관¹⁴⁾이 3,402건(7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친족 472건(10.7%), 학대피해노인 본인 387건(8.8%), 타인이 156건(3.5%) 순이었다. 타인은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된다.

14)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표 2-7] 신고자 유형Ⅲ (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 ¹⁵⁾	타인 ¹⁶⁾	관련기관 ¹⁷⁾	
387	4	472	156	3,402	4,421
8.8	0.1	10.7	3.5	77.0	100

4) 신고접수 및 인지경로 유형

가. 신고접수 경로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2 또는 119 신고에 의해 접수된다. 2016년 7월부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걸려온 노인학대 관련 문의를 콜센터 상담사가 접수한 후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기로 추진되어 신고접수 경로에 포함되었다.

[표 2-8]을 살펴보면 112이관 2,418건(46.6%), 자체접수 2,390건(46.1%), 보건복지콜센터 108건(2.1%) 순으로 나타나 112이관과 자체접수가 전체 신고접수 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신고는 72건(1.4%), 시청이 57건(1.1%), 행정복지센터 55건(1.1%), 건강보험공단이 29건(0.6%)등으로 나타났다.

[표 2-8]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7	108	2,418	29	6	13	3	57	3	2,390	2	25	55	72	5,188
0.1	2.1	46.6	0.6	0.1	0.3	0.1	1.1	0.1	46.1	0.0	0.5	1.1	1.4	100

15)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6) 타인에는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7)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나. 신고접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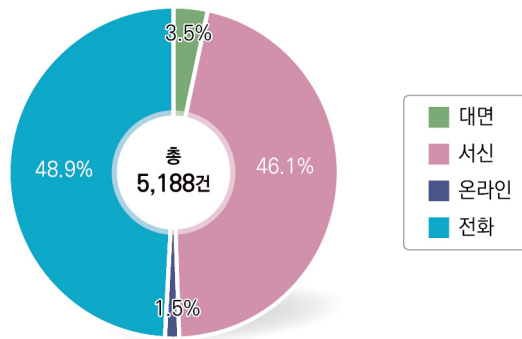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신고, 신고자의 기관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신고접수 유형은 전화로, 총 2,539건이 신고 되었으며 접수유형의 48.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신 신고가 2,391건(46.1%), 상담원의 방문 및 신고자의 내방 등으로 인한 대면신고가 180건(3.5%), 온라인은 78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서신을 통한 신고접수가 46.1% 증가하였다('17년: 1,636건 → '18년: 2,391건).

[표 2-9]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	온라인	전 화	계
180	2,391	78	2,539	5,188
3.5	46.1	1.5	48.9	100



[그림 2-8] 신고접수 유형

다. 신고 인지경로 유형

신고 인지경로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 2-10]과 같이 분류한다.

전체 신고 인지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에 의한 신고가 4,070건 (7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기관 안내' 251건(4.8%),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246건(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직접홍보’(4.0%), ‘대중매체’(3.9%), ‘인터넷’(2.1%), ‘주변인’(2.0%) 등을 통해서 신고경로를 인지한 경우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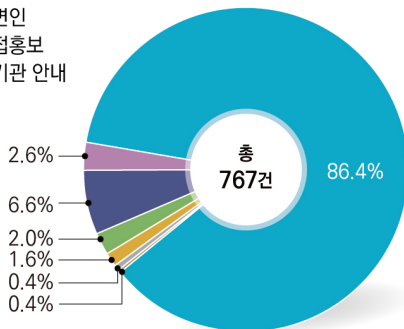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 인지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663건(86.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경우가 51건(6.6%)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3,407건(77.1%)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기관 안내’가 236건(5.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0] 신고 인지경로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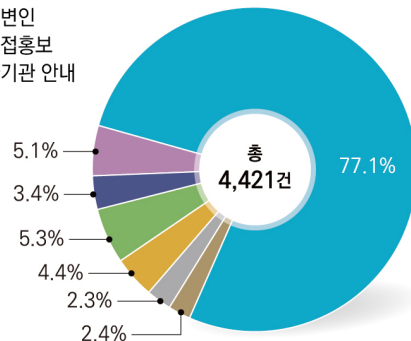
구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51	20	663	3	3	12	15	767
	6.6	2.6	86.4	0.4	0.4	1.6	2.0	100
비신고 의무자	149	226	3,407	105	102	196	236	4,421
	3.4	5.1	77.1	2.4	2.3	4.4	5.3	100
계	200	246	4,070	108	105	208	251	5,188
	3.9	4.7	78.5	2.1	2.0	4.0	4.8	100

■ 대중매체
■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인터넷
■ 주변인
■ 직접홍보
■ 타기관 안내



[그림 2-9]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 대중매체
■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인터넷
■ 주변인
■ 직접홍보
■ 타기관 안내



[그림 2-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지경로

2 · 노인학대 상담

1) 월별 상담횟수

2018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 15,482건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127,965회로, 학대상담 횟수가 102,172회(79.8%), 일반상담 횟수는 25,793회(20.2%)로 나타났다. 학대상담의 경우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 반면,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대부분 1~2회 상담이 이루어지며 보통 정보제공과 동시에 상담이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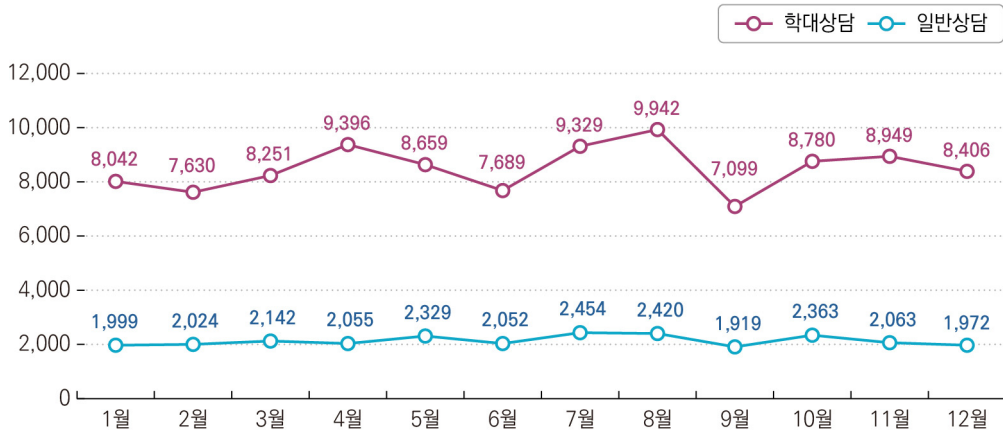
월별 상담횟수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상담의 경우 월평균 8,514.3회, 일반상담의 경우 월평균 2,149.4회 진행되었다. 월별 전체 상담횟수 추이는 8월이 12,362회(9.7%), 7월이 11,783회(9.2%), 4월이 11,451회(8.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1]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 체
1월	8,042	1,999	10,041
	7.9	7.8	7.8
2월	7,630	2,024	9,654
	7.5	7.8	7.5
3월	8,251	2,142	10,393
	8.1	8.3	8.1
4월	9,396	2,055	11,451
	9.2	8.0	8.9
5월	8,659	2,329	10,988
	8.5	9.0	8.6
6월	7,689	2,053	9,742
	7.5	8.0	7.6
7월	9,329	2,454	11,783
	9.1	9.5	9.2
8월	9,942	2,420	12,362
	9.7	9.4	9.7
9월	7,099	1,919	9,018
	6.9	7.4	7.0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 체
10월	8,780	2,363	11,143
	8.6	9.2	8.7
11월	8,949	2,063	11,012
	8.8	8.0	8.6
12월	8,406	1,972	10,378
	8.2	7.6	8.1
계	102,172	25,793	127,965
	100	100	100



[그림 2-11] 월별 상담횟수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02,172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대한 분류로, 전체 상담 중 전화상담이 68,809회(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된 방문상담이 25,767회(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의 92.6%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상담방법으로는 서신 4,391회(4.3%), 내방 2,095회(2.1%), 기타 788회(0.8%), 온라인 323회(0.3%)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가장 높은 학대상담방법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화상담의 경우 경기도가 11.6%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11.5%, 부산광역시 9.9%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상담의 경우 강원도가 17.0%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8.8%, 경상북도(2,199건)와

서울특별시(2,182건)가 8.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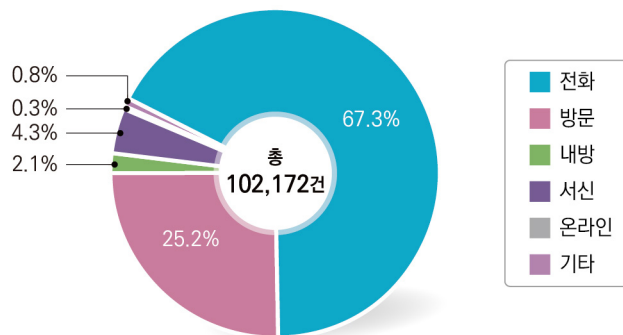
이를 다시 기관별로 보면, 전화상담의 경우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6.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방문상담의 경우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방상담의 경우에도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4,430	6.4	996	3.9	20	1.0	275	6.3	51	15.8	439	55.7	6,211	6.1
	서울북부	3,487	5.1	1,186	4.6	95	4.5	172	3.9	28	8.7	80	10.2	5,048	4.9
	소계	7,917	11.5	2,182	8.5	115	5.5	447	10.2	79	24.5	519	65.9	11,259	11.0
부산	부산동부	3,576	5.2	1,190	4.6	93	4.4	238	5.4	10	3.1	12	1.5	5,119	5.0
	부산서부	3,221	4.7	594	2.3	62	3.0	3	0.1	-	0.0	11	1.4	3,891	3.8
	소계	6,797	9.9	1,784	6.9	155	7.4	241	5.5	10	3.1	23	2.9	9,010	8.8
대구	대구남부	1,968	2.9	898	3.5	38	1.8	78	1.8	2	0.6	15	1.9	2,999	2.9
	대구북부	2,226	3.2	470	1.8	41	2.0	120	2.7	3	0.9	9	1.1	2,869	2.8
	소계	4,194	6.1	1,368	5.3	79	3.8	198	4.5	5	1.5	24	3.0	5,868	5.7
	인천	3,307	4.8	1,216	4.7	16	0.8	572	13.0	10	3.1	-	0.0	5,121	5.0
	광주	2,923	4.2	737	2.9	146	7.0	108	2.5	11	3.4	7	0.9	3,932	3.8
	대전	1,544	2.2	952	3.7	88	4.2	158	3.6	3	0.9	6	0.8	2,751	2.7
	울산	1,561	2.3	751	2.9	21	1.0	81	1.8	1	0.3	1	0.1	2,416	2.4
경기	경기남부	1,750	2.5	680	2.6	22	1.1	174	4.0	19	5.9	26	3.3	2,671	2.6
	경기북부	3,198	4.6	827	3.2	68	3.2	239	5.4	14	4.3	2	0.3	4,348	4.3
	경기서부	3,017	4.4	771	3.0	50	2.4	362	8.2	26	8.0	15	1.9	4,241	4.2
	소계	7,965	11.6	2,278	8.8	140	6.7	775	17.6	59	18.3	43	5.5	11,260	11.0
강원	강원	3,318	4.8	3,076	11.9	284	13.6	416	9.5	24	7.4	36	4.6	7,154	7.0
	강원동부	1,628	2.4	901	3.5	93	4.4	146	3.3	9	2.8	2	0.3	2,779	2.7
	강원남부	1,209	1.8	392	1.5	87	4.2	103	2.3	4	1.2	1	0.1	1,796	1.8
	소계	6,155	8.9	4,369	17.0	464	22.1	665	15.1	37	11.5	39	4.9	11,729	11.5
충북	충북	929	1.4	531	2.1	16	0.8	42	1.0	1	0.3	2	0.3	1,521	1.5
	충북북부	965	1.4	653	2.5	15	0.7	75	1.7	3	0.9	1	0.1	1,712	1.7
	소계	1,894	2.8	1,184	4.6	31	1.5	117	2.7	4	1.2	3	0.4	3,233	3.2
충남	충남	3,000	4.4	1,490	5.8	146	7.0	162	3.7	47	14.6	10	1.3	4,855	4.8
	충남남부	1,313	1.9	446	1.7	12	0.6	72	1.6	3	0.9	7	0.9	1,853	1.8
	소계	4,313	6.3	1,936	7.5	158	7.5	234	5.3	50	15.5	17	2.2	6,708	6.6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전북	전북	1,713	2.5	462	1.8	118	5.6	40	0.9	3	0.9	7	0.9	2,343	2.3
	전북서부	1,159	1.7	849	3.3	18	0.9	68	1.5	4	1.2	-	-	2,099	2.1
	소계	2,872	4.2	1,311	5.1	136	6.5	108	2.5	7	2.2	7	0.9	4,442	4.3
전남	전남	1,959	2.8	549	2.1	75	3.6	86	2.0	3	0.9	1	0.1	2,673	2.6
	전남서부	2,769	4.0	1,007	3.9	7	0.3	87	2.0	2	0.6	5	0.6	3,877	3.8
	소계	4,728	6.9	1,556	6.0	82	3.9	173	3.9	5	1.5	6	0.8	6,550	6.4
경북	경북	1,066	1.5	446	1.7	243	11.6	138	3.1	1	0.3	-	-	1,894	1.9
	경북서북부	1,711	2.5	901	3.5	85	4.1	72	1.6	2	0.6	59	7.5	2,830	2.8
	경북서남부	2,878	4.2	852	3.3	8	0.4	92	2.1	38	11.8	16	2.0	3,884	3.8
	소계	5,655	8.2	2,199	8.5	336	16.0	302	6.9	41	12.7	75	9.5	8,608	8.4
경남	경남	3,971	5.8	692	2.7	7	0.3	36	0.8	1	0.3	8	1.0	4,715	4.6
	경남서부	882	1.3	531	2.1	13	0.6	40	0.9	-	-	2	0.3	1,468	1.4
	소계	4,853	7.1	1,223	4.7	20	1.0	76	1.7	1	0.3	10	1.3	6,183	6.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518	2.2	477	1.9	94	4.5	78	1.8	-	-	6	0.8	2,173	2.1
	제주도서귀포시	612	0.9	244	0.9	14	0.7	58	1.3	-	-	1	0.1	929	0.9
	소계	2,130	3.1	721	2.8	108	5.2	136	3.1	-	-	7	0.9	3,102	3.0
계		68,808	100	25,767	100	2,095	100	4,391	100	323	100	788	100	102,172	100



[그림 2-12] 학대 상담구분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학대상담은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된다. 접수상담은 신고접수 시 초기상담을 의미하고, 진행상담은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며,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및 가족상담, 관련자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결상담은 사례를 종결하기 위해 실시한 상담을 의미한다. 사후관리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재발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서비스를 의뢰한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시설보호의 경우 시설 측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사후관리가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사례회의를 통하여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한다.

[표 2-13]은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학대사례 상담과정에 따라 상담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전체 상담횟수 중 진행상담이 78,398회(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관리가 13,243회(13.0%), 종결상담이 5,287회(5.2%), 접수상담이 5,244회(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담구분별 비율정도를 살펴보면 접수상담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17.2%를 차지한 경기도였으며, 진행상담은 강원도가 12.7%, 종결상담은 경기도가 17.7%, 사후관리는 대구광역시가 14.1%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접수상담의 경우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8.3%, 진행상담은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8.0%, 종결상담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9.1%, 사후관리에서는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1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294	5.6	4,600	5.9	327	6.2	990	7.5	6,211	6.1
	서울북부	226	4.3	4,162	5.3	241	4.6	419	3.2	5,048	4.9
	소계	520	9.9	8,762	11.2	568	10.7	1,409	10.6	11,259	11.0
부산	부산동부	199	3.8	3,871	4.9	199	3.8	850	6.4	5,119	5.0
	부산서부	214	4.1	3,089	3.9	195	3.7	393	3.0	3,891	3.8
	소계	413	7.9	6,960	8.9	394	7.5	1,243	9.4	9,010	8.8
대구	대구남부	119	2.3	1,440	1.8	121	2.3	1,319	10.0	2,999	2.9
	대구북부	91	1.7	2,119	2.7	117	2.2	542	4.1	2,869	2.8
	소계	210	4.0	3,559	4.5	238	4.5	1,861	14.1	5,868	5.7
인천		436	8.3	3,448	4.4	480	9.1	757	5.7	5,121	5.0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광주	212	4.0	3,059	3.9	209	4.0	452	3.4	3,932	3.8
	대전	127	2.4	1,789	2.3	126	2.4	709	5.4	2,751	2.7
	울산	103	2.0	1,986	2.5	90	1.7	237	1.8	2,416	2.4
경기	경기남부	167	3.2	1,830	2.3	168	3.2	506	3.8	2,671	2.6
	경기북부	380	7.2	2,597	3.3	385	7.3	986	7.4	4,348	4.3
	경기서부	356	6.8	3,372	4.3	382	7.2	131	1.0	4,241	4.2
	소계	903	17.2	7,799	9.9	935	17.7	1,623	12.3	11,260	11.0
강원	강원	238	4.5	6,257	8.0	279	5.3	380	2.9	7,154	7.0
	강원동부	93	1.8	2,388	3.0	96	1.8	202	1.5	2,779	2.7
	강원남부	114	2.2	1,338	1.7	129	2.4	215	1.6	1,796	1.8
	소계	445	8.5	9,983	12.7	504	9.5	797	6.0	11,729	11.5
충북	충북	75	1.4	1,100	1.4	72	1.4	274	2.1	1,521	1.5
	충북북부	64	1.2	1,407	1.8	54	1.0	187	1.4	1,712	1.7
	소계	139	2.7	2,507	3.2	126	2.4	461	3.5	3,233	3.2
충남	충남	194	3.7	3,964	5.1	174	3.3	523	3.9	4,855	4.8
	충남남부	90	1.7	1,541	2.0	77	1.5	145	1.1	1,853	1.8
	소계	284	5.4	5,505	7.0	251	4.7	668	5.0	6,708	6.6
전북	전북	130	2.5	1,628	2.1	138	2.6	447	3.4	2,343	2.3
	전북서부	107	2.0	1,740	2.2	117	2.2	135	1.0	2,099	2.1
	소계	237	4.5	3,368	4.3	255	4.8	582	4.4	4,442	4.3
전남	전남	153	2.9	2,097	2.7	137	2.6	286	2.2	2,673	2.6
	전남서부	194	3.7	3,060	3.9	210	4.0	413	3.1	3,877	3.8
	소계	347	6.6	5,157	6.6	347	6.6	699	5.3	6,550	6.4
경북	경북	181	3.5	1,465	1.9	67	1.3	181	1.4	1,894	1.9
	경북서북부	128	2.4	2,430	3.1	118	2.2	154	1.2	2,830	2.8
	경북서남부	119	2.3	3,244	4.1	136	2.6	385	2.9	3,884	3.8
	소계	428	8.2	7,139	9.1	321	6.1	720	5.4	8,608	8.4
경남	경남	205	3.9	3,747	4.8	189	3.6	574	4.3	4,715	4.6
	경남서부	79	1.5	1,192	1.5	100	1.9	97	0.7	1,468	1.4
	소계	284	5.4	4,939	6.3	289	5.5	671	5.1	6,183	6.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3	2.0	1,799	2.3	102	1.9	169	1.3	2,173	2.1
	제주도 서귀포시	53	1.0	639	0.8	52	1.0	185	1.4	929	0.9
	소계	156	3.0	2,438	3.1	154	2.9	354	2.7	3,102	3.0
계		5,244	100	78,398	100	5,287	100	13,243	100	102,172	100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전체 상담횟수 중에서 학대상담과 일반상담 횟수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먼저 학대상담 횟수 비율은 전라남도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 88.2%, 전라북도 8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횟수 중 학대상담 횟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곳은 대전광역시(53.1%)이고, 경기도의 경우 69.8%이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전체 상담횟수의 70~90%를 학대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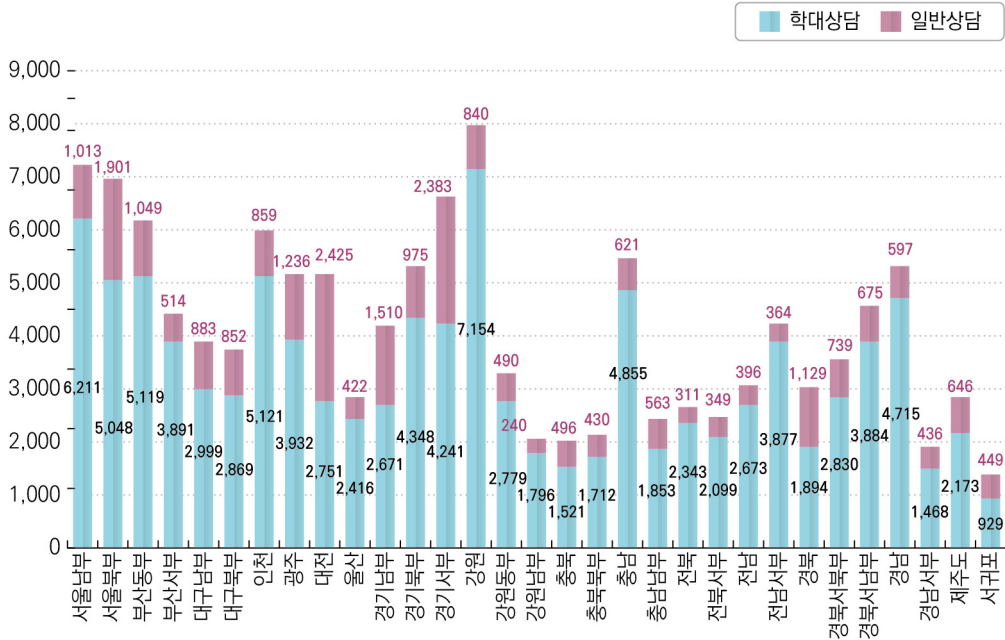
학대상담 비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89.5%,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88.8%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60~90%의 수준으로 학대상담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53.1%로 학대상담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2-14]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6,211	86.0	1,013	14.0	7,224	100
	서울북부	5,048	72.6	1,901	27.4	6,949	100
	소계	11,259	79.4	2,914	20.6	14,173	100
부산	부산동부	5,119	83.0	1,049	17.0	6,168	100
	부산서부	3,891	88.3	514	11.7	4,405	100
	소계	9,010	85.2	1,563	14.8	10,573	100
대구	대구남부	2,999	77.3	883	22.7	3,882	100
	대구북부	2,869	77.1	852	22.9	3,721	100
	소계	5,868	77.2	1,735	22.8	7,603	100
인천		5,121	85.6	859	14.4	5,980	100
광주		3,932	76.1	1,236	23.9	5,168	100
대전		2,751	53.1	2,425	46.9	5,176	100
울산		2,416	85.1	422	14.9	2,838	100
경기	경기남부	2,671	63.9	1,510	36.1	4,181	100
	경기북부	4,348	81.7	975	18.3	5,323	100
	경기서부	4,241	64.0	2,383	36.0	6,624	100
	소계	11,260	69.8	4,868	30.2	16,128	100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강원	강원	7,154	89.5	840	10.5	7,994	100
	강원동부	2,779	85.0	490	15.0	3,269	100
	강원남부	1,796	88.2	240	11.8	2,036	100
	소계	11,729	88.2	1,570	11.8	13,299	100
충북	충북	1,521	75.4	496	24.6	2,017	100
	충북북부	1,712	79.9	430	20.1	2,142	100
	소계	3,233	77.7	926	22.3	4,159	100
충남	충남	4,855	88.7	621	11.3	5,476	100
	충남남부	1,853	76.7	563	23.3	2,416	100
	소계	6,708	85.0	1,184	15.0	7,892	100
전북	전북	2,343	88.3	311	11.7	2,654	100
	전북서부	2,099	85.7	349	14.3	2,448	100
	소계	4,442	87.1	660	12.9	5,102	100
전남	전남	2,673	87.1	396	12.9	3,069	100
	전남서부	3,877	91.4	364	8.6	4,241	100
	소계	6,550	89.6	760	10.4	7,310	100
경북	경북	1,894	62.7	1,129	37.3	3,023	100
	경북서북부	2,830	79.3	739	20.7	3,569	100
	경북서남부	3,884	85.2	675	14.8	4,559	100
	소계	8,608	77.2	2,543	22.8	11,151	100
경남	경남	4,715	88.8	597	11.2	5,312	100
	경남서부	1,468	77.1	436	22.9	1,904	100
	소계	6,183	85.7	1,033	14.3	7,216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173	77.1	646	22.9	2,819	100
	제주도서귀포시	929	67.4	449	32.6	1,378	100
	소계	3,102	73.9	1,095	26.1	4,197	100
계		102,172	79.8	25,793	20.2	127,965	100



[그림 2-13] 지역 및 기관별 전체 상담횟수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횟수

학대사례 및 일반사례를 기준으로 한 사례당 상담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학대상담 횟수는 102,172건으로 평균 19.7회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사례 경우 총 10,294건 중 일반상담 횟수는 25,793회로 평균 2.5회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평균 27.9회로 가장 많은 학대상담이 이루어졌고, 강원도가 27.0회,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23.8회로 나타났다. 일반상담 횟수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6.2회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광역시가 3.7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일반상담의 경우 1~3회의 일회성 상담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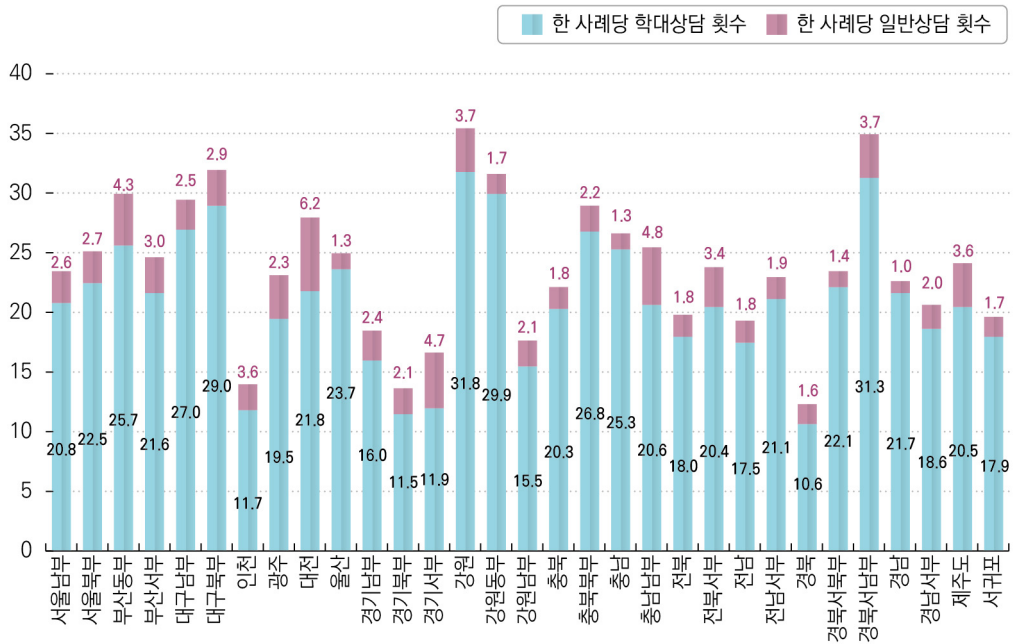
이를 기관별로 다시 살펴보면 학대상담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는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1.8회,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1.3회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상담의 한 사례당 상담횟수는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6.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8회,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7회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횟수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6,211	298	20.8	1,013	391	2.6
	서울북부	5,048	224	22.5	1,901	705	2.7
	소계	11,259	522	21.6	2,914	1,096	2.7
부산	부산동부	5,119	199	25.7	1,049	243	4.3
	부산서부	3,891	180	21.6	514	174	3.0
	소계	9,010	379	23.8	1,563	417	3.7
대구	대구남부	2,999	111	27.0	883	351	2.5
	대구북부	2,869	99	29.0	852	296	2.9
	소계	5,868	210	27.9	1,735	647	2.7
인천		5,121	436	11.7	859	371	2.3
광주		3,932	202	19.5	1,236	346	3.6
대전		2,751	126	21.8	2,425	393	6.2
울산		2,416	102	23.7	422	332	1.3
경기	경기남부	2,671	167	16.0	1,510	633	2.4
	경기북부	4,348	379	11.5	975	472	2.1
	경기서부	4,241	355	11.9	2,383	509	4.7
	소계	11,260	901	12.5	4,868	1,614	3.0
강원	강원	7,154	225	31.8	840	229	3.7
	강원동부	2,779	93	29.9	490	287	1.7
	강원남부	1,796	116	15.5	240	117	2.1
	소계	11,729	434	27.0	1,570	633	2.5
충북	충북	1,521	75	20.3	496	281	1.8
	충북북부	1,712	64	26.8	430	199	2.2
	소계	3,233	139	23.3	926	480	1.9
충남	충남	4,855	192	25.3	621	478	1.3
	충남남부	1,853	90	20.6	563	117	4.8
	소계	6,708	282	23.8	1,184	595	2.0
전북	전북	2,343	130	18.0	311	171	1.8
	전북서부	2,099	103	20.4	349	102	3.4
	소계	4,442	233	19.1	660	273	2.4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전남	전남	2,673	153	17.5	396	215	1.8
	전남서부	3,877	184	21.1	364	195	1.9
	소계	6,550	337	19.4	760	410	1.9
경북	경북	1,894	179	10.6	1,129	728	1.6
	경북서북부	2,830	128	22.1	739	527	1.4
	경북서남부	3,884	124	31.3	675	184	3.7
	소계	8,608	431	20.0	2,543	1,439	1.8
경남	경남	4,715	217	21.7	597	582	1.0
	경남서부	1,468	79	18.6	436	217	2.0
	소계	6,183	296	20.9	1,033	799	1.3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2,173	106	20.5	646	177	3.6
	제주도 서귀포시	929	52	17.9	449	272	1.7
	소계	3,102	158	19.6	1,095	449	2.4
계		102,172	5,188	19.7	25,793	10,294	2.5



[그림 2-14]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18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와 신고접수 건수, 상담 횟수, 현장조사 건수, 방문상담 횟수,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횟수,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횟수 등을 비교하였다.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 248명의 상담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각 기관의 기관장은 상담원 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2-1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단위: 명, 건, 회)

구 분	전체 상담원 업무량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원 수	248	-
신고접수 건수	15,482	62.4
상담횟수	127,965	516.0
현장조사 횟수	4,965	20.0
방문상담 횟수	25,767	103.9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145,552	586.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27,464	110.7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일반사례가 10,294건, 학대사례가 5,188건으로 총 15,482건이며, 이에 대한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 건수는 62.4회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례 상담은 사례의 상황에 따라 1~2회에서 종결되기도 하며 수십 차례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총 상담횟수는 127,965회로 상담원 1인당 상담횟수는 516.0회로 나타났으며, 월 43.0회, 하루 1.4회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이 되면 응급 사례의 경우 12시간 이내,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실시된 현장조사 횟수는 4,965회이며 1인당 현장조사 횟수는 20.0회로 나타났고, 방문상담의 경우 25,767회 진행되었으며 1인당 103.9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다.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145,552회,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27,464회로 나타났으며, 1인당 제공서비스는 각각 586.9회, 110.7회였다.

제3장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2. 사례판정



제3장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신고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수판정 시 노인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또한 학대의심사례로서 적합성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단 한 번의 현장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4,965건으로 현장조사 비율은 95.7%이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현장조사 거부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표 3-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5,188	4,965	95.7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100% 비율을 보였다.

학대사례에 대한 방문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5,188건 중 25,767회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 사례 당 평균 5.0회의 방문상담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방문상담 횟수의 경우 강원도가 10.1회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가 8.5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다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3.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0.2회,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9.7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서울	서울남부	298	296	99.3	996	3.3
	서울북부	224	220	98.2	1,186	5.3
	소계	522	516	98.9	2,182	4.2
부산	부산동부	199	199	100	1,190	6.0
	부산서부	180	180	100	594	3.3
	소계	379	379	100	1,784	4.7
대구	대구남부	111	110	99.1	898	8.1
	대구북부	99	99	100	470	4.7
	소계	210	209	99.5	1,368	6.5
인천		436	360	82.6	1,216	2.8
광주		202	202	100	737	3.6
대전		126	126	100	952	7.6
울산		102	96	94.1	751	7.4
경기	경기남부	167	153	91.6	680	4.1
	경기북부	379	378	99.7	827	2.2
	경기서부	355	296	83.4	771	2.2
	소계	901	827	91.8	2,278	2.5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강원	강원	225	221	98.2	3,076	13.7
	강원동부	93	88	94.6	901	9.7
	강원남부	116	114	98.3	392	3.4
	소계	434	423	97.5	4,369	10.1
충북	충북	75	73	97.3	531	7.1
	충북북부	64	64	100	653	10.2
	소계	139	137	98.6	1,184	8.5
충남	충남	192	188	97.9	1,490	7.8
	충남남부	90	88	97.8	446	5.0
	소계	282	276	97.9	1,936	6.9
전북	전북	130	130	100	462	3.6
	전북서부	103	102	99.0	849	8.2
	소계	233	232	99.6	1,311	5.6
전남	전남	153	153	100	549	3.6
	전남서부	184	180	97.8	1,007	5.5
	소계	337	333	98.8	1,556	4.6
경북	경북	179	167	93.3	446	2.5
	경북서북부	128	127	99.2	901	7.0
	경북서남부	124	124	100	852	6.9
	소계	431	418	97.0	2,199	5.1
경남	경남	217	208	95.9	692	3.2
	경남서부	79	78	98.7	531	6.7
	소계	296	286	96.6	1,223	4.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6	98	92.5	477	4.5
	제주도서귀포시	52	47	90.4	244	4.7
	소계	158	145	91.8	721	4.6
계		5,188	4,965	95.7	25,767	5.0

2 · 사례판정

현장조사 실시 후에는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를 사례판정이라고 한다. 사례판정은 상황의 위급성 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상황,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상황 등 학대의 심각성 및 응급성 여부에 따라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된다. 사례판정 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사례를 판정하되,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례를 판정해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밖의 유기 및 장기간 방임으로 인하여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 사례의 조치방법으로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인이 이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처리한다. 응급상태가 해결되면 비응급 사례 조치방법에 준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조치방법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며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에는 노인학대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조치 방법으로 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난 관계, 노인학대 유형, 학대발생 원인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이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신고자 및 학대피해노인의 연락두절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

이처럼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신고접수 된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목적에 따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문제 등 타 기관(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일반노인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018년 전체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판정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총 5,188건 중 비응급 사례가 3,221건(62.1%)으로 가장 높았으며 잠재적 사례가 1,862건(35.9%), 응급 사례가 105건(2.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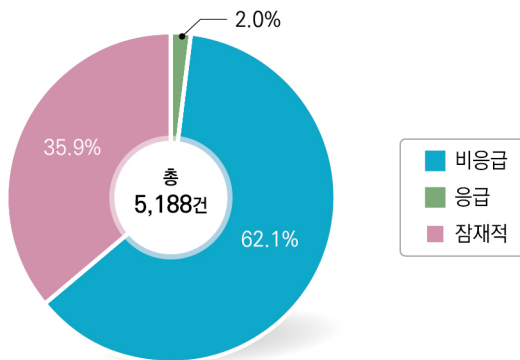
잠재적 사례의 경우 학대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응급 또는 비응급 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학대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표 3-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서울남부	5	1.7	251	84.2	42	14.1	298	100
	서울북부	8	3.6	119	53.1	97	43.3	224	100
	소계	13	2.5	370	70.9	139	26.6	522	100
부산	부산동부	1	0.5	138	69.3	60	30.2	199	100
	부산서부	3	1.7	132	73.3	45	25.0	180	100
	소계	4	1.1	270	71.2	105	27.7	379	100
대구	대구남부	1	0.9	37	33.3	73	65.8	111	100
	대구북부	-	-	62	62.6	37	37.4	99	100
	소계	1	0.5	99	47.1	110	52.4	210	100
인천		-	-	48	11.0	388	89.0	436	100
광주		18	8.9	171	84.7	13	6.4	202	100
대전		2	1.6	57	45.2	67	53.2	126	100
울산		-	-	91	89.2	11	10.8	102	100
경기	경기남부	7	4.2	106	63.5	54	32.3	167	100
	경기북부	9	2.4	257	67.8	113	29.8	379	100
	경기서부	5	1.4	128	36.1	222	62.5	355	100
	소계	21	2.3	491	54.5	389	43.2	901	100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강원	강원	-	-	208	92.4	17	7.6	225	100
	강원동부	-	-	52	55.9	41	44.1	93	100
	강원남부	1	0.9	103	88.8	12	10.3	116	100
	소계	1	0.2	363	83.6	70	16.1	434	100
충북	충북	8	10.7	60	80.0	7	9.3	75	100
	충북북부	5	7.8	25	39.1	34	53.1	64	100
	소계	13	9.4	85	61.2	41	29.5	139	100
충남	충남	8	4.2	150	78.1	34	17.7	192	100
	충남남부	5	5.6	57	63.3	28	31.1	90	100
	소계	13	4.6	207	73.4	62	22.0	282	100
전북	전북	-	-	115	88.5	15	11.5	130	100
	전북서부	1	1.0	53	51.5	49	47.6	103	100
	소계	1	0.4	168	72.1	64	27.5	233	100
전남	전남	8	5.2	144	94.1	1	0.7	153	100
	전남서부	1	0.5	142	77.2	41	22.3	184	100
	소계	9	2.7	286	84.9	42	12.5	337	100
경북	경북	4	2.2	30	16.8	145	81.0	179	100
	경북서북부	-	-	100	78.1	28	21.9	128	100
	경북서남부	-	-	110	88.7	14	11.3	124	100
	소계	4	0.9	240	55.7	187	43.4	431	100
경남	경남	2	0.9	107	49.3	108	49.8	217	100
	경남서부	-	-	54	68.4	25	31.6	79	100
	소계	2	0.7	161	54.4	133	44.9	296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	1.9	67	63.2	37	34.9	106	100
	제주도서귀포시	1	1.9	47	90.4	4	7.7	52	100
	소계	3	1.9	114	72.2	41	25.9	158	100
계		105	2.0	3,221	62.1	1,862	35.9	5,188	100



[그림 3-1] 지역별 사례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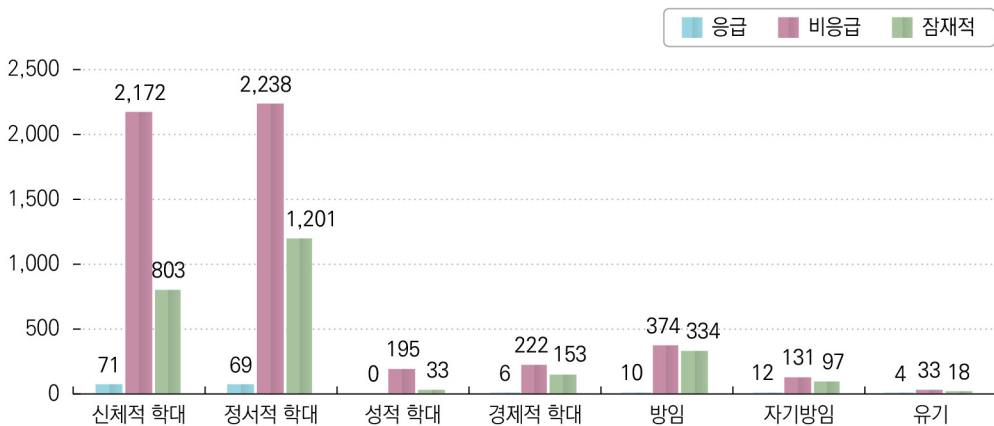
[표 3-4]는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을 교차분석 한 것으로, 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자기방임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다른 노인학대 유형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응급 사례와 잠재적 사례의 경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나 응급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3-4] 사례판정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체적 학대	71	41.3	2,172	40.5	803	30.4	3,046	37.3
정서적 학대	69	40.1	2,238	41.7	1,201	45.5	3,508	42.9
성적 학대	-	-	195	3.6	33	1.3	228	2.8
경제적 학대	6	3.5	222	4.1	153	5.8	381	4.7
방임	10	5.8	374	7.0	334	12.7	718	8.8
자기방임	12	7.0	131	2.4	97	3.7	240	2.9
유기	4	2.3	33	0.6	18	0.7	55	0.7
계	172	100	5,365	100	2,639	100	8,176	100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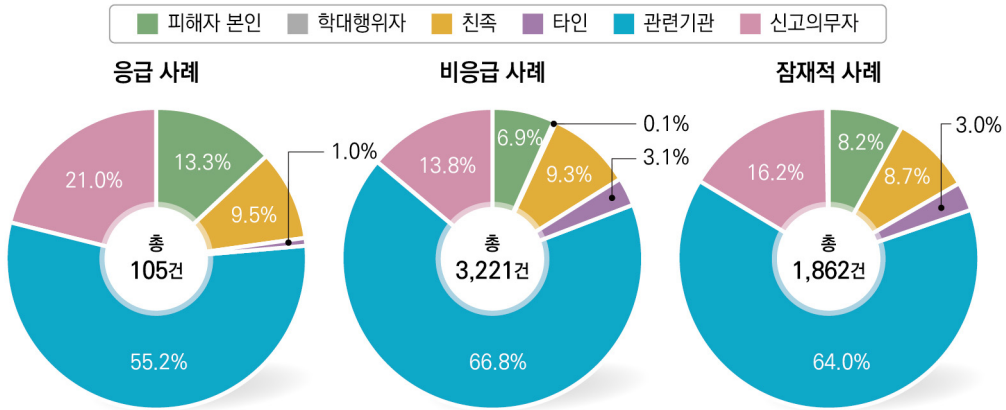
[그림 3-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3-5]는 사례판정별 신고자 유형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응급 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관련기관 - 신고의무자 - 피해자 본인 - 친족 - 타인 순이며, 비응급 사례와 잠재적 사례 모두 관련기관 - 신고의무자 - 친족 - 피해자 본인 - 타인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판정 결과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관련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3-5] 신고자 유형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신고자유형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피해자 본인	14	13.3	221	6.9	152	8.2	387	7.4
학대행위자	-	-	4	0.1	-	-	4	0.1
친족 ¹⁸⁾	10	9.5	300	9.3	162	8.7	472	9.1
타인 ¹⁹⁾	1	1.0	100	3.1	55	3.0	156	3.0
관련기관 ²⁰⁾	58	55.2	2,152	66.8	1,192	64.0	3,402	65.6
신고의무자	22	21.0	444	13.8	301	16.2	767	14.8
계	105	100	3,221	100	1,862	100	5,188	100



[그림 3-3] 사례판정 결과별 학대 신고자 유형

18)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19) 타인에는 기타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가 해당됨.

20)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제4장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학대피해노인 현황
2. 학대행위자 현황
3.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제4장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 학대피해노인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성별

2018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5,188건 중 남녀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노인이 3,835건(73.9%), 남성노인이 1,353건 (26.1%)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약 2.8배 높게 나타났다.

[표 4-1] 65세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인구 수	비 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 율
남	3,272,648	42.8	1,353	26.1
여	4,377,760	57.2	3,835	73.9
계	7,650,408	100.0	5,188	100.0

주. 65세 이상 인구 수 : 행정자치부 2018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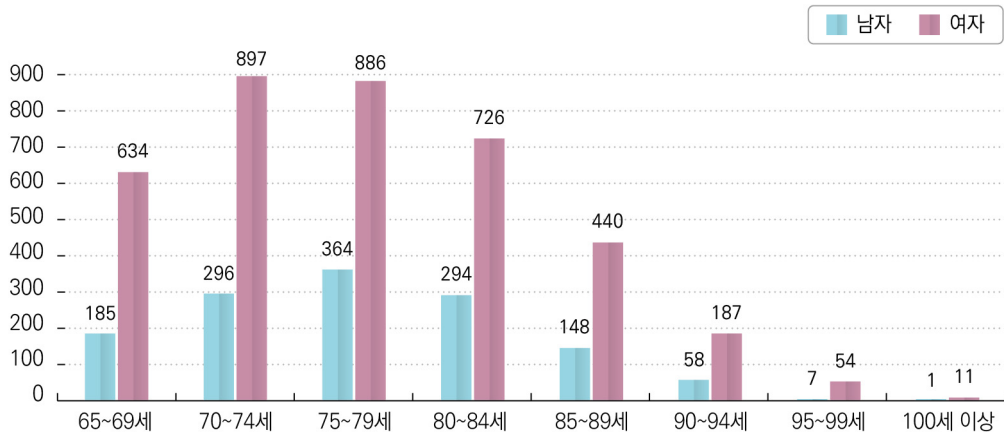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70대를 기점으로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 819명(15.8%), 70대 2,443명(47.1%), 80대 1,608 명(31.0 %)으로 나타나, 70대를 기준으로 학대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85	296	364	294	148	58	7	1	1,353
	13.7	21.9	26.9	21.7	10.9	4.3	0.5	0.1	100
여성	634	897	886	726	440	187	54	11	3,835
	16.5	23.4	23.1	18.9	11.5	4.9	1.4	0.3	100
계	819	1,193	1,250	1,020	588	245	61	12	5,188
	15.8	23.0	24.1	19.7	11.3	4.7	1.2	0.2	100



[그림 4-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지역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강원도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대전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61	20.5	237	79.5	298	100
	서울북부	63	28.1	161	71.9	224	100
	소계	124	23.8	398	76.2	522	100
부산	부산동부	39	19.6	160	80.4	199	100
	부산서부	55	30.6	125	69.4	180	100
	소계	94	24.8	285	75.2	379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대구	대구남부	28	25.2	83	74.8	111	100
	대구북부	18	18.2	81	81.8	99	100
	소계	46	21.9	164	78.1	210	100
	인천	116	26.6	320	73.4	436	100
	광주	60	29.7	142	70.3	202	100
	대전	22	17.5	104	82.5	126	100
	울산	21	20.6	81	79.4	102	100
경기	경기남부	38	22.8	129	77.2	167	100
	경기북부	107	28.2	272	71.8	379	100
	경기서부	95	26.8	260	73.2	355	100
	소계	240	26.6	661	73.4	901	100
강원	강원	66	29.3	159	70.7	225	100
	강원동부	29	31.2	64	68.8	93	100
	강원남부	53	45.7	63	54.3	116	100
	소계	148	34.1	286	65.9	434	100
충북	충북	17	22.7	58	77.3	75	100
	충북북부	12	18.8	52	81.3	64	100
	소계	29	20.9	110	79.1	139	100
충남	충남	56	29.2	136	70.8	192	100
	충남남부	17	18.9	73	81.1	90	100
	소계	73	25.9	209	74.1	282	100
전북	전북	29	22.3	101	77.7	130	100
	전북서부	39	37.9	64	62.1	103	100
	소계	68	29.2	165	70.8	233	100
전남	전남	39	25.5	114	74.5	153	100
	전남서부	50	27.2	134	72.8	184	100
	소계	89	26.4	248	73.6	337	100
경북	경북	47	26.3	132	73.7	179	100
	경북서북부	37	28.9	91	71.1	128	100
	경북서남부	31	25.0	93	75.0	124	100
	소계	115	26.7	316	73.3	431	100
경남	경남	55	25.3	162	74.7	217	100
	경남서부	16	20.3	63	79.7	79	100
	소계	71	24.0	225	76.0	296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2	20.8	84	79.2	106	100
	제주도서귀포시	15	28.8	37	71.2	52	100
	소계	37	23.4	121	76.6	158	100
	계	1,353	26.1	3,835	73.9	5,1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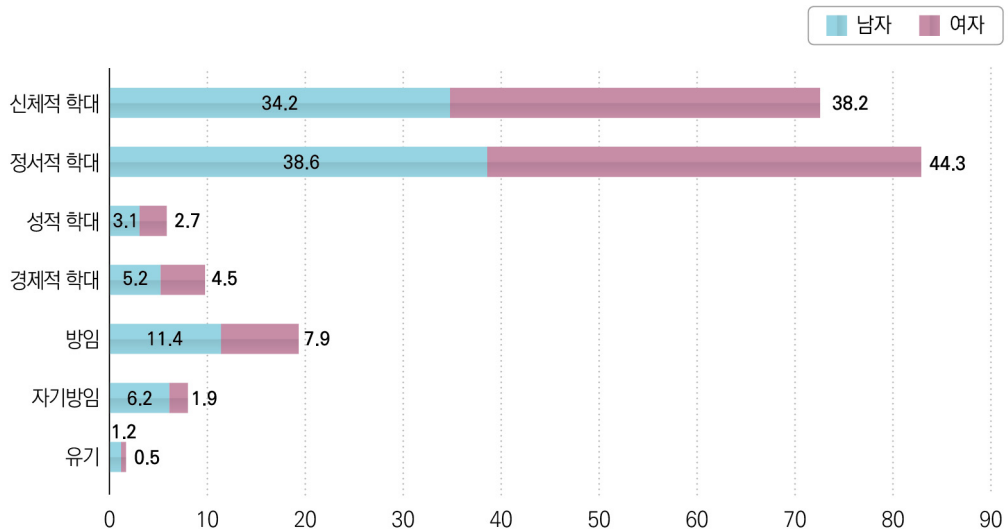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각각 778건(38.6%), 2,730건(44.3%)으로 정서적 학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의 순을 보였다.

[표 4-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남성	689	778	63	104	230	125	24	2,013
	34.2	38.6	3.1	5.2	11.4	6.2	1.2	100
여성	2,357	2,730	165	277	488	115	31	6,163
	38.2	44.3	2.7	4.5	7.9	1.9	0.5	100
계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37.3	42.9	2.8	4.7	8.8	2.9	0.7	100



[그림 4-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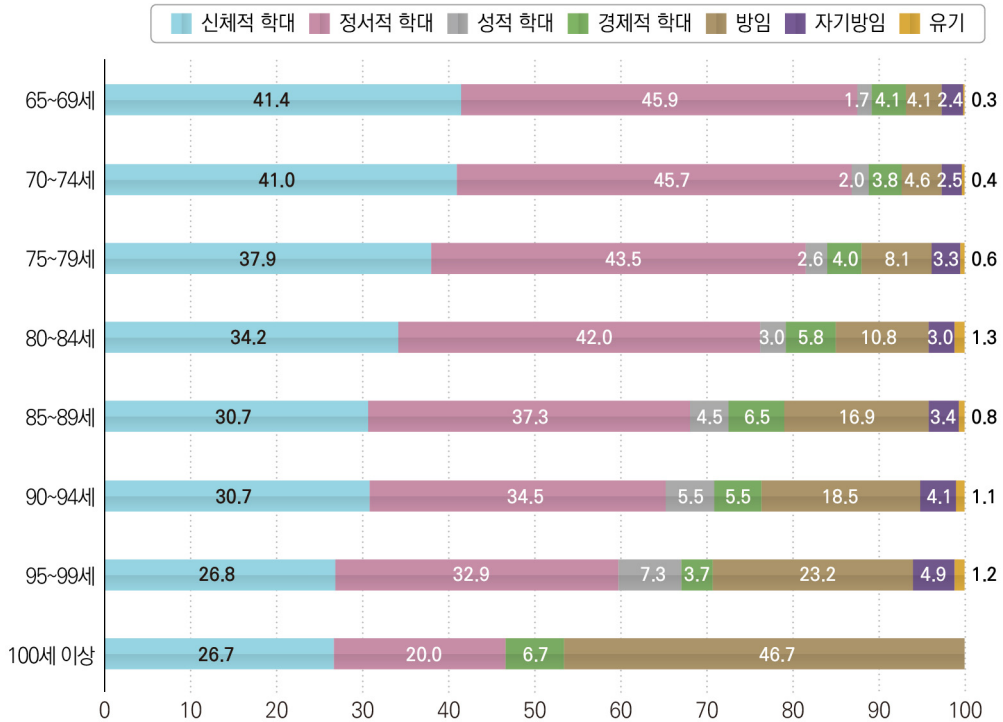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별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508건(42.9%)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방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65~69세	553	613	23	55	55	32	4	1,335
	41.4	45.9	1.7	4.1	4.1	2.4	0.3	100
70~74세	798	890	39	74	89	48	8	1,946
	41.0	45.7	2.0	3.8	4.6	2.5	0.4	100
75~79세	746	856	52	79	160	64	11	1,968
	37.9	43.5	2.6	4.0	8.1	3.3	0.6	100
80~84세	539	662	48	91	171	47	20	1,578
	34.2	42.0	3.0	5.8	10.8	3.0	1.3	100
85~89세	273	332	40	58	150	30	7	890
	30.7	37.3	4.5	6.5	16.9	3.4	0.8	100
90~94세	111	125	20	20	67	15	4	362
	30.7	34.5	5.5	5.5	18.5	4.1	1.1	100
95~99세	22	27	6	3	19	4	1	82
	26.8	32.9	7.3	3.7	23.2	4.9	1.2	100
100세 이상	4	3	-	1	7	-	-	15
	26.7	20.0	-	6.7	46.7	-	-	100
계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37.3	42.9	2.8	4.7	8.8	2.9	0.7	100



[그림 4-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의 개인사, 가족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나눈 뒤, 배우자 있음의 세부 항목은 초혼, 재혼, 사실혼으로, 배우자 없음은 사별, 이혼, 별거, 가출,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5,188명 중 배우자 있음의 경우 2,863명(55.2%), 배우자 없음이 2,325명(44.8%)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가장 많은 결혼 유형은 초혼 노인 2,570명으로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49.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4-6] 학대피해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있음	초혼	2,570	49.5
	재혼	179	3.5
	사실혼	114	2.2
	소계	2,863	55.2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없음	사별	1,948	37.5
	이혼	236	4.5
	별거	54	1.0
	가출	5	0.1
	미혼	82	1.6
	소계	2,325	44.8
계		5,188	100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70.6%(3,662명)가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우 학대위험요인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따로 거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표 4-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3,662	1,526	5,188
70.6	29.4	100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가족 및 기타 타인 등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환경 및 지지자원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8년 신고접수 된 노인학대 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218명으로 40.1%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동거자 유형으로는 아들 1,731명(31.3%), 손자녀 471명(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	2,218	40.1
아들	1,731	31.3

구 분	명 수	비 율
손자녀	471	8.5
딸	374	6.8
시 설	305	5.5
며느리	218	3.9
병 원	65	1.2
기타 동거인	59	1.1
사 위	53	1.0
기타 친·인척	37	0.7
계	5,531	100

* 중복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학대피해노인과 동거가족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부부가구,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 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 동거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이 포함된다.

2018년 접수된 전체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 가구형태가 1,738명(3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부부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피해자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단독	999	19.3
노인부부	1,512	29.1
자녀동거	1,738	33.5
손자녀동거	187	3.6
자녀·손자녀동거	252	4.9
기 타	500	9.6
계	5,188	100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란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주거형태는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무상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학대피해노인이 3,113명(6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가 581명(11.2%), 월세가 467명(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무상	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기타	계
3,113	581	467	285	182	151	120	84	33	172	5,188
60.0	11.2	9.0	5.5	3.5	2.9	2.3	1.6	0.6	3.3	10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51명(16.4%)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 노인실태조사²¹⁾와 비교하면 여전히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1]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8	851
	16.4

21)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6.4%임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초졸이 2,225명(42.9%)으로 가장 높았고, 무학이 1,603명(30.9%), 중졸이 635명(12.2%)으로 나타나 무학 및 초졸이 73.8%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1,603	2,225	635	586	139	5,188
30.9	42.9	12.2	11.3	2.7	10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직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581명(88.3%)으로 대부분의 학대피해노인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199명(3.8%), 농·어·축산업 종사자가 155명(3.0%)의 순이었다.

[표 4-13]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무직	4,581	88.3
단순노무종사자	199	3.8
농·어·축산업 종사자	155	3.0
자영업자	106	2.0
서비스·판매종사자	79	1.5
전문직	22	0.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0.3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2	0.2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0.2
사무종사자	6	0.1
종교인	4	0.1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	0.0
계	5,188	10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 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 유형 등이 해당된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이다.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으로는 악성신생물(암),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만성간염·간염변,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혈압, 저혈압, 중풍·뇌혈관 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 폐결핵·결핵, 만성기관지염, 천식,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만성신장질환, 빈혈, 피부병, 골절·후유증,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질병 건수는 4,31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고혈압이 966건(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이 718건(16.7%), 기타가 700건(16.2%), 당뇨병이 522건(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고혈압	966	22.4
관절염	718	16.7
당뇨병	522	12.1
디스크	244	5.7
신경통	181	4.2
중풍, 뇌혈관 질환	176	4.1
골다공증	164	3.8
골절, 후유증	100	2.3
협심증, 심근경색증	95	2.2
요통, 좌골통	91	2.1
악성신생물(암)	56	1.3
갑상선 질환	49	1.1
천식	46	1.1
빈혈	35	0.8
만성신장질환	33	0.8
소화성궤양	33	0.8

구 분	건 수	비 율
백내장	26	0.6
피부병	26	0.6
녹내장	17	0.4
저혈압	12	0.3
만성기관지염	8	0.2
폐결핵, 결핵	8	0.2
만성간염,간경변	5	0.1
만성중이염	1	0.0
기타	700	16.2
계	4,312	100

* 중복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5,188명 중 548명(10.6%)으로 집계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노인 중 491명(89.6%)은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명,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57	10.4
2개 이상	491	89.6
계	548	100

* 중복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되는데, 신체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등이 해당되고,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해당된다.

2018년 학대피해노인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장애는 376건(68.6%)이며 정신장애는 172건(31.4%)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로 154건(28.1%)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울장애 124건(22.6%), 청각장애 80건(14.6%)으로 나타났다.

[표 4-16]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54	28.1
	청각장애	80	14.6
	시각장애	70	12.8
	뇌병변장애	41	7.5
	신장장애	11	2.0
	언어장애	7	1.3
	심장장애	5	0.9
	간질장애	4	0.7
	호흡기장애	2	0.4
	장루요루장애	2	0.4
	소계	376	68.6
정신 장애	우울장애	124	22.6
	정신분열	26	4.7
	정동장애	3	0.5
	반사회적 인격장애	1	0.2
	지적장애	18	3.3
	소계	172	31.4
계	548	100	

* 중복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8년 발생한 학대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총 1,20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3.3%로 집계되었다. 이 중 507건(9.8%)은 치매의심이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700건(13.5%)으로 나타났다.

[표 4-17]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5,188	507	700	1,207
	9.8	13.5	23.3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 및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62건(1.2%)이 중독 유형을 보였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59건으로 중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18]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단위: 건, %)

전체학대사례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계
5,188	59	2	1	62
	1.1	0.0	0.0	1.2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 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 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을 통해 파악한다.

2018년 접수된 학대사례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 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1~74%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이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각각의 항목은 68~72% 수준에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완전도움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9% 수준이었으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각각의 항목은 8~11% 수준으로 나타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 조금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990	392	3,806	5,188
		19.1	7.6	73.4	100
	세수하기	979	391	3,818	5,188
		18.9	7.5	73.6	100
	양치질하기	973	398	3,817	5,188
		18.8	7.7	73.6	100
	목욕하기	1,016	466	3,706	5,188
		19.6	9.0	71.4	100
	식사하기	1,040	381	3,767	5,188
		20.0	7.3	72.6	100
	체위변경하기	991	371	3,826	5,188
		19.1	7.2	73.7	100
	일어나 앉기	1,002	378	3,808	5,188
		19.3	7.3	73.4	100
	움켜 타기	1,003	409	3,776	5,188
		19.3	7.9	72.8	100
	방밖으로 나오기	997	395	3,796	5,188
		19.2	7.6	73.2	100
	화장실 사용하기	994	404	3,790	5,188
		19.2	7.8	73.1	100
대변조절하기	960	397	3,831	5,188	
	18.5	7.7	73.8	100	
소변조절하기	959	396	3,833	5,188	
	18.5	7.6	73.9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안전자립	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1,029	417	3,742	5,188
		19.8	8.0	72.1	100
	집안일 하기	1,093	526	3,569	5,188
		21.1	10.1	68.8	100
	식사준비하기	1,074	520	3,594	5,188
		20.7	10.0	69.3	100
	빨래하기	1,056	546	3,586	5,188
		20.4	10.5	69.1	100
	근거리 외출하기	1,092	532	3,564	5,188
		21.0	10.3	68.7	100
	교통수단 이용하기	1,086	576	3,526	5,188
		20.9	11.1	68.0	100
	물건 사러가기	1,067	553	3,568	5,188
		20.6	10.7	68.8	100
	금전관리하기	1,043	540	3,605	5,188
		20.1	10.4	69.5	100
	전화 사용하기	990	473	3,725	5,188
		19.1	9.1	71.8	100
	약 챙겨 먹기	1,020	468	3,700	5,188
		19.7	9.0	71.3	100

15)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긴급복지지원 연결,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재가서비스 연결,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기타자원 연결, 후원 연결, 직접 후원 등이 해당된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연결, 법률소송 지원,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이며, 의료서비스는

연계(이송),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연계(방문간호), 지원(이송 및 동행), 지원(의료비 지급)으로 분류된다. 보호서비스는 지킴이 연결, 시설보호, 일시보호 등이 해당되며 정보제공 서비스는 정보제공, 재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2018년 접수된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총 145,552회이며 이 중 상담서비스가 84,346회(57.9%)로 가장 높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48,988회(33.7%), 복지 서비스 제공이 9,691회(6.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담서비스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이 39,103회(26.9%), 관련자 상담이 32,280회(22.2%), 가족상담 12,298회(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상담이란 학대피해노인의 관련자로서 이웃, 회사동료, 동사무소 등의 상담을 의미한다. 상담서비스의 주된 기능은 객관적인 상황판단 및 가족 간 변화를 파악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입을 위한 노력,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닌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표 4-20]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39,103	26.9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257	0.2
	가족상담	12,298	8.4
	관련자 상담	32,280	22.2
	심리 및 기타검사	408	0.3
	소계	84,346	57.9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80	0.1
	긴급복지지원연결	40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17	0.0
	재가 서비스 연결	176	0.1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2,963	2.0
	기타자원 연결	4,480	3.1
	후원 연결	345	0.2
	직접 후원	1,590	1.1
	소계	9,691	6.7

구 분		횟 수	비 율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242	0.2
	법률소송지원	22	0.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15	0.0
	소계	279	0.2
의료서비스	연계(이송)	117	0.1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234	0.2
	연계(방문간호)	35	0.0
	지원(이송 및 동행)	473	0.3
	지원(의료비 지급)	253	0.2
	소계	1,112	0.8
보호서비스	지킴이연결	279	0.2
	시설보호	57	0.0
	일시보호	800	0.6
	소계	1,136	0.8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44,749	30.7
	재학대 예방교육	4,239	2.9
	소계	48,988	33.7
계		145,552	100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각 비율의 소계가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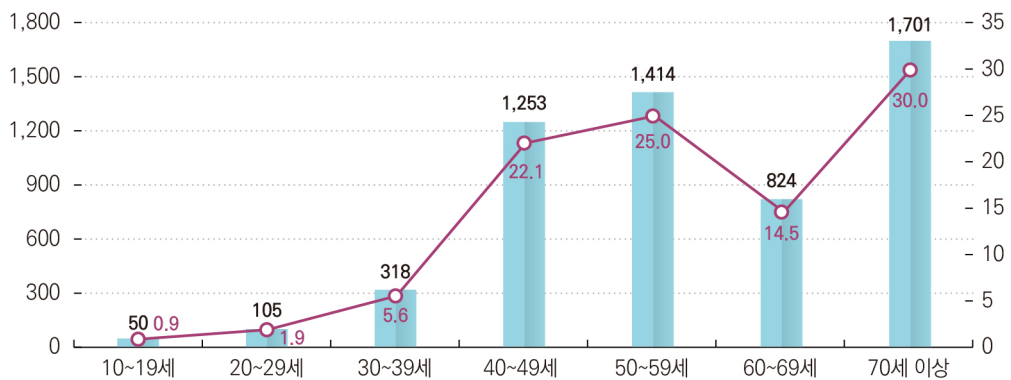
2018년 학대피해노인 5,188명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5,665명으로 한 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수보다 행위자가 더 많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남성은 4,008명(70.8%)이며 여성은 1,657명(29.2%)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1,701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1,414명, 25.0%), 40대(1,253명, 22.1%)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1,402건(35.0%)으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50대가 476건(2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37	82	229	877	938	443	1,402	4,008
	0.9	2.0	5.7	21.9	23.4	11.1	35.0	100
여성	13	23	89	376	476	381	299	1,657
	0.8	1.4	5.4	22.7	28.7	23.0	18.0	100
계	50	105	318	1,253	1,414	824	1,701	5,665
	0.9	1.9	5.6	22.1	25.0	14.5	30.0	100



[그림 4-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2) 학대행위자 지역 및 기관별 분포

학대행위자의 지역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경기도가 952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683명(12.1%), 서울특별시가 537명(9.5%)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 학대행위자 분포는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452명(8.0%)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442명(7.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00명(7.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55명(1.0%)으로 학대행위자 분포가 가장 적었으며,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67명(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는 715명(75.1%)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여성 학대행위자는 430명(63.0%)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4-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247	80.5	60	19.5	307	100
	서울북부	174	75.7	56	24.3	230	100
	소계	421	78.4	116	21.6	537	100
부산	부산동부	176	81.5	40	18.5	216	100
	부산서부	152	81.7	34	18.3	186	100
	소계	328	81.6	74	18.4	402	100
대구	대구남부	87	77.0	26	23.0	113	100
	대구북부	90	89.1	11	10.9	101	100
	소계	177	82.7	37	17.3	214	100
인천		358	81.0	84	19.0	442	100
광주		170	79.4	44	20.6	214	100
대전		58	41.1	83	58.9	141	100
울산		69	64.5	38	35.5	107	100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경기	경기남부	132	73.7	47	26.3	179	100
	경기북부	299	74.8	101	25.3	400	100
	경기서부	284	76.1	89	23.9	373	100
	소계	715	75.1	237	24.9	952	100
강원	강원	96	21.2	356	78.8	452	100
	강원동부	87	82.1	19	17.9	106	100
	강원남부	70	56.0	55	44.0	125	100
	소계	253	37.0	430	63.0	683	100
충북	충북	64	84.2	12	15.8	76	100
	충북북부	52	77.6	15	22.4	67	100
	소계	116	81.1	27	18.9	143	100
충남	충남	150	74.3	52	25.7	202	100
	충남남부	76	82.6	16	17.4	92	100
	소계	226	76.9	68	23.1	294	100
전북	전북	107	75.4	35	24.6	142	100
	전북서부	78	75.7	25	24.3	103	100
	소계	185	75.5	60	24.5	245	100
전남	전남동부	121	79.1	32	20.9	153	100
	전남서부	141	71.9	55	28.1	196	100
	소계	262	75.1	87	24.9	349	100
경북	경북	143	79.0	38	21.0	181	100
	경북서북부	110	83.3	22	16.7	132	100
	경북서남부	97	74.0	34	26.0	131	100
	소계	350	78.8	94	21.2	444	100
경남	경남	158	69.9	68	30.1	226	100
	경남서부	49	47.1	55	52.9	104	100
	소계	207	62.7	123	37.3	330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9	61.1	44	38.9	113	100
	제주도서귀포시	44	80.0	11	20.0	55	100
	소계	113	67.3	55	32.7	168	100
계		4,008	70.8	1,657	29.2	5,665	100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된다. 친족은 다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며, 타인은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타인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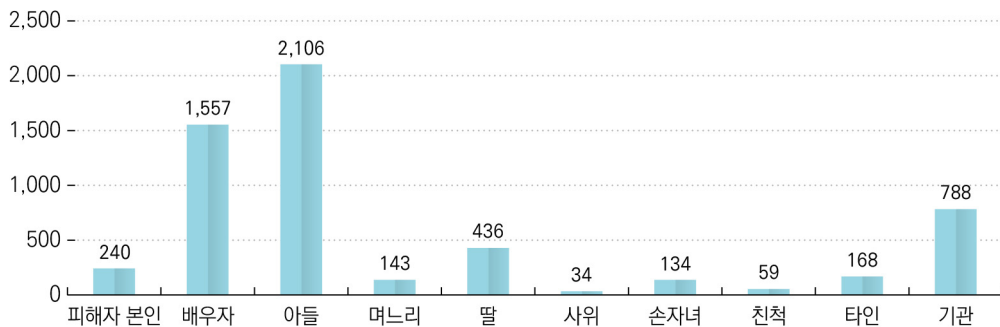
2018년 접수된 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 관계인 경우가 4,469명(78.9%)으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2,106명(3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배우자 1,557명(27.5%), 딸 436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들의 경우는 전체 세부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37.2%)을 보였으며, 배우자의 경우도 전체 세부항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27.5%)을 보였다. 아들과 딸을 합친 자녀의 경우는 2,542명(44.9%)으로 학대행위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친족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기관 788명(13.9%), 피해자 본인 240명(4.2%)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는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기방임 사례에 해당한다. 학대행위자가 동거인·이웃·친구 등의 타인인 경우는 168명(3.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 인	기 관	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친 척			
240	1,557	2,106	143	436	34	134	59	168	788	5,665
4.2	27.5	37.2	2.5	7.7	0.6	2.4	1.0	3.0	13.9	100



[그림 4-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7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가 1,313명(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피해노인 본인 209명(3.7%), 기관 71명(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대행위자의 연령 분포가 높게 나타난 50대(1,414명, 25.0%)와 40대(1,253명, 22.1%)에서는 아들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각각 815명(14.4%), 835명(14.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 부양층인 40-50대 중 부양부담을 주로 안고 있는 아들에 의해 노인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4]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10~19세	-	-	-	-	-	-	50	-	-	-	50
	-	-	-	-	-	-	0.9	-	-	-	0.9
20~29세	-	-	25	4	3	-	56	1	-	16	105
	-	-	0.4	0.1	0.1	-	1.0	0.0	-	0.3	1.9
30~39세	-	1	202	15	41	3	21	3	1	31	318
	-	0.0	3.6	0.3	0.7	0.1	0.4	0.1	0.0	0.5	5.6
40~49세	-	4	835	49	170	5	6	6	17	161	1,253
	-	0.1	14.7	0.9	3.0	0.1	0.1	0.1	0.3	2.8	22.1
50~59세	-	22	815	47	171	15	1	11	41	291	1,414
	-	0.4	14.4	0.8	3.0	0.3	0.0	0.2	0.7	5.1	25.0
60~69세	31	217	205	27	47	11	-	21	47	218	824
	0.5	3.8	3.6	0.5	0.8	0.2	-	0.4	0.8	3.8	14.5
70세이상	209	1,313	24	1	4	-	-	17	62	71	1,701
	3.7	23.2	0.4	0.0	0.1	-	-	0.3	1.1	1.3	30.0
계	240	1,557	2,106	143	436	34	134	59	168	788	5,665
	4.2	27.5	37.2	2.5	7.7	0.6	2.4	1.0	3.0	13.9	100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의 가구유형이 자녀동거가구(1,297명, 72.8%)이거나 노인단독가구(405명, 36.8%), 혹은 자녀·손자녀가구(121명, 46.2%)인 경우 아들이 주 학대행위자로 나타났다. 2018년도 학대피해노인의 가구 유형은 자녀동거가구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 학대행위자가 아들인 경우와 유사하게 친족에 의한 학대(1,737명, 97.5%)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노인부부가구는 배우자가 1,245명(81.8%), 손자녀 동거가구에서는 손자녀가 78명(4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의 경우 주 학대행위자는 기관(655명, 81.0%)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친족이며,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 구성에 따라 학대행위자 유형도 대체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노인단독	187	56	405	33	175	9	20	23	721	81	111	1,100
	17.0	5.1	36.8	3.0	15.9	0.8	1.8	2.1	65.5	7.4	10.1	100
노인부부	22	1,245	177	8	29	1	2	3	1,465	27	8	1,522
	1.4	81.8	11.6	0.5	1.9	0.1	0.1	0.2	96.3	1.8	0.5	100
손자녀동거	2	23	62	8	12	2	78	3	188	1	-	191
	1.0	12.0	32.5	4.2	6.3	1.0	40.8	1.6	98.4	0.5	-	100
자녀·손자녀 동거	4	31	121	35	29	9	28	2	255	1	2	262
	1.5	11.8	46.2	13.4	11.1	3.4	10.7	0.8	97.3	0.4	0.8	100
자녀동거	17	186	1,297	52	182	11	6	3	1,737	15	12	1,781
	1.0	10.4	72.8	2.9	10.2	0.6	0.3	0.2	97.5	0.8	0.7	100
기타	8	16	44	7	9	2	-	25	103	43	655	809
	1.0	2.0	5.4	0.9	1.1	0.2	-	3.1	12.7	5.3	81.0	100
소계	240	1,557	2,106	143	436	34	134	59	4,469	168	788	5,665
	4.2	27.5	37.2	2.5	7.7	0.6	2.4	1.0	78.9	3.0	13.9	100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는 70세 이상이 1,599명(33.5%)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50대가 232명(34.5%), 이용시설도 50대가 35명(8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60대(45명, 57.7%)의 학대행위자가, 공공장소에서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20명(4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장소에서는 50대와 60대가 동일하게 12명(26.1%)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의 학대행위자가 가장 많았다.

[표 4-26]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가정내	50	88	281	1,080	1,100	579	1,599	4,777
	1.0	1.8	5.9	22.6	23.0	12.1	33.5	100
생활시설	-	13	31	149	232	174	74	673
	-	1.9	4.6	22.1	34.5	25.9	11.0	100
이용시설	-	1	-	5	35	2	-	43
	-	2.3	-	11.6	81.4	4.7	-	100
병원	-	2	-	5	25	45	1	78
	-	2.5	-	6.4	31.2	57.7	1.3	100
공공장소	-	1	2	3	10	12	20	48
	-	2.1	4.2	6.3	20.8	25.0	41.7	100
기타	-	-	4	11	12	12	7	46
	-	-	8.7	23.9	26.1	26.1	15.2	100
계	50	105	318	1,253	1,414	824	1,701	5,665
	0.9	1.9	5.6	22.1	25.0	14.5	30.0	100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장소별 전체적인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 내의 경우 아들이 2,083명(43.6%), 배우자 1,552명(32.5%), 딸 427명(8.9%) 순이었으며, 아들이 주 학대행위자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의 기관에 의한 학대행위자가 667명(99.1%)이었고,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의 주 학대행위자는 타인으로, 30명(62.5%)이었으며, 기타의 경우 아들이 18명(39.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인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배우자-기관 순으로 나타나지만, 학대발생장소에 따라 학대행위자 유형도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4-27]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피해자 본인	231	-	-	-	4	5	240
	4.8	-	-	-	8.3	10.9	4.2
배우자	1,552	-	-	-	3	2	1,557
	32.5	-	-	-	6.3	4.3	27.5
아들	2,083	-	-	-	5	18	2,106
	43.6	-	-	-	10.4	39.1	37.2
며느리	143	-	-	-	-	-	143
	3.0	-	-	-	-	-	2.5
딸	427	1	1	-	3	4	436
	8.9	0.1	2.3	-	6.3	8.7	7.7
사위	33	-	-	-	1	-	34
	0.7	-	-	-	2.1	-	0.6
손자녀	133	-	-	-	1	-	134
	2.8	-	-	-	2.1	-	2.4
친척	56	1	-	-	1	1	59
	1.2	0.1	-	-	2.1	2.2	1.0
타인	114	4	-	5	30	15	168
	2.4	0.6	-	6.4	62.5	32.6	3.0
기관	5	667	42	73	-	1	788
	0.1	99.1	97.7	93.6	-	2.2	13.9
계	4,777	673	43	78	48	46	5,6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생활시설-딸: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생활시설-친척: 학대행위자 중 친척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이용시설-딸: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함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학대행위자의 결혼여부 및 그 유형을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분류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있음은 초혼, 재혼, 사실혼으로, 배우자 없음은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로 다시 분류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은 3,402명(60.1%), 배우자 없음은 2,263명(39.9%)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가 3,089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1,354명(2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이혼 624명(11.0%), 재혼 196명(3.5%), 사별 171명(3.0%)으로 나타났다.

[표 4-28]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 있음	초혼	3,089	54.5
	재혼	196	3.5
	사실혼	117	2.1
	소계	3,402	60.1
배우자 없음	미혼	1,354	23.9
	사별	171	3.0
	이혼	624	11.0
	별거	94	1.7
	가출	20	0.4
	소계	2,263	39.9
계		5,665	100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91명(10.4%)으로 나타났다.

[표 4-29]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665	591
	10.4

한편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대행위자 591명 중 70대 이상이 189명(32.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38명(23.4%), 40대가 130명(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17년의 경우 노년층의 학대행위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중장년층의 학대행위자 수급 비중은 증가한 반면('16년 40-50대: 202명, 35.0%, 60-70대 이상: 344명, 59.6% → '17년 40-50대: 264명, 46.0%, 60-70대 이상: 266명, 46.3%) 2018년은 전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4-3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19세	11
	1.9
20~29세	9
	1.5
30~39세	26
	4.4
40~49세	130
	22.0
50~59세	138
	23.4
60~69세	88
	14.9
70세 이상	189
	32.0
계	591
	10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2,217명(3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137명으로 20.1%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 미이수에 해당하는 중졸 이하가 2,311명(40.8%)으로 나타났다.

[표 4-31]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416	990	905	2,217	1,137	5,665
7.3	17.5	16.0	39.1	20.1	100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된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3,371명(59.5%)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539명(9.5%), 서비스·판매종사자가 534명(9.4%), 전문직이 506명(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3,371	59.5
단순노무종사자	539	9.5
서비스·판매종사자	534	9.4
전문직	506	8.9
자영업자	220	3.9
농·어·축산업종사자	166	2.9
사무종사자	143	2.5
기술공및준전문가	87	1.5
기능업및관련기능종사자	42	0.7
공무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29	0.5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18	0.3
종교인	10	0.2
계	5,665	100

8) 학대행위자 장애 및 중독유형

학대행위자 중 장애를 가진 경우는 전체 5,665명 중 766명으로 13.5%에 해당된다.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신체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등이 해당된다. 정신장애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가 해당된다.

학대행위자의 신체장애는 204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26.6%에 해당되며, 정신장애는

562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행위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장애보다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정신장애 중에서도 정신분열이 239명(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가 177명(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33]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88	11.5
	청각장애	38	5
	뇌병변장애	22	2.9
	시각장애	22	2.9
	간질장애	16	2.1
	언어장애	12	1.6
	신장장애	4	0.5
	간장애	1	0.1
	호흡기장애	1	0.1
	안면장애	-	-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소계	204	26.6
정신 장애	정신분열	239	31.2
	우울장애	177	23.1
	지적장애	73	9.5
	반사회적 인격장애	43	5.6
	정동장애	26	3.4
	자폐성장애	4	0.5
	소계	562	73.4
계	766	100	

학대행위자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949명(16.8%)이 중독 유형에 해당되었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887명(15.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도박중독은 32명(0.6%), 약물 사용 장애 30명(0.5%)으로 나타났다.

[표 4-34]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계
5,665	32	887	30	949
	0.6	15.7	0.5	16.8

9)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는 처벌보단 상담·치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8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7,464회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경우 총 15,422회(56.2%)를 제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재학대 예방교육 및 기타 정보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가 11,026회(4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사회 복지서비스 연결 등의 복지서비스가 852회(3.1%), 의료서비스가 151회(0.5%), 법률서비스가 13회(0.0%)의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주로 상담서비스와 정보 제공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표 4-35]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단위: 회, %)

구분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10,310	37.5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115	0.4
	가족상담	1,046	3.8
	관련자상담	3,861	14.1
	심리 및 기타검사	90	0.3
	소계	15,422	56.2

구분		횟수	비율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1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5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3	0.0
	재가서비스 연결	21	0.1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364	1.3
	기타자원 연결	269	1.0
	직접후원	179	0.7
	소계	852	3.1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연결	10	0.0
	법률소송 지원	3	0.0
	소계	13	0.0
의료서비스	연계(이송)	16	0.1
	연계(의료기관서비스제공)	52	0.2
	연계(방문간호)	3	0.0
	지원(이송및동행)	63	0.2
	지원(의료비지급)	17	0.1
	소계	151	0.5
정보제공서비스	재학대예방교육	2,112	7.7
	정보제공	8,914	32.5
	소계	11,026	40.1
보호서비스	시설입소	-	-
	소계	-	-
계		27,464	100

3 ·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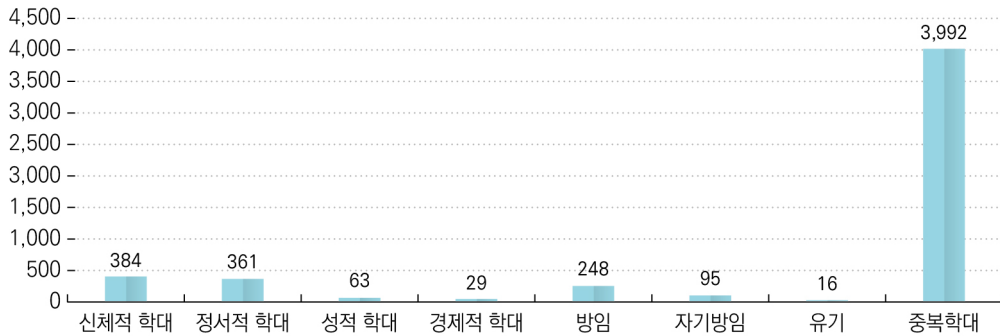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피해노인 수와 학대 유형 건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대피해노인 수를 기준으로 한 가지 학대 유형만 발생한 단일학대와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발생한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분류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중복학대가 3,992건(76.9%)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대가 다양한 유형으로 중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학대 건수의 경우 신체적 학대 384건(7.4%), 정서적 학대 361건(7.0%), 방임 248건(4.8%), 자기방임 95건(1.8%)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동일 양상을 보였다.

[표 4-36]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384	361	63	29	248	95	16	3,992	5,188
7.4	7.0	1.2	0.6	4.8	1.8	0.3	76.9	100



[그림 4-6] 노인학대 유형 I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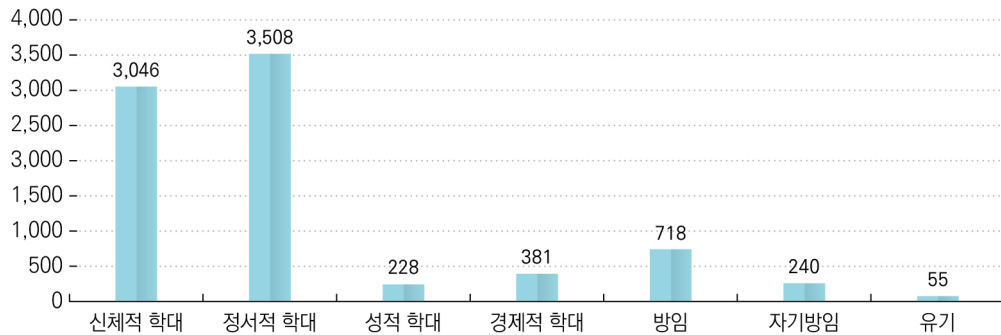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II는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중복 집계하여 학대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전체 노인학대사례의 노인학대 유형 건수는 8,17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3,508건(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3,046건(37.3%), 방임 718건(8.8%)을 차지하였다. 이 세 유형의 학대건수는 전체 학대건수의 89%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인학대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경제적 학대 381건(4.7%), 자기방임 240건(2.9%), 성적 학대 228건(2.8%), 유기 55건(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노인학대 유형II(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37.3	42.9	2.8	4.7	8.8	2.9	0.7	100

* 중복



[그림 4-7] 노인학대 유형 II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의 경우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가 2,851건으로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체 노인학대 유형 건수 중 34.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였으며 366건(4.5%)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가 212건(2.6%),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가 39건(0.5%),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가 12건(0.1%)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노인을 폭행한다’가 2,267건(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가 602건(7.4%)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가 88건(1.1%),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가 53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289건(3.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방임 행위였으며,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가 137건(1.7%)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가 236건(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가 120건(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기방임의 경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의 행위가 240건(2.9%)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로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가 180건(2.2%),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가 48건(0.6%)으로 나타났다. 유기는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가 55건(0.7%)으로 보고되었다.

[표 4-38]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 수	비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88	1.1
	노인을 폭행한다.	2,267	27.7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4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53	0.6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24	0.3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한다.	6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602	7.4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2	0.0
	소계	3,046	37.3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0	0.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366	4.5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2,851	34.9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212	2.6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7	0.1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11	0.1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12	0.1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39	0.5
소계	3,508	42.9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180	2.2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48	0.6
	소계	228	2.8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36	2.9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120	1.5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5	0.3
	소계	381	4.7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89	3.5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98	1.2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77	0.9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137	1.7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63	0.8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45	0.6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9	0.1
	소계	718	8.8

구 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 수	비 율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240	2.9
	소계	240	2.9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55	0.7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	-	-
	소계	55	0.7
계		8,176	100

*중복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전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남성노인 2,013건(24.6%), 여성노인 6,163건(75.4%)으로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학대유형 별로 보면 대부분의 학대 유형이 성별에 따른 전체 건수 비율과 비슷하였으나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노인(165건, 72.4%)이 남성노인(63건, 27.6%)에 비해 발생 건수가 약 2.5배 정도 많았다. 반면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자기방임은 남성노인이 125건(52.1%)으로 나타나 여성노인(115건, 47.9%)에 비해 학대 발생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39]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신체적 학대	689	2,357	3,046
	22.6	77.4	100
정서적 학대	778	2,730	3,508
	22.2	77.8	100
성적 학대	63	165	228
	27.6	72.4	100
경제적 학대	104	277	381
	27.3	72.7	100
방임	230	488	718
	32.0	68.0	100
자기방임	125	115	240
	52.1	47.9	100
유기	24	31	55
	43.6	56.4	100
계	2,013	6,163	8,176
	24.6	75.4	100

* 중복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70대 및 80대가 6,382건(78.1%)으로 많았으며, 세부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자기방임은 70대에서, 방임과 유기 유형은 8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의 경우 70대와 80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였다.

[표 4-40]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단위: 건,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553	798	746	539	273	111	22	4	3,046
	18.2	26.2	24.5	17.7	9.0	3.6	0.7	0.1	100
정서적 학대	613	890	856	662	332	125	27	3	3,508
	17.5	25.4	24.4	18.9	9.5	3.6	0.8	0.1	100
성적 학대	23	39	52	48	40	20	6	-	228
	10.1	17.1	22.8	21.1	17.5	8.8	2.6	-	100
경제적 학대	55	74	79	91	58	20	3	1	381
	14.4	19.4	20.7	23.9	15.2	5.2	0.8	0.3	100
방 임	55	89	160	171	150	67	19	7	718
	7.7	12.4	22.3	23.8	20.9	9.3	2.6	1.0	100
자기방임	32	48	64	47	30	15	4	-	240
	13.3	20.0	26.7	19.6	12.5	6.3	1.7	-	100
유 기	4	8	11	20	7	4	1	-	55
	7.3	14.5	20.0	36.4	12.7	7.3	1.8	-	100
계	1,335	1,946	1,968	1,578	890	362	82	15	8,176
	16.3	23.8	24.1	19.3	10.9	4.4	1.0	0.2	100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배우자 - 아들 - 딸이었고, 정서적 학대는 아들 - 배우자 - 딸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임의 경우 아들 - 기관 - 딸 순이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방임의 경우는 주로 자녀 혹은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아들, 딸 등 자녀에 의한 비율이 71.2%(271건)로 나타나, 학대피해 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에게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었으며, 성적 학대의 경우 기관 - 배우자 - 타인, 유기의 경우 아들 - 딸 - 배우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3	1,214	1,213	65	189	19	99	21	83	140	3,046
	0.1	39.9	39.8	2.1	6.2	0.6	3.3	0.7	2.7	4.6	100
정서적 학대	5	1,261	1,537	91	270	23	99	30	121	71	3,508
	0.1	35.9	43.8	2.6	7.7	0.7	2.8	0.9	3.4	2.0	100
성적 학대	-	45	10	1	1	1	1	-	15	154	228
	-	19.7	4.4	0.4	0.4	0.4	0.4	-	6.6	67.5	100
경제적 학대	3	36	230	7	41	5	20	11	22	6	381
	0.8	9.4	60.4	1.8	10.8	1.3	5.2	2.9	5.8	1.6	100
방임	20	38	271	20	83	2	5	16	10	253	718
	2.8	5.3	37.7	2.8	11.6	0.3	0.7	2.2	1.4	35.2	100
자기방임	227	2	6	1	2	-	1	-	1	-	240
	94.6	0.8	2.5	0.4	0.8	-	0.4	-	0.4	-	100
유기	1	5	33	-	13	-	1	1	-	1	55
	1.8	9.1	60.0	-	23.6	-	1.8	1.8	-	1.8	100
계	259	2,601	3,300	185	599	50	226	79	252	625	8,176
	3.2	31.8	40.4	2.3	7.3	0.6	2.8	1.0	3.1	7.6	100

6)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별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1,409건, 40.2%), 신체적 학대(1,184건, 38.9%), 경제적 학대(147건, 38.6%)는 자녀동거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방임(313건, 43.6%)과 자기방임(187건, 77.9%) 및 유기(28건, 50.9%)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성적 학대는 기타(145건, 63.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에 따라 학대유형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2]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노인학대 유형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단독	272	428	24	115	313	187	28	1,367
	8.9	12.2	10.5	30.2	43.6	77.9	50.9	16.7
노인 부부	1,122	1,207	40	56	50	22	6	2,503
	36.8	34.4	17.5	14.7	7.0	9.2	10.9	30.6
손자녀 동거	127	138	2	22	9	2	-	300
	4.2	3.9	0.9	5.8	1.3	0.8	-	3.7
자녀·손자녀동거	174	201	2	16	17	4	-	414
	5.7	5.7	0.9	4.2	2.4	1.7	-	5.1
자녀 동거	1,184	1,409	15	147	107	17	11	2,890
	38.9	40.2	6.6	38.6	14.9	7.1	20.0	35.3
기타	167	125	145	25	222	8	10	702
	5.5	3.6	63.6	6.6	30.9	3.3	18.2	8.6
계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내 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 생활시설 학대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하고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기타 재가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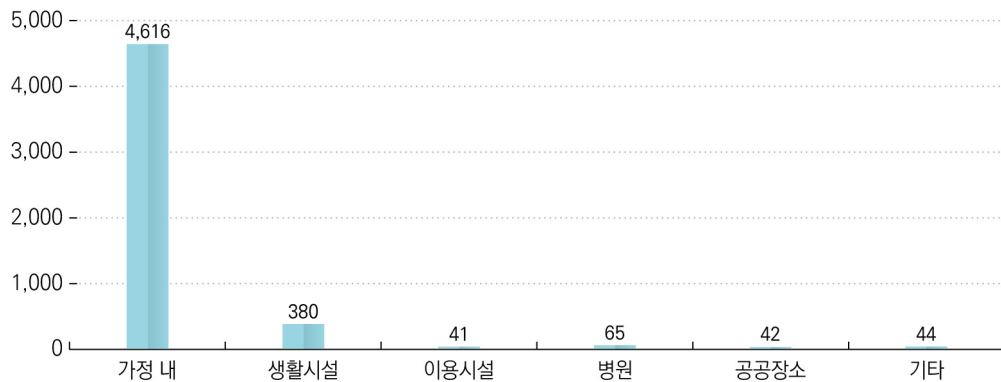
2018년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건수는 4,616건으로 총 학대건수 5,188건 중 89.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생활 시설의 경우 총 380건(7.3%)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59건(1.1%), 노인의료복지시설이 321건(6.2%)을 차지하였다. 이용시설의 경우 총 41건(0.8%)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이 1건(0.0%), 재가노인복지시설이 40건(0.8%)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병원이 65건(1.3%), 기타가 44건(0.8%), 공공장소가 42건(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3]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4,616	59	321	1	40	65	42	44	5,188
89.0	1.1	6.2	0.0	0.8	1.3	0.8	0.8	100



[그림 4-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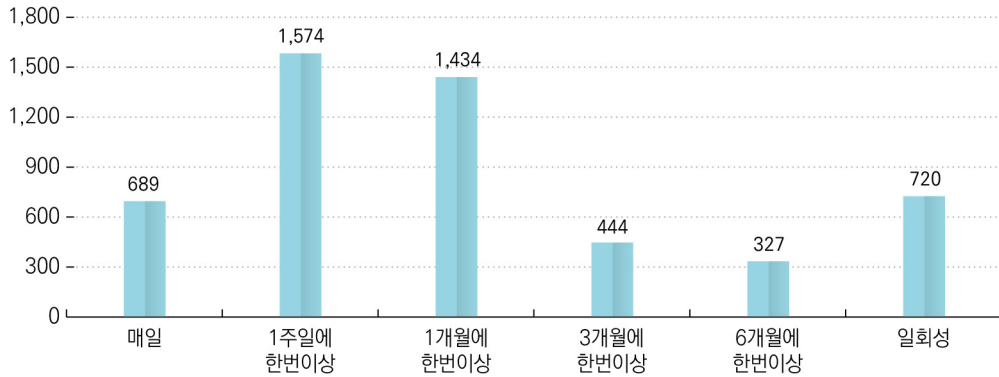
8) 학대발생빈도

전체 노인학대사례 중 학대발생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1,574건(30.3%)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에 한번 이상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434건(27.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일회성인 경우가 720건(13.9%)이었으며,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응답이 689건(13.3%), 3개월에 한번 이상이 444건(8.6%), 6개월에 한번 이상이 327건(6.3%)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표 4-44]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689	1,574	1,434	444	327	720	5,188
13.3	30.3	27.6	8.6	6.3	13.9	100



[그림 4-9]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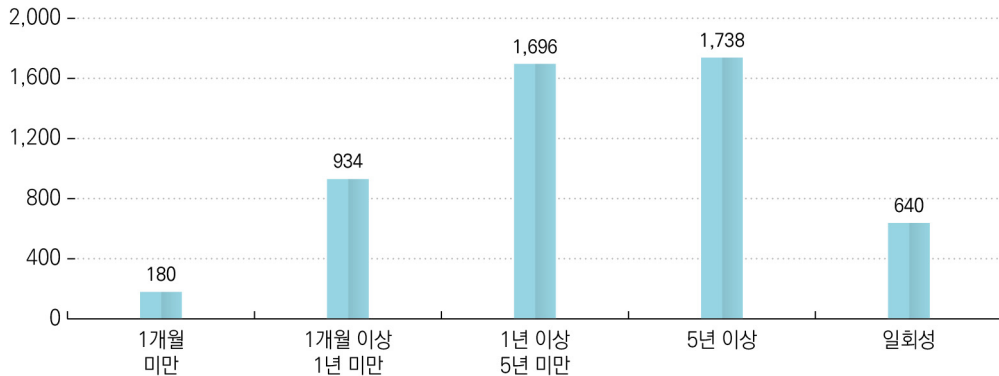
9) 학대지속기간

학대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기간을 의미하며 [표 4-45]와 같이 분류된다. 전체 학대사례 중 5년 이상이 1,738건(33.5%)이 가장 높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1,696건(32.7%)로 그 뒤를 이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934건(18.0%), 일회성은 640건(12.3%), 1개월 미만은 180건(3.5%)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는 전체의 66.2%로 매우 높은 비율로 학대피해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개월 미만 및 일회성은 전체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180	934	1,696	1,738	640	5,188
3.5	18.0	32.7	33.5	12.3	100



[그림 4-10] 학대지속기간 비율

10)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어떠한 노인학대 유형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노인학대 유형을 중복 집계하여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1주일에 한번 이상인 경우가 2,60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1,207건(46.3%), 신체적 학대 917건(35.2%), 방임 213건(8.2%)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학대의 순이었다.

반면, 6개월에 한번 이상 혹은 일회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 학대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46]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매일	239	285	92	44	226	131	27	1,044
	22.9	27.3	8.8	4.2	21.6	12.5	2.6	100
1주일에 한번 이상	917	1,207	89	131	213	42	6	2,605
	35.2	46.3	3.4	5.0	8.2	1.6	0.2	100
1개월에 한번 이상	926	1,144	23	123	117	39	7	2,379
	38.9	48.1	1.0	5.2	4.9	1.6	0.3	100
3개월에 한번 이상	282	332	6	39	31	9	3	702
	40.2	47.3	0.9	5.6	4.4	1.3	0.4	100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6개월에 한번 이상	228	220	3	19	20	9	-	499
	45.7	44.1	0.6	3.8	4.0	1.8	-	100
일회성	454	320	15	25	111	10	12	947
	47.9	33.8	1.6	2.6	11.7	1.1	1.3	100
계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8,176
	37.3	42.9	2.8	4.7	8.8	2.9	0.7	100

11)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학대발생원인은 크게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환경 원인, 피해자 원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학대행위자 원인이란 노인학대 발생원인 중 학대행위자 측면에서의 발생원인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외적 문제, 경제적 의존성, 과거 학대 받은 경험, 신체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정신적 의존성, 피해자 부양부담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실직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의존성으로는 학대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피해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학대받은 경험은 과거 학대행위자가 아동이었을 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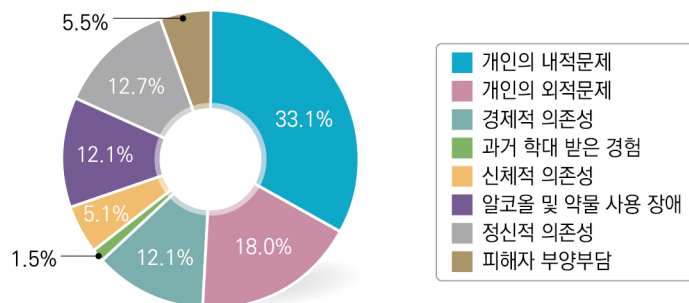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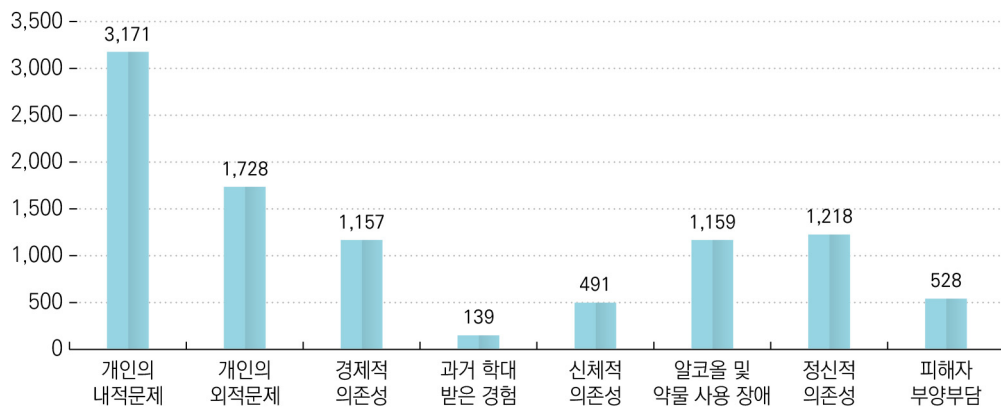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는 알코올 및 약물의 중독이나 의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신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9,591건 중 개인의 내적문제가 3,171건 (33.1%), 개인의 외적문제가 1,728건(18.0%)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특성으로 인한 원인이 51.1%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신적 의존성 1,218건 (12.7%),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와 경제적 의존성이 12.1%(1,159건, 1,157건) 으로 나타났다.

[표 4-47]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 율
개인의 내적문제	3,171	33.1
개인의 외적문제	1,728	18.0
경제적 의존성	1,157	12.1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39	1.5
신체적 의존성	491	5.1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159	12.1
정신적 의존성	1,218	12.7
피해자 부양부담	528	5.5
계	9,591	100



[그림 4-11] 학대행위자 원인 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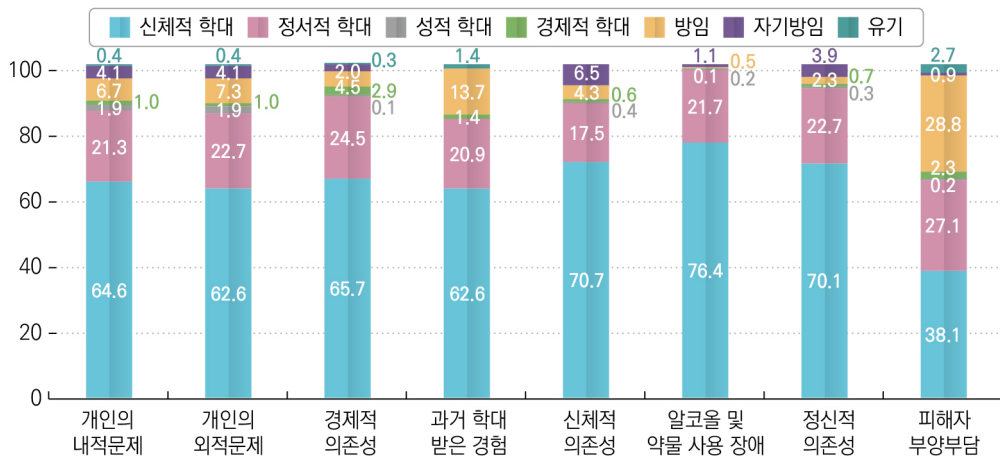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원인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방임의 경우, 피해자 부양부담이 28.8%로 나타나 다른 학대발생원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48]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2,049	676	59	32	212	129	14	3,171
개인의 외적문제	1,081	393	33	17	126	71	7	1,728
경제적 의존성	760	284	1	34	52	23	3	1,157
과거 학대 받은 경험	87	29	-	2	19	-	2	139
신체적 의존성	347	86	2	3	21	32	-	491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886	251	1	2	6	13	-	1,159
정신적 의존성	854	277	4	8	28	47	-	1,218
피해자 부양부담	201	143	1	12	152	5	14	528
계	6,265	2,139	101	110	616	320	40	9,591
	65.3	22.3	1.1	1.1	6.4	3.3	0.4	100.0



[그림 4-12]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주요유형

12)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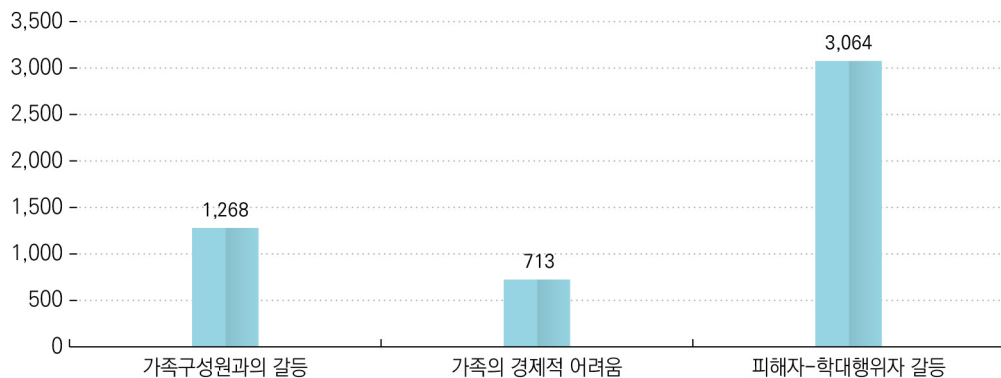
가족 - 환경적 측면에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당된다.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사람 간 갈등을 의미한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문제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가족 - 환경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대발생 5,045건 중 피해자 - 학대행위자 갈등이 3,064건(6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이 1,268건(2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이 학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713건(14.1%)으로 나타났다.

[표 4-49]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1,268	713	3,064	5,045
25.1	14.1	60.7	100



[그림 4-13] 가족 - 환경 원인

제5장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현황
2. 재학대 현황
3. 노인단독가구 현황
4. 시설학대 현황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



제5장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노인학대사례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 노인단독가구 현황, 시설학대 현황과 노(老)-노(老)학대 현황, 치매노인 학대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학대 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경우 2018년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근거한 신고의무자 직군이 기존의 14개 직군에서 17개 직군(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되면서 신고의무자에 의한 노인학대 사례발굴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신고의무자 신고건수는 전체 학대사례 신고건수의 약 14.8%에 지나지 않아²²⁾ 더욱 활발한 신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보다 활발하게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18년 기준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신고건수의 9.4%는 재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중 매우 낮은 비율이나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로 가정 내에서 매우 잦은 빈도로 학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장소는 80% 이상이 가정 내 학대로 나타났고, 실제로 재학대 피해노인의 82.6%(2018년도 기준)가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발생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학대는 학대지속기간이 신규 사례에 비해 매우 장기간 발생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실제로 신규사례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64.5%인 반면, 재학대는 8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학대 사례로 접수된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더 오랜 기간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 집단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노인단독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 보다 가구 내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고,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다양한

22) '13년 16.7% → '14년 20.1% → '15년 18.5% → '16년 17.5% → '17년 13.7% → '18년 14.8%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고독, 생활만족도 저하, 신체·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의 저하, 자살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²³⁾. 학대피해노인의 가구 유형 중에서도 쉽게 사회적 자원의 부족, 사회적 고립, 건강의 악화를 경험 할 수 있는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학대 양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네 번째 대상 집단은 시설학대피해노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용시설 학대사례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건수는 생활시설 학대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시설학대를 더욱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이용자의 의존성이 높아 일상 생활에서 전인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학대의 시급성을 두고 주목해왔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욕구가 있는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에 비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한 시설학대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 분석 대상은 노(老) - 노(老)학대 사례이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급속한 인구노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학대행위자의 연령도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증가하는 것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가족과의 동거기간 연장,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노(老) - 노(老)학대를 단순히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 모두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사례를 심층분석 하였다. 중앙치매센터²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추정 치매환자는 약 70만 명이었으며,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치매노인 4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4년 이후부터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학대피해노인의 비율이 노인학대 건수의 20% 이상을 웃돌고 있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례 분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점 과제가 되었다. 이에 치매가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의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Waite, Linda & Mary Hufgies(1999), 이신숙·김성희(2011), 이묘숙.(2012)

24) 중앙치매센터(2019).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18).

1 •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현황

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먼저 2018년 신고된 전체 신고건수 15,482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46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고, 이 중 767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²⁵⁾. 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650건(4.2%)으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504건(3.3%),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98건(0.6%)으로 뒤를 이었다.

[표 5-1] 학대신고건수에 따른 신고의무자 유형

(단위: 건, %)

유형	세부유형	건	비율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52	0.3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6	0.1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504	3.3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6	0.0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98	0.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50	4.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26	0.2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7	0.4
	구급대의 대원	4	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9	0.1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1	0.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6	0.0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0.1
	소계	1,466	9.5
	비신고의무자	14,016	90.5
	계	15,482	100

25) 신고의무자에 의한 전체 신고 1,466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67건으로 52.3% 비율인 반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전체 신고 14,016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421건으로 31.5% 비율로 나타났다.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다음은 학대사례로 판정된 5,188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 767건의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았다. 전체 767건 중 비응급 사례가 444건(5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잠재적 사례가 301건(39.2%), 응급 사례가 22건(2.9%)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세부유형에 따라서는 응급 사례(12건, 1.6%)와 비응급(186건, 24.3%), 잠재적 사례(200건, 26.1%) 모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신고가 194건(25.3%),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가 72건(9.4%)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0.1	20	2.6	5	0.7	26	3.4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	0.1	3	0.4	8	1.0	12	1.6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	149	19.4	45	5.9	194	25.3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	-	1	0.1	-	-	1	0.1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5	0.7	52	6.8	15	2.0	72	9.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	1.6	186	24.3	200	26.1	398	51.9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7	0.9	5	0.7	12	1.6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18	2.3	11	1.4	29	3.8
구급대의 대원	1	0.1	-	-	1	0.1	2	0.3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1	0.1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2	0.3	3	0.4	-	-	5	0.7
응급구조사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	2	0.3	3	0.4	5	0.7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3	0.4	2	0.3	5	0.7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5	0.7	5	0.7
계	22	2.9	444	57.9	301	39.2	767	100

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표 5-3]은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가장 많이 신고된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로 전체의 30.1%(321건)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방임이 251건(23.6%), 신체적 학대가 237건(22.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의무자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29건(49.7%)으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248건(23.3%),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134건(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세부유형에 따른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고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 방임 - 신체적 학대의 순이었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에 의해 신고된 학대유형은 방임 -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관련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성적 학대 유형이 많았다.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8	-	2	9	3	2	33
	0.8	0.8	-	0.2	0.8	0.3	0.2	3.1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3	6	-	6	5	-	-	20
	0.3	0.6	-	0.6	0.5	-	-	1.9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54	57	37	11	74	10	5	248
	5.1	5.3	3.5	1.0	6.9	0.9	0.5	23.3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1	1	-	-	-	-	-	2
	0.1	0.1	-	-	-	-	-	0.2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58	60	6	4	4	2	-	134
	5.4	5.6	0.6	0.4	0.4	0.2	-	1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3	156	44	28	139	75	4	529
	7.8	14.6	4.1	2.6	13.0	7.0	0.4	49.7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4	7	-	1	5	2	1	20
	0.4	0.7	-	0.1	0.5	0.2	0.1	1.9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6	15	2	4	8	2	-	47
	1.5	1.4	0.2	0.4	0.8	0.2	-	4.4
구급대의 대원	1	-	-	-	-	1	-	2
	0.1	-	-	-	-	0.1	-	0.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신고의무자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1	-	-	-	-	-	2
	0.1	0.1	-	-	-	-	-	0.2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4	4	-	1	-	-	-	9
	0.4	0.4	-	0.1	-	-	-	0.8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2	-	-	1	2	-	5
	-	0.2	-	-	0.1	0.2	-	0.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	1	-	-	4	1	-	7
	0.1	0.1	-	-	0.4	0.1	-	0.7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3	-	-	2	-	-	7
	0.2	0.3	-	-	0.2	-	-	0.7
계	237	321	89	57	251	98	12	1,065
	22.3	30.1	8.4	5.4	23.6	9.2	1.1	100

* 중복

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표 5-4]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건수의 약 7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가정 내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가정 내가 290건(72.9%), 생활시설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74건(18.6%), 이용시설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7건(6.8%)의 순인 반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은 가정 내가 83건(42.8%),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각각 61건(31.4%), 34건(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관련종사자는 세 번째로 신고율이 높았으나 신고건수 72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71건(98.6%)이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그 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4	-	-	-	-	1	1	-	26
	92.3	-	-	-	-	3.8	3.8	-	100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2	-	-	-	-	-	-	-	12
	100.0	-	-	-	-	-	-	-	100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83	34	61	-	1	11	-	4	194
	42.8	17.5	31.4	-	0.5	5.7	-	2.1	100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1	-	-	-	-	-	-	-	1
	100	-	-	-	-	-	-	-	100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71	-	-	-	-	-	-	1	72
	98.6	-	-	-	-	-	-	1.4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90	3	74	-	27	1	-	3	398
	72.9	0.8	18.6	-	6.8	0.3	-	0.8	100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2	-	-	-	-	-	-	-	12
	100	-	-	-	-	-	-	-	100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8	-	1	-	-	-	-	-	29
	96.6	-	3.4	-	-	-	-	-	100
구급대의 대원	2	-	-	-	-	-	-	-	2
	100	-	-	-	-	-	-	-	1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	-	-	-	-	-	-	1
	100	-	-	-	-	-	-	-	1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5	-	-	-	-	-	-	-	5
	100	-	-	-	-	-	-	-	100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4	-	1	-	-	-	-	-	5
	80.0	-	20.0	-	-	-	-	-	10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5	-	-	-	-	-	-	-	5
	100	-	-	-	-	-	-	-	100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	-	4	-	-	-	-	-	5
	20.0	-	80.0	-	-	-	-	-	100
계	539	37	141	-	28	13	1	8	767
	70.3	4.8	18.4	-	3.7	1.7	0.1	1.0	100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다음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번 이상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학대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59.3%)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40.9%)보다 18.4%p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회성이거나 3개월 이상 학대발생빈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17.7%)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30.6%)가 12.9%p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88	267	176	44	25	67	767
	24.5	34.8	22.9	5.7	3.3	8.7	100
비신고의무자	501	1,307	1,258	400	302	653	4,421
	11.3	29.6	28.5	9.0	6.8	14.8	100
계	689	1,574	1,434	444	327	720	5,188
	13.3	30.3	27.6	8.6	6.3	13.9	100

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표 5-6】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58.0%)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67.6%)가 9.6%p 높게 나타났으며, 일회성 혹은 1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발생한 학대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42.0%)가 비신고의무자(32.4%)보다 9.6%p 높게 나타났다.

【표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42	224	263	182	56	767
	5.5	29.2	34.3	23.7	7.3	100
비신고의무자	138	710	1,433	1,556	584	4,421
	3.1	16.1	32.4	35.2	13.2	100
계	180	934	1,696	1,738	640	5,188
	3.5	18.0	32.7	33.5	12.3	100

2 • 재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를 의미한다. 재학대 사례에는 2018년 처음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신고접수 된 사례와 2018년 이전에 신고 된 적이 있는 사례가 2018년에 다시 신고 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4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9.4%에 해당되며,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가 가장 많이 신고 된 기관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75건(1.4%)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46건(0.9%),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40건(0.8%)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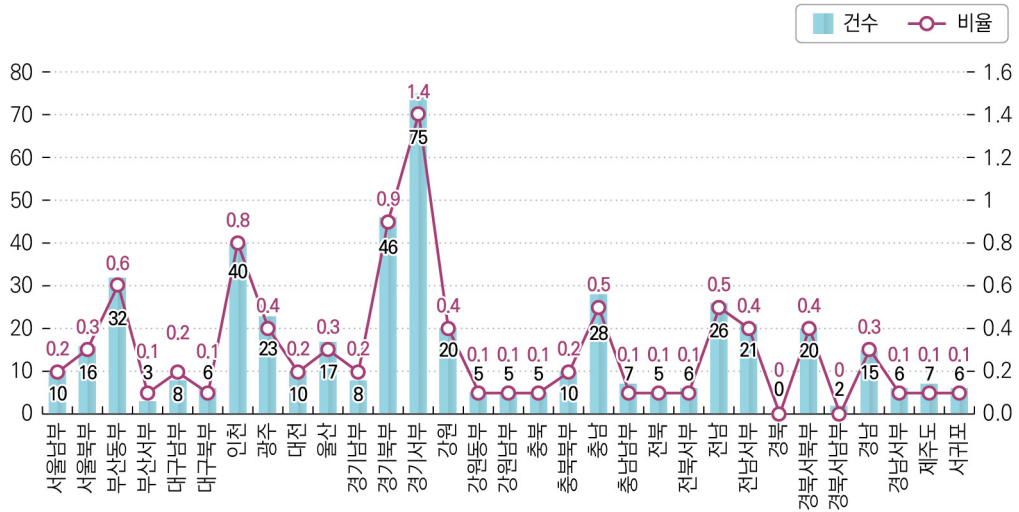
반면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한 해 동안 재학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 외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건(0.0%),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건(0.1%)으로 재학대 신고건수가 적었다.

[표 5-7]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접수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10	0.2	298
	서울북부	16	0.3	224
	소계	26	0.5	522
부산	부산동부	32	0.6	199
	부산서부	3	0.1	180
	소계	35	0.7	379
대구	대구남부	8	0.2	111
	대구북부	6	0.1	99
	소계	14	0.3	210
	인천	40	0.8	436
	광주	23	0.4	202
	대전	10	0.2	126

지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수	비율	
	울산	17	0.3	102
경기	경기남부	8	0.2	167
	경기북부	46	0.9	379
	경기서부	75	1.4	355
	소계	129	2.5	901
강원	강원	20	0.4	225
	강원동부	5	0.1	93
	강원남부	5	0.1	116
	소계	30	0.6	434
충북	충북	5	0.1	75
	충북북부	10	0.2	64
	소계	15	0.3	139
충남	충남	28	0.5	192
	충남남부	7	0.1	90
	소계	35	0.7	282
전북	전북	5	0.1	130
	전북서부	6	0.1	103
	소계	11	0.2	233
전남	전남	26	0.5	153
	전남서부	21	0.4	184
	소계	47	0.9	337
경북	경북	-	-	179
	경북서북부	20	0.4	128
	경북서남부	2	0.0	124
	소계	22	0.4	431
경남	경남	15	0.3	217
	경남서부	6	0.1	79
	소계	21	0.4	29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	0.1	106
	제주도서귀포시	6	0.1	52
	소계	13	0.3	158
	계	488	9.4	5,188



[그림 5-1]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2) 재학대 신고자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신고자 유형을 비교하여 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15.5%였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7.8%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타 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 모두 신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의 경우, 신규사례는 84.5%였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 92.2%로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신규사례보다 높았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사례(6.8%) 보다 재학대 사례(13.7%)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사례 신고비율(65.3%)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68.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8] 신규 - 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규		재학대 신고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6	0.6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1	0.2	1	0.2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84	3.9	10	2.0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1	0.0	-	-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67	1.4	5	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9	8.1	19	3.9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12	0.3	-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7	0.6	2	0.4
	구급대의 대원	2	0.0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0.0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5	0.1	-	-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5	0.1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5	0.1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4	0.1	1	0.2
	소계	729	15.5	38	7.8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320	6.8	67
학대행위자 본인		4	0.1	-	-
친족		433	9.2	39	8.0
타인		144	3.1	12	2.5
관련기관 ²⁶⁾		3,070	65.3	332	68.0
소계		3,971	84.5	450	92.2
계	4,700	100	488	100	

26)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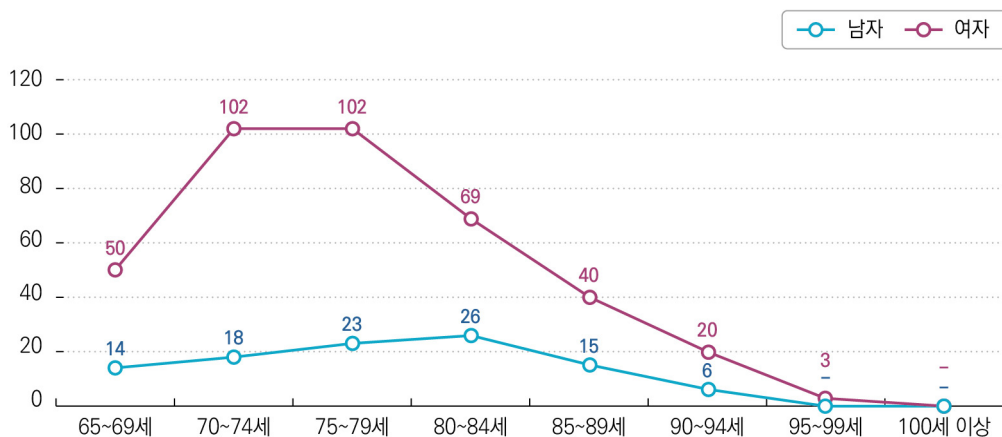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102명(20.9%), 여성노인이 386명(79.1%)으로 여성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노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남성노인 26.1%, 여성노인 73.9%)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245명(50.2%), 80대가 150명(30.8%), 60대가 64명(13.1%)으로 7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의 고령의 경우 남성노인이 46.1%, 여성노인이 34.3%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고령 비율이 높았다.

[표 5-9]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4	18	23	26	15	6	-	-	102
	13.7	17.6	22.5	25.5	14.7	5.9	-	-	100
여성	50	102	102	69	40	20	3	-	386
	13.0	26.4	26.4	17.9	10.4	5.2	0.8	-	100
계	64	120	125	95	55	26	3	-	488
	13.1	24.6	25.6	19.5	11.3	5.3	0.6	-	100



[그림 5-2] 재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재학대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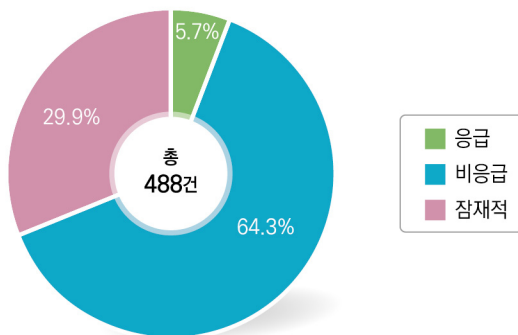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314건(64.3%), 잠재적 사례 146건(29.9%), 응급 사례 28건(5.7%)으로 나타났다. 신규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 또한 비응급 사례 2,907건(61.9%), 잠재적 사례 1,716건(36.5%), 응급 사례 77건(1.6%)의 순으로 재학대 사례판정과 동일하였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잠재적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응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규	77	2,907	1,716	4,700
	1.6	61.9	36.5	100
재학대	28	314	146	488
	5.7	64.3	29.9	100
계	105	3,221	1,862	5,188
	2.0	62.1	35.9	100



[그림 5-3] 재학대 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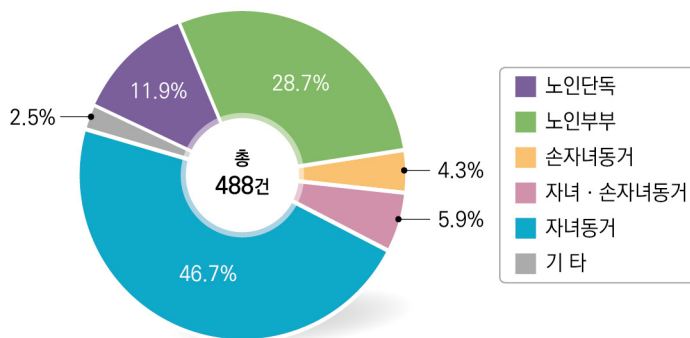
5)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228건(4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140건(28.7%), 노인단독가구 58건(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로 1,510건(32.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부부가구 1,372건(29.2%), 노인단독가구 941건(20.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신규	941	1,372	166	223	1,510	488	4,700
	20.0	29.2	3.5	4.7	32.1	10.4	100
재학대	58	140	21	29	228	12	488
	11.9	28.7	4.3	5.9	46.7	2.5	100
계	999	1,512	187	252	1,738	500	5,188
	19.3	29.1	3.6	4.9	33.5	9.6	100



【그림 5-4】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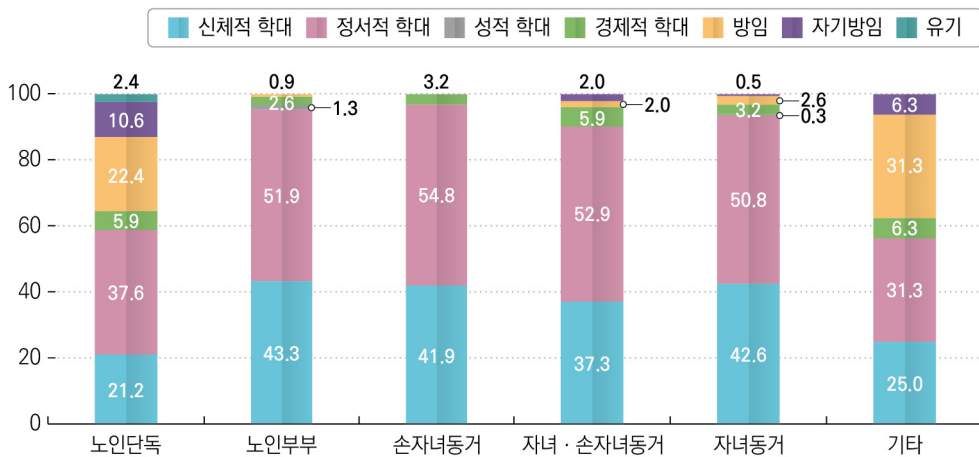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794건으로 노인단독가구와 기타가구를 제외한 가구형태에서 노인학대 유형이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경제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2]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노인단독	18	32	-	5	19	9	2	85
	21.2	37.6	-	5.9	22.4	10.6	2.4	100
노인부부	101	121	3	6	2	-	-	233
	43.3	51.9	1.3	2.6	0.9	-	-	100
손자녀동거	13	17	-	1	-	-	-	31
	41.9	54.8	-	3.2	-	-	-	100
자녀·손자녀 동거	19	27	-	3	1	1	-	51
	37.3	52.9	-	5.9	2.0	2.0	-	100
자녀동거	161	192	1	12	10	2	-	378
	42.6	50.8	0.3	3.2	2.6	0.5	-	100
기타	4	5	-	1	5	1	-	16
	25.0	31.3	-	6.3	31.3	6.3	-	100
계	316	394	4	28	37	13	2	794
	39.8	49.6	0.5	3.5	4.7	1.6	0.3	100

* 중복



[그림 5-5] 재학대 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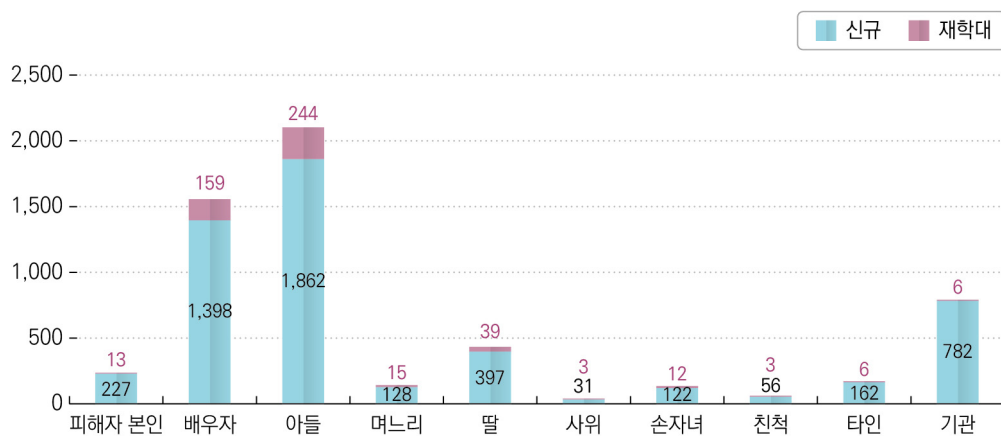
6) 재학대 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아들 - 배우자 - 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는 아들 - 배우자 - 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 중 기관의 비율이 신규 사례보다 13.9% 차이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발생원인을 제거하였거나 행정처분 등의 처벌로 인해 재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13] 재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227	1,398	1,862	128	397	31	122	56	162	782	5,165
	4.4	27.1	36.1	2.5	7.7	0.6	2.4	1.1	3.1	15.1	100
재학대	13	159	244	15	39	3	12	3	6	6	500
	2.6	31.8	48.8	3.0	7.8	0.6	2.4	0.6	1.2	1.2	100
계	240	1,557	2,106	143	436	34	134	59	168	788	5,665
	4.2	27.5	37.2	2.5	7.7	0.6	2.4	1.0	3.0	13.9	100



[그림 5-6] 재학대 행위자 유형

7) 재학대 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동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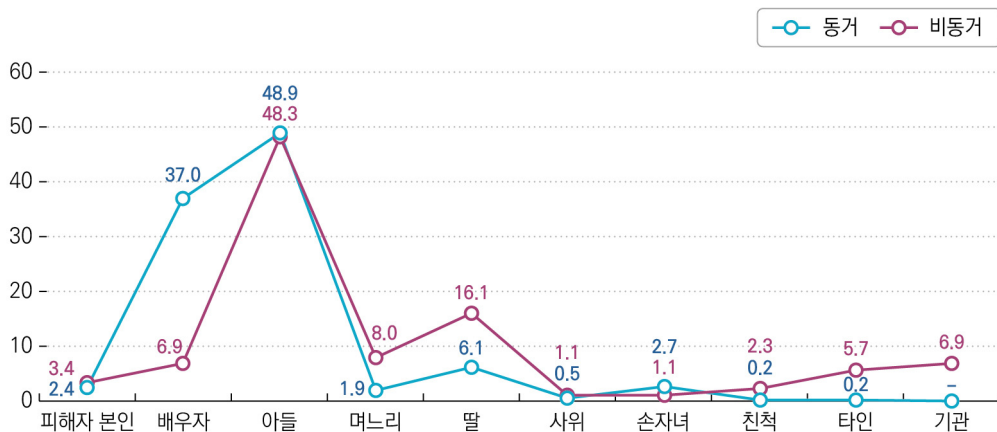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500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413명(82.6%)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87명(17.4%)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3,938명(69.5%)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202명(48.9%)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153명(37.0%)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 비율(26.0%)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48.9%)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4】 재학대 피해노인 동거여부(학대행위자수 기준)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10	153	202	8	25	2	11	1	402	1	-	413
	2.4	37.0	48.9	1.9	6.1	0.5	2.7	0.2	97.3	0.2	-	100
비동거	3	6	42	7	14	1	1	2	73	5	6	87
	3.4	6.9	48.3	8.0	16.1	1.1	1.1	2.3	83.9	5.7	6.9	100
계	13	159	244	15	39	3	12	3	475	6	6	500
	2.6	31.8	48.8	3	7.8	0.6	2.4	0.6	95	1.2	1.2	100



【그림 5-7】 재학대 피해노인의 행위자 동거여부

8)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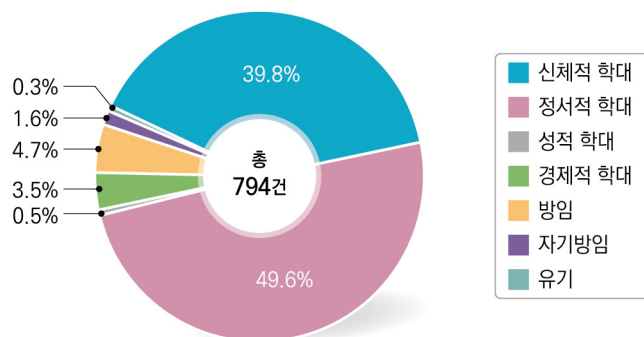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794건 중 정서적 학대가 394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316건(39.8%), 방임이 37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의 학대유형의 경우 정서적 학대 비율이 42.9%(3,508건), 신체적 학대 비율이 37.3%(3,046건)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경우 비교적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방임	유 기	계
316	394	4	28	37	13	2	794
39.8	49.6	0.5	3.5	4.7	1.6	0.3	100

* 중복



[그림 5-8]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9) 재학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 총 488건 중 가정 내 학대가 480건(98.4%)으로,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8.0%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16]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기관	기타	계
신규	4,136	378	40	64	40	42	4,700
	88.0	8.0	0.9	1.4	0.9	0.9	100
재학대	480	2	1	1	2	2	488
	98.4	0.4	0.2	0.2	0.4	0.4	100
계	4,616	380	41	65	42	44	5,188
	89.0	7.3	0.8	1.3	0.8	0.8	100

재학대의 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 행위자 500명 중 가정내 학대의 경우 아들이 242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159명(32.6%)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7] 재학대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내	12	159	242	15	38	3	12	3	472	4	-	488
	2.5	32.6	49.6	3.1	7.8	0.6	2.5	0.6	96.7	0.8	-	100
생활 시설	-	-	-	-	1*	-	-	-	1	-	5	6
	-	-	-	-	16.7	-	-	-	16.7	-	83.3	100
이용 시설	-	-	-	-	-	-	-	-	-	-	1	1
	-	-	-	-	-	-	-	-	-	-	100	100
병원	-	-	-	-	-	-	-	-	-	1	-	1
	-	-	-	-	-	-	-	-	-	100	-	100
공공 장소	-	-	1	-	-	-	-	-	1	1	-	2
	-	-	50	-	-	-	-	-	50	50	-	100
기타	1	-	1	-	-	-	-	-	1	-	-	2
	0.0	-	0.0	-	-	-	-	-	0.0	-	-	0.0
계	13	159	244	15	39	3	12	3	475	6	6	500
	2.6	31.8	48.8	3	7.8	0.6	2.4	0.6	95	1.2	1.2	100

* 생활시설-딸: 학대행위자 중 딸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학대행위자가 시설종사자이므로 시설학대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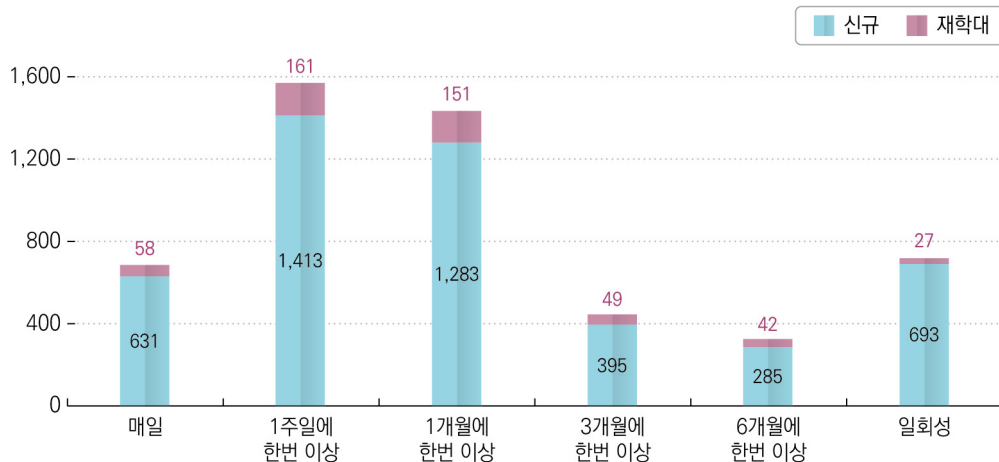
10)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6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개월에 한번 이상이 151건(30.9%), 매일이 58건(11.9%)의 순으로 많았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경우 신규사례에 비해 9.2%p 낮은 반면, 매일과 1주일에 한번 이상의 비율은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의 경우 매일 및 1주일 한번 이상 잦은 횟수로 발생하는 학대가 신규사례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8]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신규	631	1,413	1,283	395	285	693	4,700
	13.4	30.1	27.3	8.4	6.1	14.7	100
재학대	58	161	151	49	42	27	488
	11.9	33.0	30.9	10.0	8.6	5.5	100
계	689	1,574	1,434	444	327	720	5,188
	13.3	30.3	27.6	8.6	6.3	13.9	100



[그림 5-9]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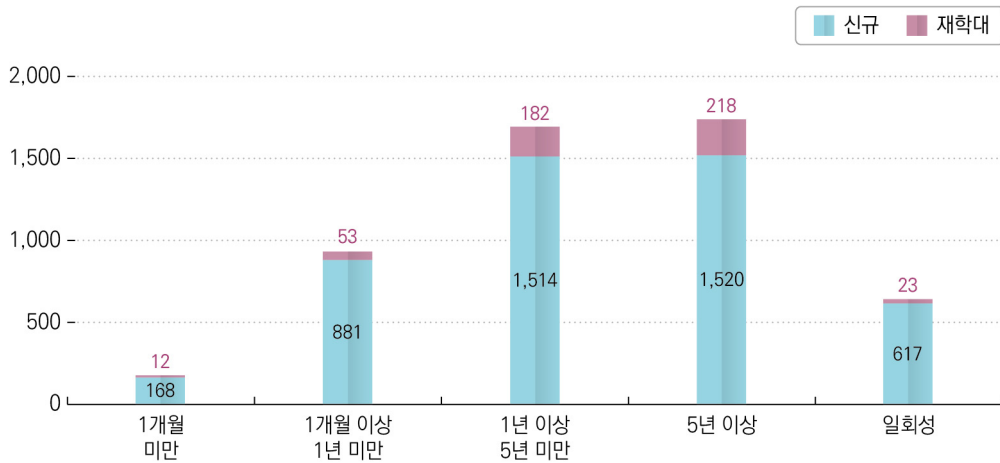
11)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 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사례가 3,034건(64.5%), 재학대 사례가 400건(82.0%)로,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비율이 높았다.

[표 5-19]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신규	168	881	1,514	1,520	617	4,700
	3.6	18.7	32.2	32.3	13.1	100
재학대	12	53	182	218	23	488
	2.5	10.9	37.3	44.7	4.7	100
계	180	934	1,696	1,738	640	5,188
	3.5	18.0	32.7	33.5	12.3	100



[그림 5-10] 신규 - 재학대 피해노인 학대지속기간

12) 재학대 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500명 중 남성이 416명(83.2%), 여성이 84명(16.8%)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연령대에서는 70세 이상이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은 50~59세 미만이 23명(27.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 40~50대인 중장년층이 194명(46.6%), 44명(52.4%)로 과반에 가깝거나 넘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재학대 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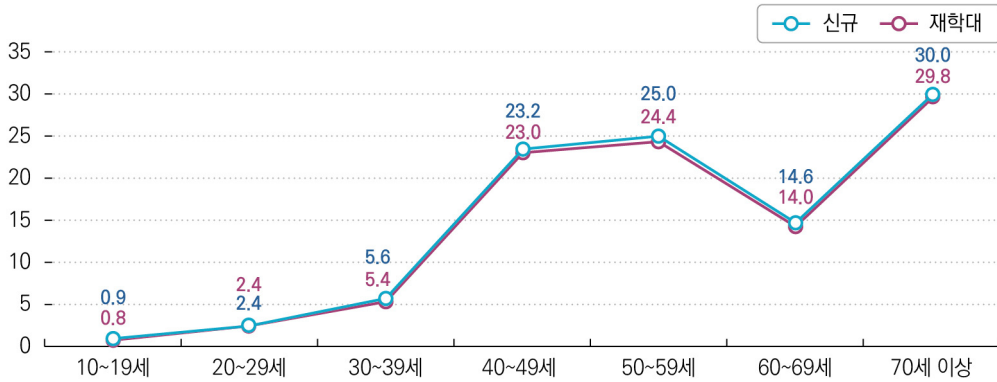
구 분	10~19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 이상	계
남성	3	10	19	95	99	56	134	416
	0.7	2.4	4.6	22.8	23.8	13.5	32.2	100
여성	1	2	8	21	23	14	15	84
	1.2	2.4	9.5	25.0	27.4	16.7	17.9	100
계	4	12	27	116	122	70	149	500
	0.8	2.4	5.4	23.2	24.4	14.0	29.8	100

신규사례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대 중 주요 학대행위자 연령대인 40~50대의 비율을 보면 신규사례의 경우 47.0%, 재학대 사례의 경우 47.6%로 재학대 사례에서 40~50대 학대행위자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 이상	계
신규	46	93	291	1,137	1,292	754	1,552	5,165
	0.9	1.8	5.6	22.0	25.0	14.6	30.0	100
재학대	4	12	27	116	122	70	149	500
	0.8	2.4	5.4	23.2	24.4	14.0	29.8	100
계	50	105	318	1,253	1,414	824	1,701	5,665
	0.9	1.9	5.6	22.1	25.0	14.5	30.0	100



[그림 5-11] 신규 - 재학대 행위자 연령대 비율

재학대 행위자의 연령대가 높게 나타난 40~50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이 40~49세, 50~59세 연령대에서 각 연령대 전체 대비 80.2%, 77.9%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의 40~50대 학대행위자 238명 중 아들이 79.0%에 해당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5-22] 연령별 재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10~19세	-	-	-	-	-	-	4	-	4	-	-	4
	-	-	-	-	-	-	100	-	100	-	-	100
20~29세	-	-	5	-	1	-	6	-	12	-	-	12
	-	-	41.7	-	8.3	-	50.0	-	100	-	-	100
30~39세	-	-	18	4	4	-	1	-	27	-	-	27
	-	-	66.7	14.8	14.8	-	3.7	-	100	-	-	100
40~49세	-	1	93	19	2	-	1	-	116	-	-	116
	-	0.9	80.2	16.4	1.7	-	0.9	-	100	-	-	100
50~59세	-	2	95	12	6	2	-	1	118	2	2	122
	-	1.6	77.9	9.8	4.9	1.6	-	0.8	96.7	1.6	1.6	100
60~69세	1	27	28	3	2	1	-	2	63	2	4	70
	1.4	38.6	40.0	4.3	2.9	1.4	-	2.9	90.0	2.9	5.7	100
70세이상	12	129	5	1	-	-	-	-	135	2	-	149
	8.2	86.6	3.4	0.7	-	-	-	-	90.6	1.3	-	100
계	13	159	244	39	15	3	12	3	475	6	6	500
	2.6	31.8	48.8	7.8	3.0	0.6	2.4	0.6	95.0	1.2	1.2	100

13)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재학대 행위자 500건 중 중독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148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의 29.6%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142건(28.4%), 약물 사용 장애가 3건(0.6%), 도박중독이 3건(0.6%)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사용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재학대 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건, %)

재학대 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계
500	3	142	3	148
	0.6	28.4	0.6	29.6

14)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 결과를 보면 총 488건의 재학대 사례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49건(10.0%),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진단이 42건(8.6%)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사례는 전체 재학대 사례의 91건(18.6%)으로 나타났다.

[표 5-24] 재학대 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재학대 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488	49	42	91
	10.0	8.6	18.6

3 노인단독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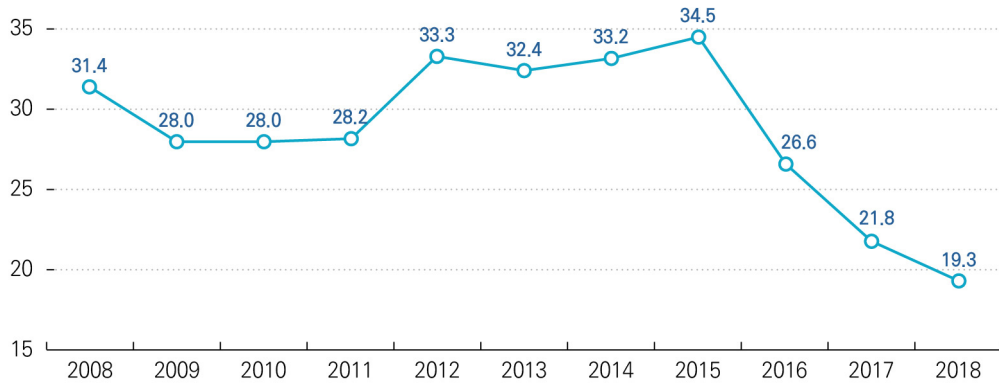
1)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2018년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 중 노인단독가구는 999건(19.3%)으로 전년 1,007건(21.8%)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5년 간 노인단독가구의 증감율 추이를 보면, 2015년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25]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추이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학대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노인단독가구	743	750	858	970	1,140	1,141	1,172	1,318	1,140	1,007	999
비율	31.4	28	28	28.2	33.3	32.4	33.2	34.5	26.6	21.8	19.3
노인단독가구 증감율	-	0.9	14.4	13.1	17.5	0.1	2.7	12.5	-13.5	-11.7	-0.8



[그림 5-12] 연도별 노인단독가구 비율 추이

2) 지역별 노인단독가구 현황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기준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 유형을 살펴보았다. 노인단독가구는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33.0%,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32.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7.6%로 가장 낮았으며,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1%,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6]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기관명	노인단독가구		전체사례 건수
		인원	비율	
서울	서울남부	32	10.7	298
	서울북부	31	13.8	224
	소계	63	12.1	522

구 분	기관명	노인단독가구		전체사례 건수
		인 원	비 율	
부산	부산동부	27	13.6	199
	부산서부	35	19.4	180
	소계	62	16.4	379
대구	대구남부	32	28.8	111
	대구북부	19	19.2	99
	소계	51	24.3	210
	인천	54	12.4	436
	광주	49	24.3	202
	대전	30	23.8	126
	울산	20	19.6	102
경기	경기남부	23	13.8	167
	경기북부	72	19.0	379
	경기서부	27	7.6	355
	소계	122	13.5	901
강원	강원	23	10.2	225
	강원동부	17	18.3	93
	강원남부	26	22.4	116
	소계	66	15.2	434
충북	충북	20	26.7	75
	충북북부	16	25.0	64
	소계	36	25.9	139
충남	충남	34	17.7	192
	충남남부	12	13.3	90
	소계	46	16.3	282
전북	전북	42	32.3	130
	전북서부	24	23.3	103
	소계	66	28.3	233
전남	전남	26	17.0	153
	전남서부	46	25.0	184
	소계	72	21.4	337
경북	경북	94	52.5	179
	경북서북부	26	20.3	128
	경북서남부	33	26.6	124
	소계	153	35.5	431
경남	경남	58	26.7	217
	경남서부	8	10.1	79
	소계	66	22.3	296

구 분	기관명	노인단독가구		전체사례 건수
		인 원	비 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5	33.0	106
	제주도서귀포시	8	15.4	52
	소계	43	27.2	158
계		999	19.3	5,188

3)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가 295건(29.5%), 비신고의무자가 704건(70.5%)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08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38건(3.8%)으로 뒤를 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관련기관 462건(46.2%), 학대피해노인 본인 106건(10.6%)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사례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그 비율은 노인단독가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가구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대사례에서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은 14.8%를 차지한 반면, 노인단독가구 대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대사례에서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율은 7.5%인 반면, 노인단독가구는 10.6%로 노인단독가구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7] 노인단독가구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2	1.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6	0.6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8	3.8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5	0.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8	20.8
	사회복지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관련종사자	6	0.6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9	0.9
	구급대의 대원	1	0.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	-

구 분		건 수	비 율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	0.1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요양직 직원	4	0.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4	0.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1	0.1
	소계	295	29.5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106	10.6	
학대행위자본인	2	0.2	
친족	85	8.5	
타인	46	4.6	
관련기관	462	46.2	
익명	3	0.3	
소계	704	70.5	
계	999	100	

4)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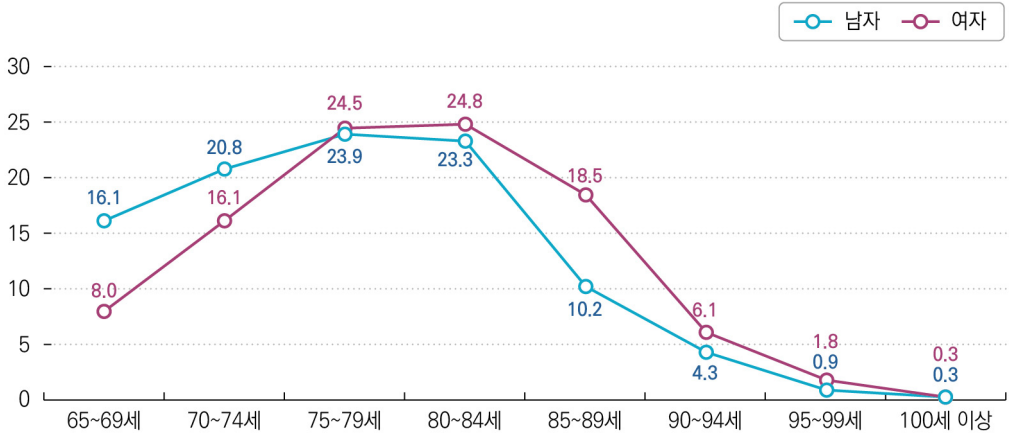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5~79세와 80~84세가 각각 243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76명(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70대가 419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401명(40.1%), 60대가 106명(10.3%), 90대 이상 73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기준 시 남성노인의 노인단독가구는 70대(44.7%)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노인의 노인단독가구는 80대(4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8]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52	67	77	75	33	14	3	1	322
	16.1	20.8	23.9	23.3	10.2	4.3	0.9	0.3	100
여성	54	109	166	168	125	41	12	2	677
	8.0	16.1	24.5	24.8	18.5	6.1	1.8	0.3	100
계	106	176	243	243	158	55	15	3	999
	10.3	17.6	24.3	24.3	15.8	5.5	1.5	0.3	100



[그림 5-13]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5)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5-29]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단독가구 999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91명(29.1%)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6.4%라는 점에서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29]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노인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99	291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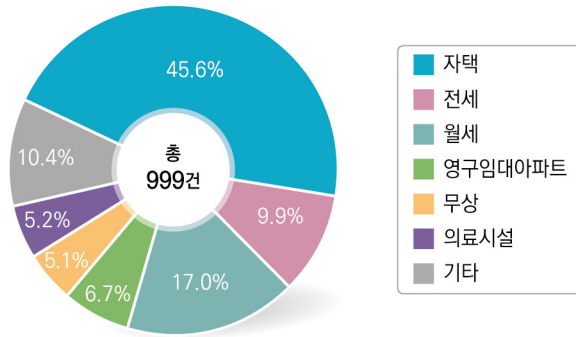
6)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택이 45.6%, 월세 17.0%, 전세 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학대사례의 주거형태인 자택(60.0%) - 전세(11.2%) - 월세(9.0%)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5-30]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단위: 건,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아파트	무상	의료시설	기타	계
456	99	170	67	51	52	104	999
45.6	9.9	17.0	6.7	5.1	5.2	10.4	100



[그림 5-14]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 비율

7)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주거환경상태는 학대피해노인의 위생 및 건강상태 등에 영향을 끼치며 생활수준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이 536건(53.7%), 불량함이 182건(18.2%), 좋음이 167건(16.7%)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불량함과 매우 불량함이 전체의 27.9%를 차지하여 노인단독가구의 약 1/3 정도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1] 노인단독가구 주거환경 상태

(단위: 건, %)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함	매우 불량함	계
17	167	536	182	97	999
1.7	16.7	53.7	18.2	9.7	100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불량함과 매우 불량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거형태가 무상 60.8%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월세 43.5%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환경이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나타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의료시설 34.6%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23.1%, 자택 21.7%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2] 노인단독가구 주거형태별 주거환경

(단위: 건, %)

구 분	매우 좋음	좋음	보 통	불량함	매우 불량함	계
자 택	12	87	240	80	37	456
	2.6	19.1	52.6	17.5	8.1	100
전 세	-	14	59	16	10	99
	-	14.1	59.6	16.2	10.1	100
월 세	1	15	80	49	25	170
	0.6	8.8	47.1	28.8	14.7	100
영구임대 아파트	1	8	48	5	5	67
	1.5	11.9	71.6	7.5	7.5	100
의료시설	-	18	34	-	-	52
	-	34.6	65.4	-	-	100
무 상	-	4	16	18	13	51
	-	7.8	31.4	35.3	25.5	100
기 타	3	21	59	14	7	104
	2.9	20.2	56.7	13.5	6.7	100
계	17	167	536	182	97	999
	2.7	17	51.8	18.2	10.3	100

8)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의 질병 유형

노인단독가구의 질병 유형은 총 955건으로 고혈압 223건(23.4%), 관절염 152건(15.9%), 기타 147건(15.4%), 당뇨병 121건(12.7%), 디스크 59건(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5-33]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약성신생물(암)	14	1.5
관절염	152	15.9
요통, 좌골통	27	2.8
디스크	59	6.2
신경통	36	3.8
골다공증	32	3.4
소화성궤양	7	0.7
만성간염, 간경변	1	0.1

구분	건수	비율
당뇨병	121	12.7
갑상선 질환	9	0.9
고혈압	223	23.4
저혈압	1	0.1
중풍, 뇌혈관 질환	37	3.9
협심증, 심근경색증	16	1.7
폐결핵, 결핵	4	0.4
만성기관지염	2	0.2
천식	15	1.6
백내장	6	0.6
녹내장	2	0.2
만성중이염	-	-
만성신장질환	4	0.4
빈혈	5	0.5
피부병	6	0.6
골절, 후유증	29	3.0
기타	147	15.4
계	955	100

9)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999건 중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진단이 197건(19.7%),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이 174명(17.4%)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단독가구의 학대피해노인 수는 총 371명으로 37.1%를 차지하였다.

[표 5-34] 노인단독가구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건, %)

노인단독가구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 받음)	계
999	174	197	371
	17.4	19.7	37.1

10)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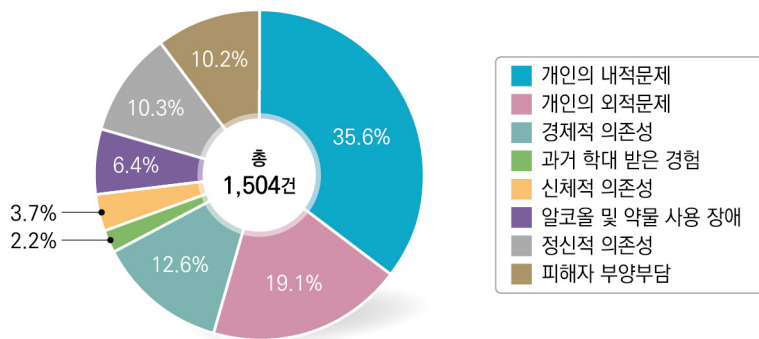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 중 학대행위자 원인을 보면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문제가 535건(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개인의 외적문제가 288건(19.1%)으로 이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실직,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경제적 의존성이 189건(12.6%), 정신적 의존성 155건(10.3%), 피해자 부양부담이 153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율
개인의 내적문제	535	35.6
개인의 외적문제	288	19.1
경제적 의존성	189	12.6
과거 학대 받은 경험	33	2.2
신체적 의존성	55	3.7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96	6.4
정신적 의존성	155	10.3
피해자 부양부담	153	10.2
계	1,504	100

* 중복



[그림 5-1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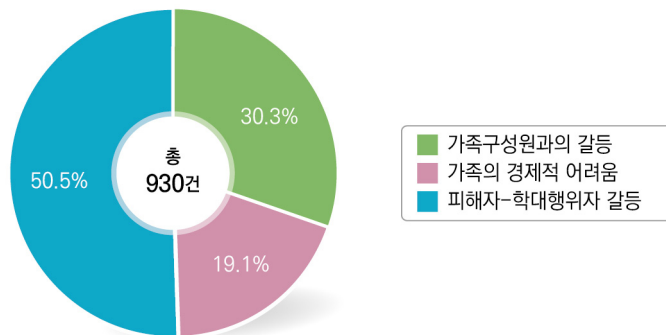
11)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원인 중 가족-환경 원인을 분석해보면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이 470건(50.5%),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자녀간, 형제간, 친족간)이 282건(30.3%),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178건(19.1%)으로 가족간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3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282	178	470	930
30.3	19.1	50.5	100



[그림 5-16]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 원인)

12)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매일이 240건(2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에 한번 이상이 235건(23.5%)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219건(21.9%), 일회성 150건(15.0%), 3개월에 한번 이상 98건(9.8%), 6개월에 한번 이상 57건(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단독가구 내 노인학대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5-37]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240	219	235	98	57	150	999
24.0	21.9	23.5	9.8	5.7	15.0	100

13)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노인단독가구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68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31건(23.1%), 5년 이상이 220건(22.0%)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1년 이상의 학대 지속기간은 총 588건(58.8%)으로 나타나 비교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표 5-38] 노인단독가구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54	231	368	220	126	999
5.4	23.1	36.8	22.0	12.6	100

14)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매일 학대가 발생하며, 그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92건(38.3%), 5년 이상이 67건(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이상 학대피해가 지속된 노인단독가구의 10명 중 6명(66.2%)이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9]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학대지속기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학 대 발 생 빈 도	매일	15	66	92	67	-	240
		6.3	27.5	38.3	27.9	-	100
	1주일에 한번 이상	19	61	95	43	1	219
		8.7	27.9	43.4	19.6	0.5	100
	1개월에 한번 이상	7	62	103	60	3	235
		3.0	26.4	43.8	25.5	1.3	100
	3개월에 한번 이상	2	22	41	33	-	98
		2.0	22.4	41.8	33.7	-	100
	6개월에 한번 이상	2	11	28	15	1	57
		3.5	19.3	49.1	26.3	1.8	100
	일회성	9	9	9	2	121	150
		6.0	6.0	6.0	1.3	80.7	100
	계	54	231	368	220	126	999
		5.4	23.1	36.8	22.0	12.6	100

15)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기간별 노인학대 유형

노인단독가구의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8건(31.3%), 방임 313건(22.9%), 신체적 학대 272건(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정서적 학대의 학대발생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33.3%)과 1년 이상 5년 미만(31.8%) 그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노인단독가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0] 노인단독가구 학대발생기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학대발생 기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1개월 미만	13	17	1	6	22	10	-	69
	18.8	24.6	1.4	8.7	31.9	14.5	-	100
1개월 이상 1년 미만	43	89	11	23	81	45	10	302
	14.2	29.5	3.6	7.6	26.8	14.9	3.3	100
1년 이상 5년 미만	75	157	5	46	121	79	10	493
	15.2	31.8	1.0	9.3	24.6	16.0	2.0	100

학대발생 기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5년 이상	79	114	1	33	62	48	5	342
	23.1	33.3	0.3	9.6	18.1	14.0	1.5	100
일회성	62	51	6	7	27	5	3	161
	38.5	31.7	3.7	4.3	16.8	3.1	1.9	100
계	272	428	24	115	313	187	28	1,367
	19.9	31.3	1.8	8.4	22.9	13.7	2.0	100

16)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42.9%) - 신체적(37.3%) - 방임(8.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정서적(31.3%) - 방임(22.9%) - 신체적(19.9%) 순이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임의 비율이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5-41] 학대피해노인 노인단독가구 학대 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272	428	24	115	313	187	28	1,367
19.9	31.3	1.8	8.4	22.9	13.7	2.0	100

17)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노인단독가구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들(36.8%), 피해자 본인(17.0%), 딸(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학대 유형에서 자기방임이 가장 높은 것과 학대행위자 유형 중 피해자 본인이 가장 높은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42] 노인단독가구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187	56	405	33	175	9	20	23	721	81	111	1,100
17.0	5.1	36.8	3.0	15.9	0.8	1.8	2.1	65.6	7.4	10.1	100

4 • 시설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건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7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54건(46.6%),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0건(13.2%)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학대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298	1 0.3	11 3.7	-	2 0.7
	서울북부	224	1 0.4	14 6.3	-	-
	소계	522	2 0.4	25 4.8	-	2 0.4
부산	부산동부	199	-	-	-	-
	부산서부	180	3 1.7	-	-	-
	소계	379	3 0.8	-	-	-
대구	대구남부	111	4 3.6	4 3.6	-	2 1.8
	대구북부	99	-	-	-	-
	소계	210	4 1.9	4 1.9	-	2 1.0
인천		436	-	15	-	3
			-	3.4	-	0.7
광주		202	-	1	-	-
			-	0.5	-	-
대전		126	-	6	-	24
			-	4.8	-	19.0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울산		102	1	7	-	-
			1.0	6.9	-	-
경기	경기남부	167	-	9	-	1
			-	5.4	-	0.6
	경기북부	379	-	46	-	4
			-	12.1	-	1.1
	경기서부	355	2	8	-	1
			0.6	2.3	-	0.3
소계	901	2	63	-	6	
			0.2	7.0	-	0.7
강원	강원	225	40	87	-	-
			17.8	38.7	-	-
	강원동부	93	-	13	-	1
			-	14.0	-	1.1
	강원남부	116	-	54	-	-
			-	46.6	-	-
소계	434	40	154	-	1	
			9.2	35.5	-	0.2
충북	충북	75	-	2	-	-
			-	2.7	-	-
	충북북부	64	-	5	-	-
			-	7.8	-	-
소계	139	-	7	-	-	
		-	5.0	-	-	
충남	충남	192	1	14	1	-
			0.5	7.3	0.5	-
	충남남부	90	1	-	-	-
			1.1	-	-	-
소계	282	2	14	1	-	
		0.7	5.0	0.4	-	
전북	전북	130	1	-	-	-
			0.8	-	-	-
	전북서부	103	-	-	-	-
			-	-	-	-
소계	233	1	-	-	-	
		0.4	-	-	-	

지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남	전남	153	1	1	-	-
			0.7	0.7	-	-
	전남서부	184	2	1	-	-
			1.1	0.5	-	-
	소계	337	3	2	-	-
		0.9	0.6	-	-	
경북	경북	179	-	1	-	-
			-	0.6	-	-
	경북서북부	128	-	1	-	-
			-	0.8	-	-
	경북서남부	124	-	3	-	-
			-	2.4	-	-
소계	431	-	5	-	-	
		-	1.2	-	-	
경남	경남	217	1	3	-	-
			0.5	1.4	-	-
	경남서부	79	-	12	-	-
			-	15.2	-	-
	소계	296	1	15	-	-
		0.3	5.1	-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6	-	2	-	2
			-	1.9	-	1.9
	제주도서귀포시	52	-	1	-	-
			-	1.9	-	-
	소계	158	-	3	-	2
		-	1.9	-	1.3	
계	5,188	59	321	1	40	
		1.1	6.2	0.0	0.8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기관별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시설학대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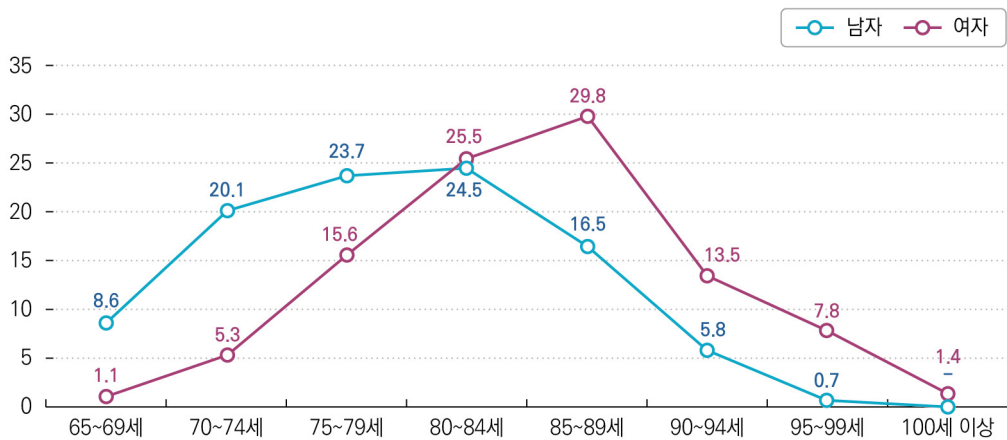
시설학대 421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282명(67.0%), 남성노인은 139명(33.0%)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0대 43.8%, 80대 41.0%, 60대 8.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80대가 55.3%로 절반이상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90대 21.3%, 7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4]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12	28	33	34	23	8	1	-	139
	8.6	20.1	23.7	24.5	16.5	5.8	0.7	-	100
여성	3	15	44	72	84	38	22	4	282
	1.1	5.3	15.6	25.5	29.8	13.5	7.8	1.4	100
계	15	43	77	106	107	46	23	4	421
	3.6	10.2	18.3	25.2	25.4	10.9	5.5	1.0	100



[그림 5-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

3)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421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4건(24.7%),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96건(22.8%)으로 전체 시설학대 건수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206건(48.9%)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관련기관이 100건(23.8%)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족 75건(17.8%), 타인 35건(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5] 시설학대 신고자유형

(단위: 건,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4	61	-	1	96
		8.1	14.5	-	0.2	22.8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종사자	-	-	-	-	-
		-	-	-	-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	-	-	-	-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74	-	27	104
		0.7	17.6	-	6.4	24.7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	-	-
		-	-	-	-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	-	-	1
		-	0.2	-	-	0.2
	구급대의 대원	-	-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	-	-	-	-	
	-	-	-	-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요양직직원	-	1	-	-	1
		-	0.2	-	-	0.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	4	-	-	4
		-	1.0	-	-	1.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소계	37	141	-	28	206	
	8.8	33.5	-	6.7	48.9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	4	-	1	5
		-	1.0	-	0.2	1.2
	학대행위자본인	-	-	-	-	-
		-	-	-	-	-
	친족	4	69	-	2	75
		1.0	16.4	-	0.5	17.8
	타인	1	30	1	3	35
		0.2	7.1	0.2	0.7	8.3
	관련기관 ²⁷⁾	17	77	-	6	100
		4.0	18.3	-	1.4	23.8
소계	22	180	1	12	215	
	5.2	42.8	0.2	2.9	51.1	
계	59	321	1	40	421	
	14.0	76.2	0.2	9.5	100	

27)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4)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55.2%는 배우자가 있고, 44.8%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장소 중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배우자 없음 비율이 높았으며, 이용시설의 배우자 없음(85.4%)이 생활시설의 배우자 없음(62.9%) 보다 22.5%p 높게 나타났다.

[표 5-46]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가정 내	2,388	176	110	2,674	74	1,590	223	50	5	1,942	4,616	
	51.7	3.8	2.4	57.9	1.6	34.4	4.8	1.1	0.1	42.1	100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5	-	-	5	-	54	-	-	-	54	59
		8.5	-	-	8.5	-	91.5	-	-	-	91.5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32	1	3	136	4	179	2	-	-	185	321
		41.1	0.3	0.9	42.4	1.2	55.8	0.6	-	-	57.6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1	-	-	-	1	1
		-	-	-	-	-	100	-	-	-	100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6	-	-	6	-	34	-	-	-	34	40
		15.0	-	-	15.0	-	85.0	-	-	-	85.0	100
병원	10	-	-	10	1	53	-	1	-	55	65	
	15.4	-	-	15.4	1.5	81.5	-	1.5	-	84.6	100	
공공 장소	14	-	-	14	2	20	3	3	-	28	42	
	33.3	-	-	33.3	4.8	47.6	7.1	7.1	-	66.7	100	
기타	15	2	1	18	1	17	8	-	-	26	44	
	34.1	4.5	2.3	40.9	2.3	38.6	18.2	-	-	59.1	100	
계	2,570	179	114	2,863	82	1,948	236	54	5	2,325	5,188	
	49.5	3.5	2.2	55.2	1.6	37.5	4.5	1.0	0.1	44.8	100	

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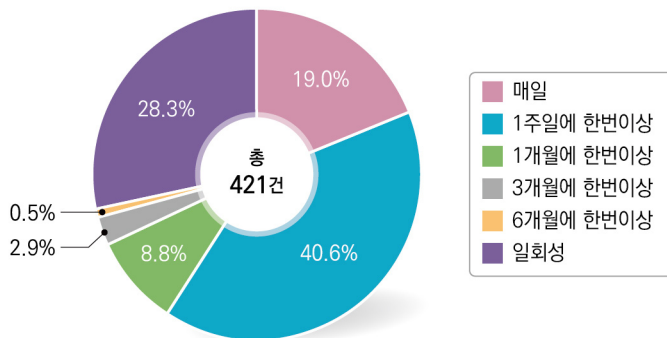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40.6%가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 일회성 28.3%, 매일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중 노인요양복지시설의 경우, 매일 및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을 합하면 59.5%로 생활시설학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체 시설학대 421건 중 45.4%를 차지하여 타 시설에 비해 학대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7]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생활 시설	노인요양 복지시설	70	121	15	11	2	102	321
		21.8	37.7	4.7	3.4	0.6	31.8	100
	노인주거 복지시설	7	41	3	-	-	8	59
		11.9	69.5	5.1	-	-	13.6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1	-	-	1
		-	-	-	100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3	9	19	-	-	9	40
		7.5	22.5	47.5	-	-	22.5	100
계		80	171	37	12	2	119	421
		19.0	40.6	8.8	2.9	0.5	28.3	100



[그림 5-18]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비율

6)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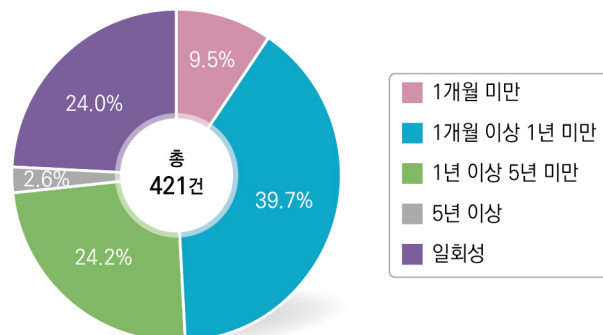
전체 시설학대 사례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39.7%)으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 102건(24.2%), 일회성 101건(24.0%)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학대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33.3%), 일회성(28.0%), 1년 이상 5년 미만(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1개월 이상 1년 미만(66.1%), 5년 이상(11.9%), 일회성(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8]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35	107	86	3	90	321
		10.9	33.3	26.8	0.9	28.0	100
	노인주거 복지시설	2	39	5	7	6	59
		3.4	66.1	8.5	11.9	10.2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	-	-	1
		-	100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3	20	11	1	5	40
		7.5	50.0	27.5	2.5	12.5	100
계		40	167	102	11	101	421
		9.5	39.7	24.2	2.6	24.0	100



[그림 5-19]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비율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았다. 학대발생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며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59.6%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대지속기간 기준 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율이 높아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 시설학대 발생빈도와 상관없이 한번 발생한 시설학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4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학대지속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학 대 발 생 빈 도	매일	16	27	30	7	-	80
		20.0	33.8	37.5	8.8	-	100
	1주일에 한번 이상	6	102	58	4	1	171
		3.5	59.6	33.9	2.3	0.6	100
	1개월에 한번 이상	6	22	9	-	-	37
		16.2	59.5	24.3	-	-	100
	3개월에 한번 이상	-	10	1	-	1	12
		-	83.3	8.3	-	8.3	100
	6개월에 한번 이상	1	1	-	-	-	2
		50.0	50.0	-	-	-	100
	일회성	11	5	4	-	99	119
		9.2	4.2	3.4	-	83.2	100
	계	40	167	102	11	101	421
		9.5	39.7	24.2	2.6	24.0	100

7) 시설학대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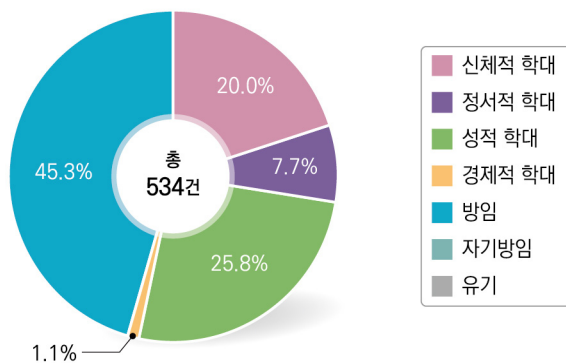
시설학대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534건 중 방임이 242건(45.3%), 성적 학대가 138건(25.8%), 신체적 학대가 107건(20.0%), 정서적 학대 41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방임이 164건(40.0%)으로 가장 높았고, 성적 학대 124건(30.2%), 신체적 학대 87건(2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방임이 48건(62.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14건(18.2%), 성적 학대 12건(1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0] 시설학대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87	30	124	5	164	-	-	410
		21.2	7.3	30.2	1.2	40.0	-	-	100
	노인주거 복지시설	14	3	12	-	48	-	-	77
		18.2	3.9	15.6	-	62.3	-	-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	-	-	-	-	1
		-	100	-	-	-	-	-	100
	재가노인 복지시설	6	7	2	1	30	-	-	46
		13.0	15.2	4.3	2.2	65.2	-	-	100
계		107	41	138	6	242	-	-	534
		20.0	7.7	25.8	1.1	45.3	-	-	100

* 중복



[그림 5-20] 시설학대 학대 유형 비율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421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321건(76.2%)이다. 치매노인 3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290건(90.3%)으로 이용시설 31건(9.7%)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51]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421	생활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34	230	264
			8.1	54.6	62.7
		노인주거 복지시설	6	20	26
			1.4	4.8	6.2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	1
			-	0.2	0.2
		재가노인 복지시설	-	30	30
			-	7.1	7.1
	계		40	281	321
			9.5	66.7	76.2

9)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716명이며 그 중 여성이 585명(81.7%), 남성이 131명(18.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50대가 52명(39.7%), 215명(36.8%)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2]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14	7	25	52	21	12	131
	-	10.7	5.3	19.1	39.7	16.0	9.2	100
여성	-	-	24	129	215	155	62	585
	-	-	4.1	22.1	36.8	26.5	10.6	100
계	-	14	31	154	267	176	74	716
	-	2.0	4.3	21.5	37.3	24.6	10.3	100

1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학대를 시설 유형별로 구분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시설 학대피해노인 380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1명 (16.1%)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6.4%와 비교하여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321	42 13.1
	노인주거 복지시설	59	19 32.2
	소계	380	61 16.1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1	- -
	재가노인 복지시설	40	3 7.5
	소계	41	3 7.3
계		421	64 15.2

5 • 노(老) - 노(老)학대 현황

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노(老) - 노(老)학대란 65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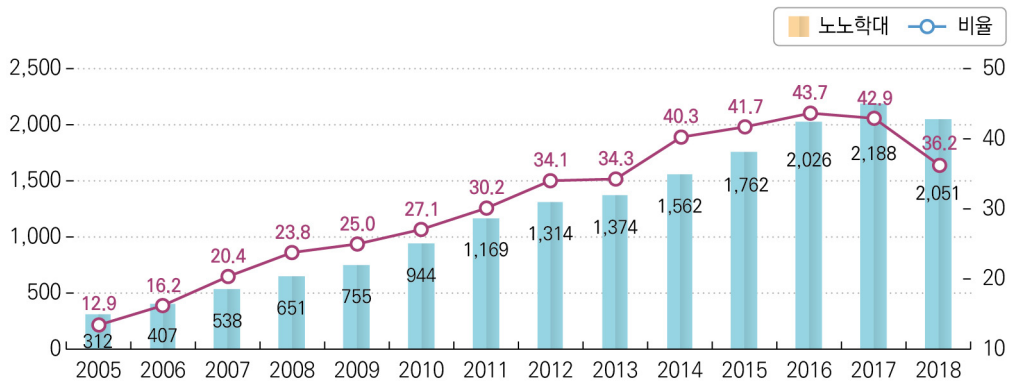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추이를 보면 2014년 1,562건에서 2018년 2,051건으로 5년 간 31.3%(489건) 증가하였다. 2017년에 비하면 노(老) - 노(老)학대 건수는 감소하였으나²⁸⁾, 비율이 36.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 연장 및 자녀의 노년기 진입,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의 증가 등에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는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들이 꾸준히 37.2%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 최근 5년 동안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비율이 2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이 노(老) - 노(老)학대 증가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54]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단위: 명, 건,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노노 건수	312	407	538	651	755	944	1,169	1,314	1,374	1,562	1,762	2,026	2,188	2,051
학대 비율	12.9	16.2	20.4	23.8	25.0	27.1	30.2	34.1	34.3	40.3	41.7	43.7	42.9	36.2
전체 학대행위자	2,418	2,508	2,636	2,730	3,019	3,478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그림 5-21]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된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는 총 2,051명이며 이는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36.2%에 해당된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 전체 학대행위자 대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비율을 살펴보면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50.0%(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수 기준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171명

28) 노(老) - 노(老)학대 건수가 감소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2017년까지 노(老) - 노(老)학대의 기준 연령이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8.7%)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기관은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18.4%(23명)이고, 가장 낮은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건수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9명(34.5%)으로 나타났다.

[표 5-55] 지역 및 기관별 노(老) - 노(老)학대 건수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노(老) - 노(老)학대		전체 학대행위자
		건수	비율	
서울	서울남부	120	39.1	307
	서울북부	83	36.1	230
	소계	203	37.8	537
부산	부산동부	95	44.0	216
	부산서부	82	44.1	186
	소계	177	44.0	402
대구	대구남부	50	44.2	113
	대구북부	40	39.6	101
	소계	90	42.1	214
인천		171	38.7	442
광주		69	32.2	214
대전		60	42.6	141
울산		32	29.9	107
경기	경기남부	67	37.4	179
	경기북부	129	32.3	400
	경기서부	143	38.3	373
	소계	339	35.6	952
강원	강원	136	30.1	452
	강원동부	21	19.8	106
	강원남부	23	18.4	125
	소계	180	26.4	683
충북	충북	38	50.0	76
	충북북부	24	35.8	67
	소계	62	43.4	143
충남	충남	60	29.7	202
	충남남부	27	29.3	92
	소계	87	29.6	294

지역	기관명	노(老) - 노(老)학대		전체 학대행위자
		건수	비율	
전북	전북	61	43.0	142
	전북서부	46	44.7	103
	소계	107	43.7	245
전남	전남	63	41.2	153
	전남서부	91	46.4	196
	소계	154	44.1	349
경북	경북	55	30.4	181
	경북서북부	55	41.7	132
	경북서남부	51	38.9	131
	소계	161	36.3	444
경남	경남	71	31.4	226
	경남서부	25	24.0	104
	소계	96	29.1	33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4	38.9	113
	제주도서귀포시	19	34.5	55
	소계	63	37.5	168
계		2,051	36.2	5,665

3)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노(老) - 노(老)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비율은 14.5%이다.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6%,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5.0%,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85.5%로 신고자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유형으로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가 67.0%로 가장 높고,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7.9%, 친족에 의한 신고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6] 노(老) - 노(老)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 수	비 율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8	0.4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5	0.2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02	5.0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	-
	가정폭력관련종사자	49	2.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4	5.6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6	0.3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	0.2
	구급대의 대원	1	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2	0.1
	응급구조사	-	-
	의료기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2	0.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	0.0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	0.0
	소계	297	14.5
	비신고의무자	학대피해노인본인	163
학대행위자본인		2	0.1
친족		157	7.7
타인		57	2.8
관련기관 ²⁹⁾		1,375	67.0
소계		1,754	85.5
계		2,051	100

29)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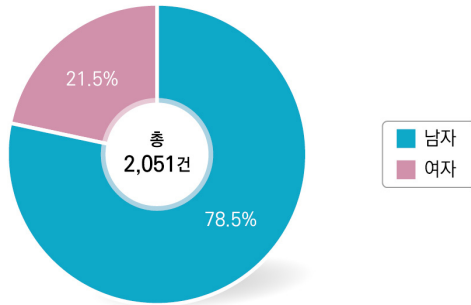
4)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2,051명 중 남성이 1,610명(78.5%), 여성이 441명(21.5%)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 성별 비율³⁰⁾과 동일한 양상이나 남성 비율이 7.7%p 높고, 여성 비율이 7.7%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7]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 성	여 성	계
1,610	441	2,051
78.5	21.5	100



[그림 5-22]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성별

5)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유형은 전체 학대행위자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유형에서는 아들 - 배우자 - 기관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老) - 노(老)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1,474명(71.9%)으로 가장 높고, 피해자 본인이 240명(11.7%), 기관이 138명(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은 고령의 부부 간 배우자 학대, 학대피해노인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가 대표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240	1,474	68	4	14	4	-	26	1,590	83	138	2,051
11.7	71.9	3.3	0.2	0.7	0.2	-	1.3	77.6	4.0	6.7	100

30) 2018년 전체 학대행위자 중 남성은 4,008명(70.8%)이고 여성은 1,657명(29.2%)임.

6)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노(老) - 노(老)학대 총 2,051건 중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1,218건(59.4%)으로 가장 많고, 노인단독가구가 321건(15.7%), 자녀동거가구가 253건(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는 2017년과 비교해보면 크게 증가하였는데³¹⁾ 이는 앞서 본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중 배우자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59]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단위: 건, %)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321	1,218	25	42	253	192	2,051
15.7	59.4	1.2	2.0	12.3	9.4	100

7)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노(老) - 노(老)학대 행위자 2,051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27명(11.1%)이다. 2017년 노(老) - 노(老) 학대 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266명, 12.2%)과 비교하면 약 1.1%p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60]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51	227
	11.1

8)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726명(35.4%), 고졸 450명(21.9%), 중졸 391명(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1) 2017년 노(老) - 노(老)학대 가구형태 중 노인부부는 1,011건으로 전체 노(老) - 노(老)학대 2,188건 중 46.2%를 차지한다.

[표 5-61]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교육수준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이상	계
316	726	391	450	168	2,051
15.4	35.4	19.1	21.9	8.2	100

9)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을 보면 무직이 1,580명(77.0%)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126명(6.1%), 서비스·판매 종사자 107명(5.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62] 노(老) - 노(老)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단위: 명, %)

직업	명수	비율
무직	1,580	77.0
공무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5	0.2
전문직	48	2.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	0.5
사무종사자	4	0.2
서비스·판매종사자	107	5.2
농·어·축산업 종사자	91	4.4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0.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
단순노무종사자	126	6.1
자영업자	65	3.2
종교인	5	0.2
계	2,051	100

6 ·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현황

1)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18년 전체 노인학대 5,188건 중 치매노인은 1,207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은 884명(73.2%)이고, 남성은 323명(26.8%)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6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성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계
남성	152	171	323
여성	355	529	884
계	507	700	1,207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569명(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0대가 403명(33.4%)으로 두 번째로 높다. 치매노인의 연령대를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노인은 204명(17.0%)이고 후기노인은 1,003명(83.0%)로 나타나 치매노인 중 후기노인의 학대피해노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치매노인의 연령대³²⁾와 비교하면, 전기노인은 1.0%p 감소한 반면, 후기노인은 3.1%p 증가하여 후기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33	79	131	121	87	45	10	1	507
	6.5	15.6	25.8	23.9	17.2	8.9	2.0	0.2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4	58	135	192	169	76	29	7	700
	4.9	8.3	19.3	27.4	24.1	10.9	4.1	1.0	100
계	67	137	266	313	256	121	39	8	1,207
	5.6	11.4	22.0	25.9	21.2	10.0	3.2	0.7	100

32) 2017년 치매노인 1,122건 중 전기노인은 202명(18.0%)이고, 후기노인은 896명(79.9%)을 차지하고 있다(64세 이하 수치는 미포함하여 전체 비율이 100%가 되지 않음).

2)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449건(2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448건(26.4%), 정서적 학대 445건(26.2%)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유형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과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3,508건, 4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치매노인의 경우 방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과도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에는 신체적 학대(443건, 28.1%), 정서적 학대(422건, 26.8%), 방임(370건, 23.5%) 순이었으나 2018년에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6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86	214	30	43	153	79	14	719
	25.9	29.8	4.2	6.0	21.3	11.0	1.9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62	231	92	37	296	33	27	978
	26.8	23.6	9.4	3.8	30.3	3.4	2.8	100
계	448	445	122	80	449	112	41	1,697
	26.4	26.2	7.2	4.7	26.5	6.6	2.4	100

* 중복

3)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825건(68.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활시설 290건(24.0%)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115건(92.4%)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매의심과 치매진단의 세부 유형에서도 모두 가정 내가 각각 450건(88.8%), 375건(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가 주로 가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6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명,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450	40	-	5	3	9	507
	88.8	7.9	-	1.0	0.6	1.8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75	250	31	29	8	7	700
	53.6	35.7	4.4	4.1	1.1	1.0	100
계	825	290	31	34	11	16	1,207
	68.4	24.0	2.6	2.8	0.9	1.3	100

4)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이 337명(27.9%)로 가장 높고 매일 296명(24.5%), 1개월에 한번 이상 241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피해빈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이 1,574명(30.3%)으로 가장 높고, 1개월에 한번 이상이 1,434명(27.6%), 일회성 720명(13.9%) 순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24.5%)이 전체 학대피해노인이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13.3%)보다 약 11.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은 더욱 잦은 빈도로 학대받을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67]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명, %)

구 분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6개월에 한번 이상	일회성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26	151	107	37	35	51	507
	24.9	29.8	21.1	7.3	6.9	10.1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170	186	134	37	17	156	700
	24.3	26.6	19.1	5.3	2.4	22.3	100
계	296	337	241	74	52	207	1,207
	24.5	27.9	20.0	6.1	4.3	17.1	100

5)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치매노인 대상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407건(33.7%)으로 가장 높았고,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22건(26.7%), 5년 이상이 227건(18.8%)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 중 1년 이상인 경우가 634건(52.5%)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결과는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이 장기간 학대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표 5-68]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일회성	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4	116	184	138	45	507
	4.7	22.9	36.3	27.2	8.9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49	206	223	89	133	700
	7.0	29.4	31.9	12.7	19.0	100
계	73	322	407	227	178	1,207
	6.0	26.7	33.7	18.8	14.7	100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친족 779건(49.5%)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관 631건(40.1%)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 422건(26.8%)으로 가장 높고, 배우자 141건(9.0%), 딸 125건(7.9%) 순이다. 즉, 학대행위자 중 친족의 경우 자녀 - 배우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친족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를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치매의심은 친족이 401건(72.6%)으로 가장 높았지만 치매진단의 경우 기관이 575건(56.2%)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부양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5-69]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79	77	219	12	58	4	16	15	401	16	56	552
	14.3	13.9	39.7	2.2	10.5	0.7	2.9	2.7	72.6	2.9	10.1	100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2	64	203	23	67	5	6	10	378	38	575	1,023
	3.1	6.3	19.8	2.2	6.5	0.5	0.6	1.0	37.0	3.7	56.2	100
계	111	141	422	35	125	9	22	25	779	54	631	1,575
	7.0	9.0	26.8	2.2	7.9	0.6	1.4	1.6	49.5	3.4	40.1	100

*중복

제6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제6장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의 근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18개³³⁾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1) 보호노인 현황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모두 일컫는다.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 대상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2018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보호노인 현황을 보면 입소자가 517명(42.2%), 이용자가 708명(57.8%)으로 총 1,225명이다. 이는 기관 당 연평균 68.1명, 월평균 5.7명이 입소 및 이용한 수치이다.

[표 6-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입소자	57	460	517
	11.0	89.0	100
이용자	146	562	708
	20.6	79.4	100
계	203	1,022	1,225
	16.6	83.4	100

33) 이 중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경상북도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보호노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70대가 각각 271명(52.4%), 387명(54.7%)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용자가 입소자에 비해 2.3%p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노인의 성별은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의 경우 남성노인은 75~79세가 13명(22.8%), 여성노인은 70~74세가 130명(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경우 남성은 70~74세가 48명(32.9%), 여성은 75~79세가 163명(29.0%)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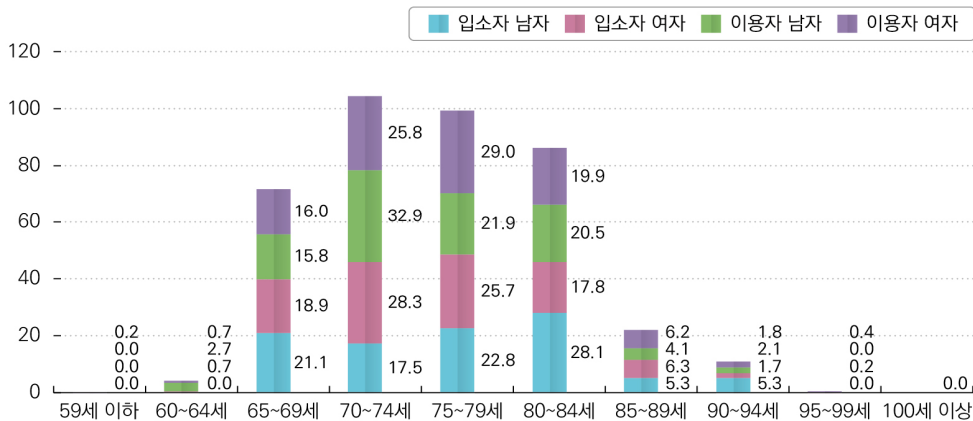
[표 6-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59세 이하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입소자*	남성	-	-	12	10	13	16	3	3	-	57
		-	-	21.1	17.5	22.8	28.1	5.3	5.3	-	100
	여성	-	3	87	130	118	82	29	8	1	460
		-	0.7	18.9	28.3	25.7	17.8	6.3	1.7	0.2	100
	계	-	3	99	140	131	98	32	11	1	517
	-	0.6	19.1	27.1	25.3	19.0	6.2	2.1	0.2	100	
이용자**	남성	-	4	23	48	32	30	6	3	-	146
		-	2.7	15.8	32.9	21.9	20.5	4.1	2.1	-	100
	여성	1	4	90	145	163	112	35	10	2	562
		0.2	0.7	16.0	25.8	29.0	19.9	6.2	1.8	0.4	100
	계	1	8	113	193	194	142	41	13	2	708
	0.1	1.1	16.0	27.3	27.4	20.1	5.8	1.8	0.3	100	

* 입소자: 보호노인의 연령대에 65세 미만의 노인이 있는 이유는 2017년 말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이 2018년도 까지 센터에 입소한 경우(2017년의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기준이 60세 이상).

** 이용자: 기존 학대피해노인 대상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이용한 경우



[그림 6-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입소자와 이용자의 결혼유형을 보면, 입소자의 경우 배우자 있음(288명, 55.7%)이 배우자 없음(228명, 44.1%)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의 경우 배우자 없음 357명(50.4%), 배우자 있음 351명(49.6%)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보호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파악 안됨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47	25	15	1	288	12	194	20	1	1	0	228	1	517
	47.8	4.8	2.9	0.2	55.7	2.3	37.5	3.9	0.2	0.2	-	44.1	0.2	100
이용자	316	21	12	2	351	10	303	35	8	-	1	357	4	708
	44.6	3.0	1.7	0.3	49.6	1.4	42.8	4.9	1.1	-	0.1	50.4	0.6	100
계	563	46	27	3	639	22	497	55	9	1	1	585	5	1,225
	46.0	3.8	2.2	0.2	52.2	1.8	40.6	4.5	0.7	0.1	0.1	47.8	0.4	100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보호노인의 동거자 유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529명(50.4%), 아들 322명(30.7%), 손자녀 67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머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파악 안됨	계
입소자	264	163	19	28	5	30	4	11	2	526
	50.2	31.0	3.6	5.3	1.0	5.7	0.8	2.1	0.4	100
이용자	265	159	12	27	2	37	2	10	9	523
	50.7	30.4	2.3	5.2	0.4	7.1	0.4	1.9	1.7	100
계	529	322	31	55	7	67	6	21	11	1,049
	50.4	30.7	3.0	5.2	0.7	6.4	0.6	2.0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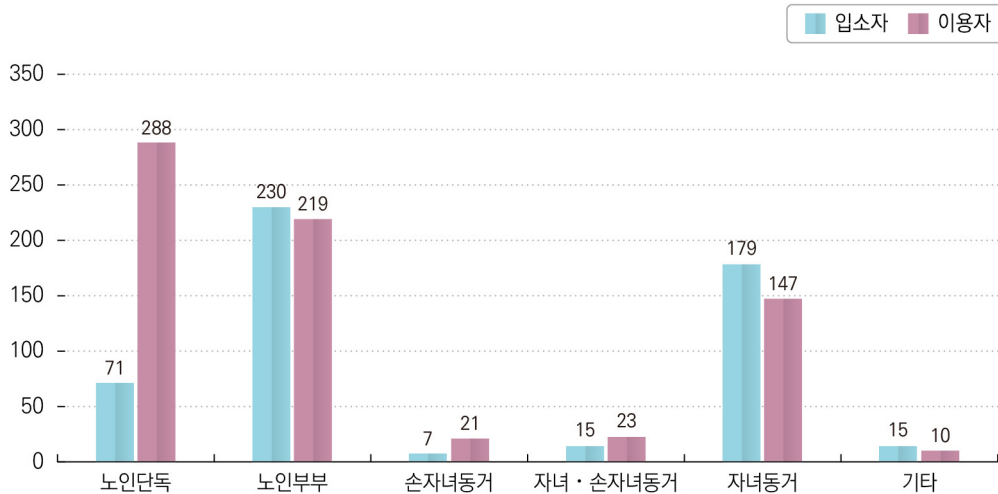
4) 보호노인 가구형태

입소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230명(44.5%), 자녀동거가구가 179명(34.6%), 노인단독가구가 71명(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의 경우 노인단독가구가 288명(40.7%)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 219명(30.9%), 자녀동거가구 147명(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³⁴⁾해 이용자의 노인단독가구 비율은 7.8%p 줄어든 반면,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7.5%p 증가하였다.

[표 6-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자녀동거	기 타	계
입소자	71	230	7	15	179	15	517
	13.7	44.5	1.4	2.9	34.6	2.9	100
이용자	288	219	21	23	147	10	708
	40.7	30.9	3.0	3.2	20.8	1.4	100
계	359	449	28	38	326	25	1,225
	29.3	36.7	2.3	3.1	26.6	2.0	100



[그림 6-2] 보호노인 가구형태

34) 2017년 보호노인 중 이용자의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 417명(48.5%), 노인부부가구 257명(29.9%), 자녀동거가구 114명(13.3%) 순이다.

5) 보호노인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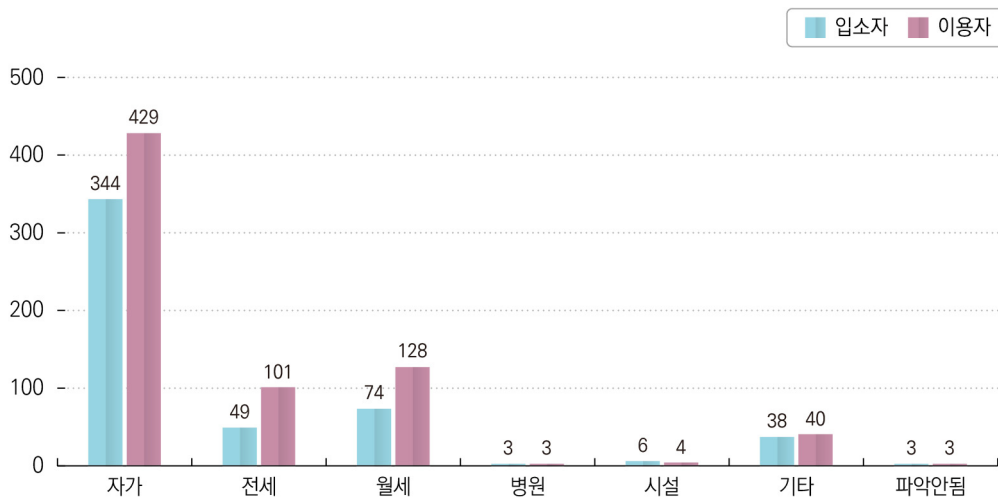
보호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자가가 344명(66.5%), 월세 74명(14.3%), 전세 49명(9.5%) 등의 순이며 이용자는 자가가 429명(60.6%), 월세 128명(18.1%), 전세 101명(14.3%)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 비율 순위에 있어서 입소자와 이용자 모두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동일하고 월세가 전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병원	시설	기타	파악안됨	계
입소자	344	49	74	3	6	38	3	517
	66.5	9.5	14.3	0.6	1.2	7.4	0.6	100
이용자	429	101	128	3	4	40	3	708
	60.6	14.3	18.1	0.4	0.6	5.6	0.4	100
계	773	150	202	6	10	78	6	1,225
	63.1	12.2	16.5	0.5	0.8	6.4	0.5	100



[그림 6-3] 보호노인 주거형태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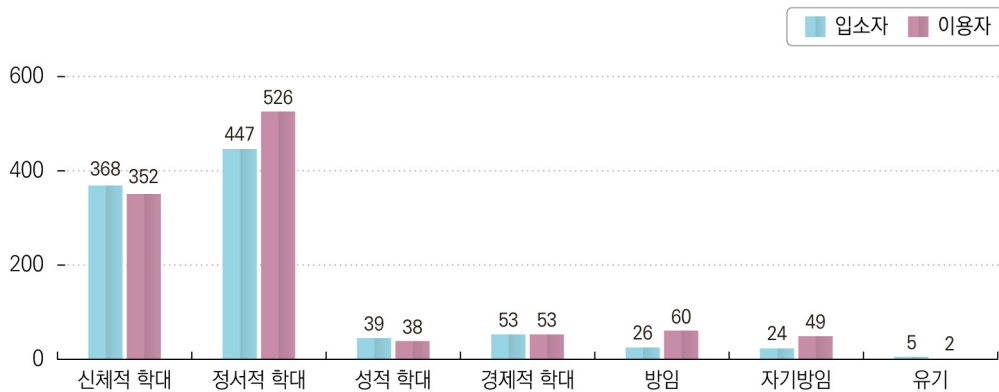
보호노인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자의 경우, 정서적 학대 447건(46.5%), 신체적 학대 368건(38.3%), 경제적 학대 53건(5.5%) 순이며, 이용자는 정서적 학대 526건(48.7%), 신체적 학대 352건(32.6%), 방임 60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입소노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학대가 이용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이용노인의 경우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이 입소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입소자	368	447	39	53	26	24	5	962
	38.3	46.5	4.1	5.5	2.7	2.5	0.5	100
이용자	352	526	38	53	60	49	2	1,080
	32.6	48.7	3.5	4.9	5.6	4.5	0.2	100
계	720	973	77	106	86	73	7	2,042
	35.3	47.6	3.8	5.2	4.2	3.6	0.3	100

* 중복



[그림 6-4] 보호노인 학대 유형

7) 보호노인 치매여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치매간이조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를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18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자 중 치매로 진단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86건 (16.7%)이며 이용노인은 42건(6.0%)으로, 입소자의 치매진단 및 치매의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건,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 진단 및 의심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517	49	37	86
		9.5	7.2	16.7
이용자	708	16	26	42
		2.3	3.7	6.0
계	1,225	65	63	128
		5.3	5.1	10.4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자 및 이용자는 사전, 사후 자가우울증검사³⁵⁾를 실시하여 우울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호노인 1,225명 중 급작스런 퇴소, 병원이송, 학대피해노인 거부,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보호노인은 총 1,069명이며 그 중 99.4%(1,063명)가 우울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2	499	501
	0.4	99.6	100
이용자	4	564	568
	0.7	99.3	100
계	6	1,063	1,069
	0.6	99.4	100

35)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척도 사용

9) 퇴소 후 거주 현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입소자 및 이용자의 928명(75.8%)이 원가정에 복귀하였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입소노인의 276명(53.4%)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생활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 타 시설로 연계(88명, 17.0%)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퇴소 후 거주현황

(단위: 명, %)

구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복귀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생활 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타	소계
입소자	276	10	40	59	29	52	51	517
	53.4	1.9	7.7	11.4	5.6	10.1	9.9	100
이용자	652	-	-	5	-	-	51	708
	92.1	-	-	0.7	-	-	7.2	100
계	928	10	40	64	29	52	102	1,225
	75.8	0.8	3.3	5.2	2.4	4.2	8.3	100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53,334회, 104,522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식사제공의 경우 22,054회에 걸쳐 50,560명에게 제공되었으며,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는 13회에 13명,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및 이송, 의료비 지급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2,723회에 5,391명에게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이 포함되며 9,210회, 9,955명에게 제공되었으며,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은 19,334회에 걸쳐 38,603명에게 제공하였다.

[표 6-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퇴소자)

(단위: 명, 회, %)

내 용		인 원		횟 수*		
		인원	비율	횟수	비율	
식사제공	조식	17,198	16.5	7,376	13.8	
	중식	16,302	15.6	7,222	13.5	
	석식	17,060	16.3	7,456	14.0	
	소계	50,560	48.4	22,054	41.4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13	0.0	13	0.0	
	법률소송지원	-	-	-	-	
	소계	13	0.0	13	0.0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177	0.2	176	0.3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417	0.4	403	0.8
	지원	이송 및 동행	857	0.8	800	1.5
		의료비 지급	417	0.4	394	0.7
	기타	3,397	3.3	950	1.8	
	소계	5,391	5.2	2,723	5.1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534	4.3	4,216	7.9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1,657	1.6	1,443	2.7	
	전문가(강사)상담	693	0.7	512	1.0	
	가족상담	292	0.3	270	0.5	
	기타	2,779	2.7	2,769	5.2	
	소계	9,955	9.5	9,210	17.3	
프로그램	건강증진	20,460	2.0	10,223	19.2	
	문화여가	4,432	4.2	2,325	4.4	
	사회기능회복	3,948	3.8	1,949	3.7	
	심리치료	7,743	7.4	3,442	6.5	
	기타	2,020	1.9	1,391	2.6	
	소계	38,603	36.9	19,334	36.3	
계		104,522	100	53,334	100	

*횟수 : 2인 이상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1회로 집계함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2018년 보호노인 총 1,225명 중 이용자는 708명(57.8%)으로 보호노인의 상당수가 이용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쉼터 서비스 제공 횟수는 입소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소자의 경우 숙식과 함께 비교적 장기적인 상담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이용자의 경우 1~2회성 서비스 및 상담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대한 쉼터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식사제공은 875회, 2,261명이며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41회, 69명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이 1,366회에 걸쳐 1,898명에게 제공되었으며,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은 472회에 걸쳐 1,609명에게 제공되었다.

[표 6-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회, %)

내 용		인 원		횟 수		
		인원	비율	횟수	비율	
식사제공	조식	137	2.3	23	0.8	
	중식	1,463	25.1	543	19.7	
	석식	661	11.3	309	11.2	
	소계	2,261	38.7	875	31.8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연결	-	-	-	-	
	법률소송지원	-	-	-	-	
	소계	-	-	-	-	
의료서비스	연계	이송	-	-	-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	-	-	-
	지원	이송 및 동행	-	-	-	-
		의료비 지급	3	0.1	3	0.1
	기타	66	1.1	38	1.4	
소계	69	1.2	41	1.5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357	6.1	114	4.1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765	13.1	600	21.8	
	전문가(강사)상담	146	2.5	110	4.0	
	가족상담	45	0.8	5	0.2	
	기타	585	10.0	537	19.5	
	소계	1,898	32.5	1,366	49.6	
프로그램	건강증진	191	3.3	94	3.4	
	문화여가	488	8.4	77	2.8	
	사회기능회복	349	6.0	101	3.7	
	심리치료	438	7.5	165	6.0	
	기타	143	2.4	35	1.3	
	소계	1,609	27.6	472	17.1	
계		5,837	100	2,754	100	

제7장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8년)



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3. 연도별 신고자 구분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7.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제7장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8년)

1 연도별 학대신고접수 건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018년 전체신고 건수는 46.5% 증가(10,569건 → 15,482건)하였다. 학대사례의 경우 46.9% 증가(3,532건 → 5,188건)하였고, 일반사례의 경우 46.3% 증가(7,037건 → 10,294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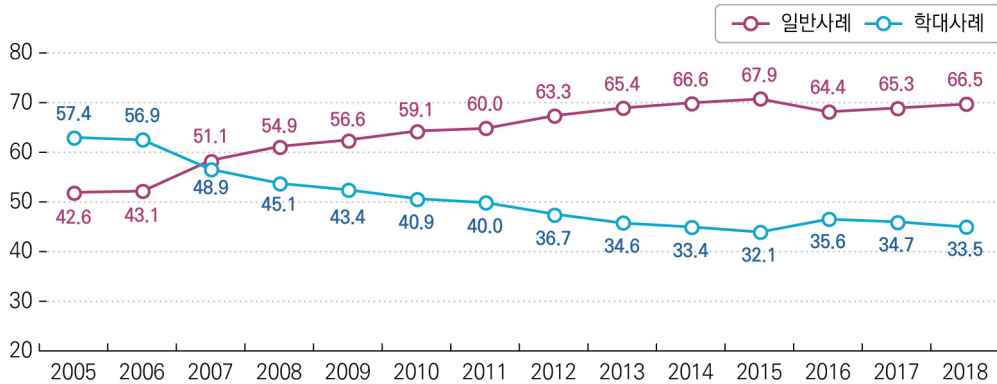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 시작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05년 17개 → '18년 31개) 하였고,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홍보활동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등의 영향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및 학대사례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전년대비 일반사례의 비율이 감소하고 학대사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일반사례와 학대사례 모두 전년 대비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 사례	1,511	1,722	2,418	2,885	3,485	4,435	5,162	5,916	6,642	7,037	8,087	7,729	8,687	10,294
증감률	-	14.0	40.4	19.3	20.8	27.3	16.4	14.6	12.3	5.9	14.9	-4.4	12.4	18.5
학대 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증감률	-	11.6	1.7	2.5	12.9	14.7	12.2	-0.5	2.8	0.3	8.1	12.1	8.0	12.2
전체 사례	3,549	3,996	4,730	5,254	6,159	7,503	8,603	9,340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증감률	-	12.6	18.4	11.1	17.2	21.8	14.7	8.6	8.8	4.0	12.6	0.9	10.8	16.3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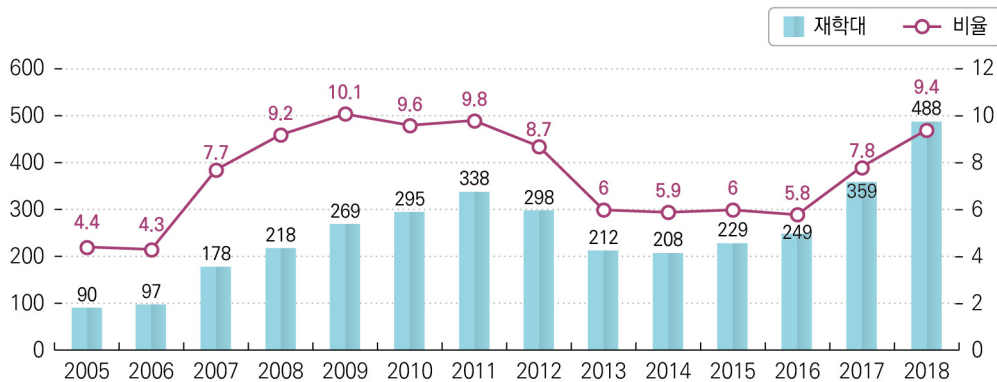
2 연도별 재학대 건수

연도별 재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재학대율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전체학대사례 대비 비율이 2017년 7.8%에 비하여 1.6%p 증가하였고, 지난해 대비 비율은 35.9% 증가하였다.

[표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재학대	건수	90	97	178	218	269	295	338	298	212	208	229	249	359
	비율	4.4	4.3	7.7	9.2	10.1	9.6	9.8	8.7	6.0	5.9	6.0	5.8	7.8
증감률	-	7.8	83.5	22.5	23.4	9.7	14.6	-11.8	-28.9	-1.9	10.1	8.7	44.2	35.9



[그림 7-2]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3 • 연도별 신고자 구분

연도별 신고자의 경우, 2012년 이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14.8%로 2017년(13.7%)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다시 증가한 결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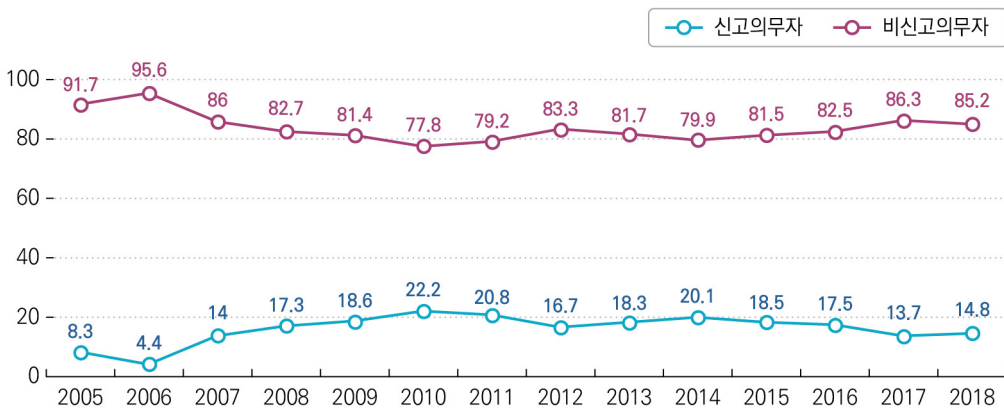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9	33	33	26	43	38	33	41	43	42	44	27	20	26
	1.4	1.5	1.4	1.1	1.6	1.2	1.0	1.2	1.2	1.2	1.2	0.6	0.4	0.5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	-	-	-	-	-	-	-	-	9	12
	-	-	-	-	-	-	-	-	-	-	-	-	0.2	0.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41	20	107	187	221	265	311	167	207	182	178	168	153	194
	2.0	0.9	4.6	7.9	8.3	8.6	9.0	4.9	5.9	5.2	4.7	3.9	3.3	3.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노인)종사자	5	-	3	2	2	10	2	2	-	5	16	2	2	1
	0.2	-	0.1	0.1	0.1	0.3	0.1	0.1	-	0.1	0.4	0.0	0.0	0.0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20	9	28	14	42	37	65	53	66	85	101	79	105	72
	1.0	0.4	1.2	0.6	1.6	1.2	1.9	1.5	1.9	2.4	2.6	1.8	2.3	1.4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74	39	153	180	190	332	305	259	263	322	290	382	283	398
	3.7	1.7	6.6	7.6	7.1	10.8	8.9	7.6	7.5	9.1	7.6	8.9	6.1	7.7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	-	-	-	-	-	-	16	24	17	31	44	18	12
	-	-	-	-	-	-	-	0.5	0.7	0.5	0.8	1.0	0.4	0.2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	-	-	-	-	-	30	36	46	38	45	34	29
	-	-	-	-	-	-	-	0.9	1.0	1.3	1.0	1.1	0.7	0.6
구급대의 대원	-	-	-	-	-	-	-	5	6	8	9	3	5	2
	-	-	-	-	-	-	-	0.1	0.2	0.2	0.2	0.1	0.1	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2	-	1	2	-
	-	-	-	-	-	-	-	-	-	0.1	-	0.0	0.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1
	-	-	-	-	-	-	-	-	-	-	-	-	-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	-	-	-	-	-	-	-	-	-	-	-	4	5
	-	-	-	-	-	-	-	-	-	-	-	-	0.1	0.1
응급구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	-	-	-	-	-	-	-	-	-	5
	-	-	-	-	-	-	-	-	-	-	-	-	-	0.1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	-	-	-	-	-	-	-	-	5
	-	-	-	-	-	-	-	-	-	-	-	-	-	0.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	-	-	5
	-	-	-	-	-	-	-	-	-	-	-	-	-	0.1
소계	169	101	324	409	498	682	716	573	645	709	707	751	635	767
	8.3	4.4	14.0	17.3	18.6	22.2	20.8	16.7	18.3	20.1	18.5	17.5	13.7	14.8
학대피해노인본인	646	664	662	627	673	773	954	825	842	777	722	582	431	387
	32.2	29.2	28.6	26.5	25.2	25.2	27.7	24.1	23.9	22.0	18.9	13.6	9.3	7.5
학대행위자본인	-	7	2	4	10	7	11	10	7	10	8	4	6	4
	-	0.3	0.1	0.2	0.4	0.2	0.3	0.3	0.2	0.3	0.2	0.1	0.1	0.1
친족	729	662	555	633	643	640	716	606	592	519	567	500	407	472
	36.3	29.1	24.0	26.7	24.0	20.9	20.8	17.7	16.8	14.7	14.9	11.7	8.8	9.1
타인	255	371	290	286	321	329	306	295	292	300	320	236	755	156
	12.7	16.3	12.5	12.1	12.0	10.7	8.9	8.6	8.3	8.5	8.4	5.5	16.3	3.0
관련기관 ³⁶⁾	207	374	304	410	529	637	738	1,115	1,142	1,217	1,494	2,207	2,388	3,402
	10.3	16.4	13.1	17.3	19.8	20.8	21.4	32.6	32.4	34.5	39.1	51.6	51.7	65.6
129연계*	-	55	143	-	-	-	-	-	-	-	-	-	-	-
	-	2.4	6.2	-	-	-	-	-	-	-	-	-	-	-
기타	32	40	32	-	-	-	-	-	-	-	-	-	-	-
	1.6	1.8	1.4	-	-	-	-	-	-	-	-	-	-	-
소계	1,837	2,173	1,988	1,960	2,176	2,386	2,725	2,851	2,875	2,823	3,111	3,529	3,987	4,421
	91.7	95.6	86.0	82.7	81.4	77.8	79.2	83.3	81.7	79.9	81.5	82.5	86.3	85.2
계	2,006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29연계"의 경우 2008년부터 신고접수처로 분류됨



[그림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36)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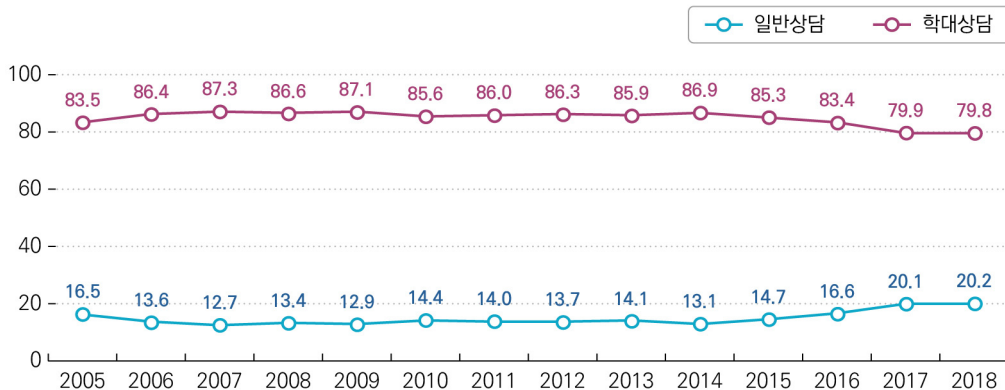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의 횟수 및 비율은 [표 7-1]의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일반사례가 6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담횟수는 학대상담의 비율이 일반상담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 개입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일반사례의 경우에는 1~2회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반면 학대상담은 학대사례의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 상담과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게 집중적인 상담이 제공되어 학대상담 횟수가 일반상담 횟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한해 전체 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15.0% 증가(17년 111,245건 → '18년 127,965건) 하였으며 학대상담은 102,172건으로 전체 상담 중 79.8%이다.

[표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단위: 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 상담	2,732	3,006	3,988	5,485	6,934	8,099	9,383	10,378	11,177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비율	16.5	13.6	12.7	13.4	12.9	14.4	14.0	13.7	14.1	13.1	14.7	16.6	20.1	20.2
증감률	-	10.0	32.7	37.5	26.4	16.8	15.9	10.6	7.7	-2.8	24.0	22.3	35.6	15.5
학대 상담	13,836	19,092	27,492	35,467	46,855	47,988	57,849	65,294	68,280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비율	83.5	86.4	87.3	86.6	87.1	85.6	86.0	86.3	85.9	86.9	85.3	83.4	79.9	79.8
증감률	-	38.0	44.0	29.0	32.1	2.4	20.5	12.9	4.6	5.3	9.0	5.2	7.8	14.9
계	16,568	22,098	31,480	40,952	53,789	56,087	67,232	75,672	79,457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	33.4	42.5	30.1	31.3	4.3	19.9	12.6	5.0	4.1	11.0	7.7	12.4	15.0



[그림 7-4]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비율)

5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연도별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가정 내 학대는 89.0%(4,616건)으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생활시설은 7.3%(380건)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이를 나타냈다.

[표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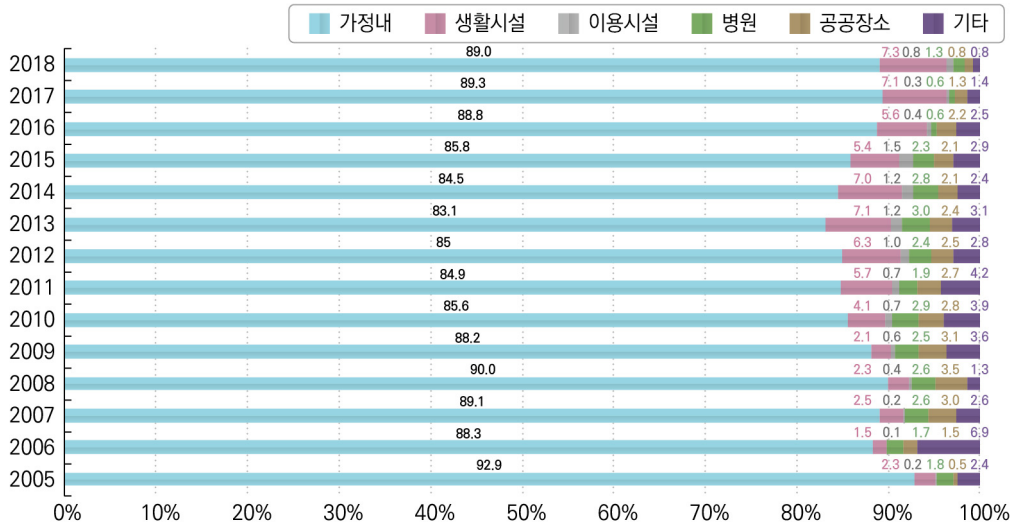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정내	1,893	2,008	2,060	2,132	2,358	2,625	2,921	2,909	2,925	2,983	3,276	3,799	4,129	4,616
	92.9	88.3	89.1	90.0	88.2	85.6	84.9	85.0	83.1	84.5	85.8	88.8	89.3	89.0
생활시설	46	33	58	55	55	127	196	216 ^{주1)}	251 ^{주2)}	246 ^{주3)}	206 ^{주4)}	238 ^{주4)}	327 ^{주4)}	380 ^{주4)}
	2.3	1.5	2.5	2.3	2.1	4.1	5.7	6.3	7.1	7.0	5.4	5.6	7.1	7.3
이용시설	5	3	5	9	16	22	24	35	42	44	57	16	16	41
	0.2	0.1	0.2	0.4	0.6	0.7	0.7	1.0	1.2	1.2	1.5	0.4	0.3	0.8
병원	36	38	59	61	66	88	65	83	107	100	88	24	27	65
	1.8	1.7	2.6	2.6	2.5	2.9	1.9	2.4	3.0	2.8	2.3	0.6	0.6	1.3
공공장소	10	34	70	82	83	87	92	86	86	74	80	94	58	42
	0.5	1.5	3.0	3.5	3.1	2.8	2.7	2.5	2.4	2.1	2.1	2.2	1.3	0.8
기타	48	158	60	30	96	119	143	95	109	85	111	109	65	44
	2.4	6.9	2.6	1.3	3.6	3.9	4.2	2.8	3.1	2.4	2.9	2.5	1.4	0.8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2005년~2012년)

2)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203건(5.7%)

3)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임. 동 경우를 가정 내 학대로 포함할 경우, 190건(5.4%)

4)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8년)



[그림 7-5]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6 •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생활시설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말한다. 생활시설 수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후 큰 폭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2008년 2,179개소 → 2017년 5,646개소³⁷⁾). 생활시설의 양적 증가에 따라 생활시설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생활시설 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380건(7.3%)으로 2017년 327건(7.1%)과 대비하여 16.2%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시점인 2009년(55건, 2.1%)과 비교하면 약 7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연도별 생활시설 학대 추이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시설	46	33	58	55	55	127	196	216	251	246	206	238	327	380
	2.3	1.5	2.5	2.3	2.1	4.1	5.7	6.3	7.1	7.0	5.4	5.6	7.1	7.3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37) 보건복지부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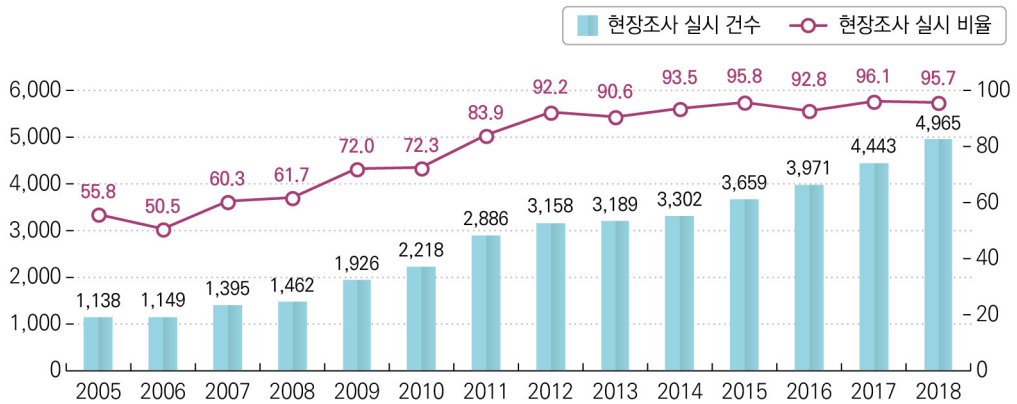
7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된 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방문을 의미한다.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02건(93.5%)에서 2018년 4,965건(95.7%)으로 2.2%p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현장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최근 5년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실시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7-7] 연도별 현장조사 실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장조사 실시	1,138	1,149	1,395	1,462	1,926	2,218	2,886	3,158	3,189	3,302	3,659	3,971	4,443	4,965
현장조사 미실시	900	1,125	917	907	748	850	555	266	331	230	159	476	179	223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6]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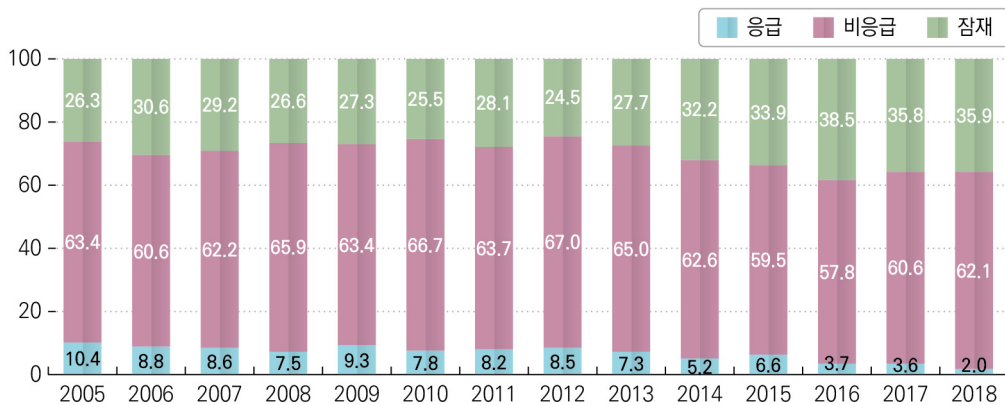
8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연도별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사례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응급 사례는 62.1%로 2015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잠재적 사례의 경우 2014년 대비 63.8%(14년 1,137건 → '18년 1,862건) 증가하였다.

[표 7-8]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응급	211	200	199	177	250	240	283	291	258	184	251	159	165	105
	10.4	8.8	8.6	7.5	9.3	7.8	8.2	8.5	7.3	5.2	6.6	3.7	3.6	2.0
비응급	1,292	1,377	1,438	1,561	1,694	2,045	2,192	2,294	2,288	2,211	2,271	2,472	2,803	3,221
	63.4	60.6	62.2	65.9	63.4	66.7	63.7	67.0	65.0	62.6	59.5	57.8	60.6	62.1
잠재	535	697	675	631	730	783	966	839	974	1,137	1,296	1,649	1,654	1,862
	26.3	30.6	29.2	26.6	27.3	25.5	28.1	24.5	27.7	32.2	33.9	38.5	35.8	35.9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7]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9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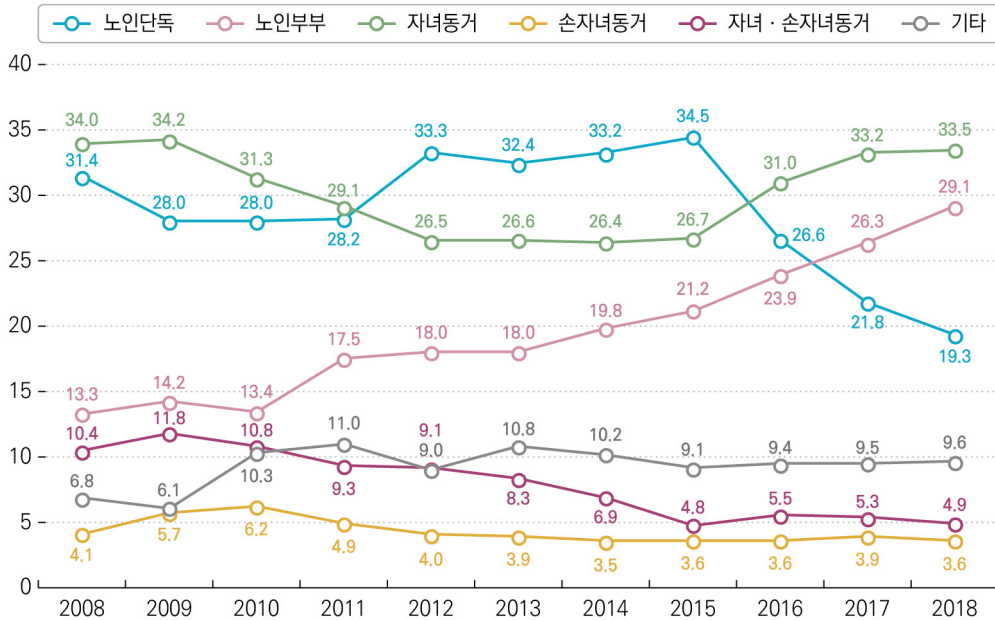
2018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33.5%로 가장 많고, 노인부부가구(29.1%) - 노인단독가구(19.3%) - 기타가구(9.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는 2012년 33.3%에서 2015년 34.5%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19.3%로 감소하였다. 노인부부가구는 2014년 19.8%에서 2018년 29.1%로 9.3%p 증가하였고,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2014년 26.4%까지 감소하였다가 2018년 33.5%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7-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인단독	743	750	858	970	1,140	1,141	1,172	1,318	1,140	1,007	999
	31.4	28.0	28.0	28.2	33.3	32.4	33.2	34.5	26.6	21.8	19.3
노인부부	315	379	412	603	618	635	701	808	1,023	1,216	1,512
	13.3	14.2	13.4	17.5	18.0	18.0	19.8	21.2	23.9	26.3	29.1
자녀동거	806	914	960	1,003	909	937	932	1,021	1,328	1,536	1,738
	34.0	34.2	31.3	29.1	26.5	26.6	26.4	26.7	31.0	33.2	33.5
손자녀동거	97	153	190	167	136	137	123	139	154	178	187
	4.1	5.7	6.2	4.9	4.0	3.9	3.5	3.6	3.6	3.9	3.6
자녀·손자녀 동거	247	315	331	321	312	291	244	185	234	245	252
	10.4	11.8	10.8	9.3	9.1	8.3	6.9	4.8	5.5	5.3	4.9
기타	161	163	317	377	309	379	360	347	401	440	500
	6.8	6.1	10.3	11.0	9.0	10.8	10.2	9.1	9.4	9.5	9.6
계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8]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변화

10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2018년 학대행위자 중 아들의 비율은 2017년 37.5%에 비해 0.3%p 감소한 37.2%를 차지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배우자의 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2005년 6.5%였던 것이 2018년에는 27.5%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례는 2017년 290명(5.7%)에서 2018년에는 240명(4.2%)으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한 반면,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201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도 134명(2.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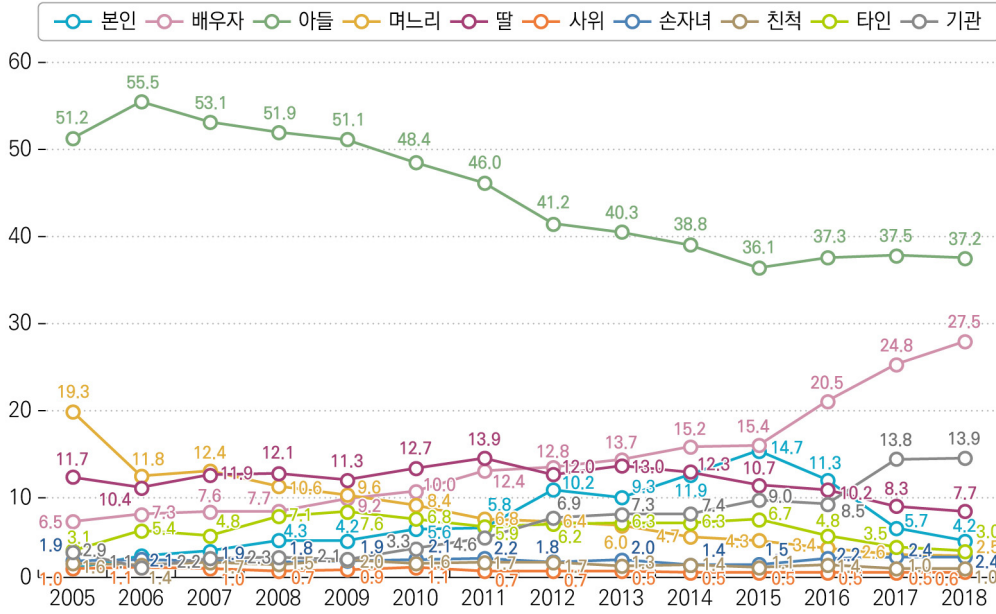
시설학대 증가와 함께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85명(7.4%) 대비 2018년 788명(13.9%)으로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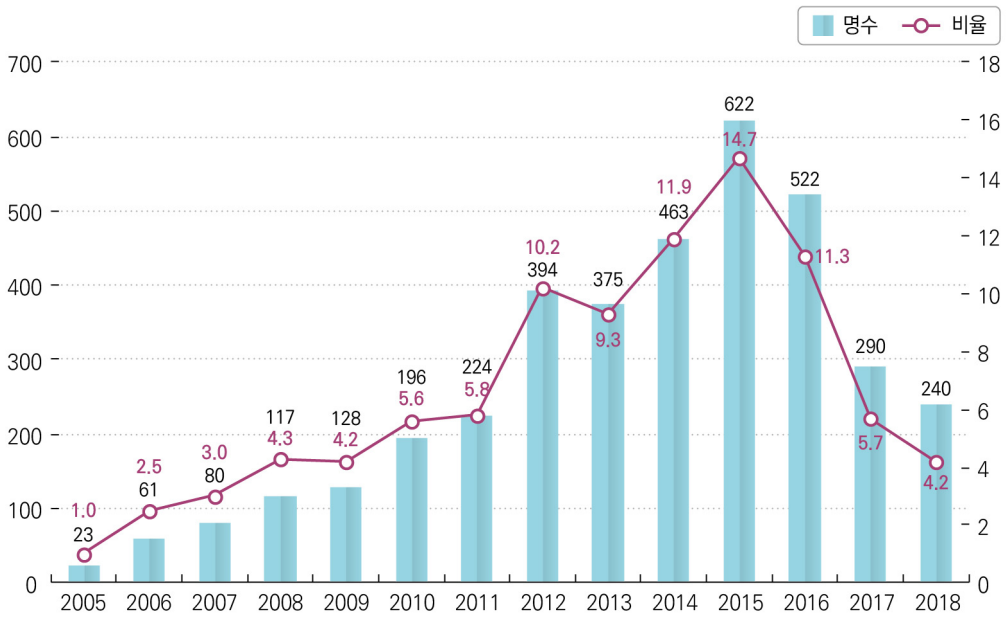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본인	23	61	80	117	128	196	224	394	375	463	622	522	290	240
	1.0	2.5	3.0	4.3	4.2	5.6	5.8	10.2	9.3	11.9	14.7	11.3	5.7	4.2
배우자	156	184	200	210	279	347	481	494	551	588	652	952	1,263	1,557
	6.5	7.3	7.6	7.7	9.2	10.0	12.4	12.8	13.7	15.2	15.4	20.5	24.8	27.5
아들	1,237	1,393	1,399	1,416	1,544	1,686	1,777	1,586	1,619	1,504	1,523	1,729	1,913	2,106
	51.2	55.5	53.1	51.9	51.1	48.4	46.0	41.2	40.3	38.8	36.1	37.3	37.5	37.2
며느리	466	296	328	290	291	293	263	248	240	184	183	157	131	143
	19.3	11.8	12.4	10.6	9.6	8.4	6.8	6.4	6.0	4.7	4.3	3.4	2.6	2.5
딸	283	260	315	330	342	441	538	463	519	476	451	475	424	436
	11.7	10.4	11.9	12.1	11.3	12.7	13.9	12.0	13.0	12.3	10.7	10.2	8.3	7.7
사위	25	26	27	20	28	37	25	27	28	18	21	23	27	34
	1.0	1.1	1.0	0.7	0.9	1.1	0.7	0.7	0.7	0.5	0.5	0.5	0.5	0.6
손자녀	45	52	51	50	58	73	87	69	81	56	64	103	124	134
	1.9	2.1	1.9	1.8	1.9	2.1	2.2	1.8	2.0	1.4	1.5	2.2	2.4	2.4
친척	38	36	46	42	59	55	64	67	54	56	46	63	49	59
	1.6	1.4	1.7	1.5	2.0	1.6	1.7	1.7	1.3	1.4	1.1	1.4	1.0	1.0
타인	75	136	127	193	228	237	228	239	253	246	283	221	176	168
	3.1	5.4	4.8	7.1	7.6	6.8	5.9	6.2	6.3	6.3	6.7	4.8	3.5	3.0
기관	70	28	59	62	62	115	179	267	293	285	379	392	704	788
	2.9	1.1	2.2	2.3	2.1	3.3	4.6	6.9	7.3	7.4	9.0	8.5	13.8	13.9
파악 안됨	-	36	4	-	-	-	-	-	-	-	-	-	-	-
	-	1.4	0.2	-	-	-	-	-	-	-	-	-	-	-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3,480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7장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05~2018년)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인과의 관계



[그림 7-10]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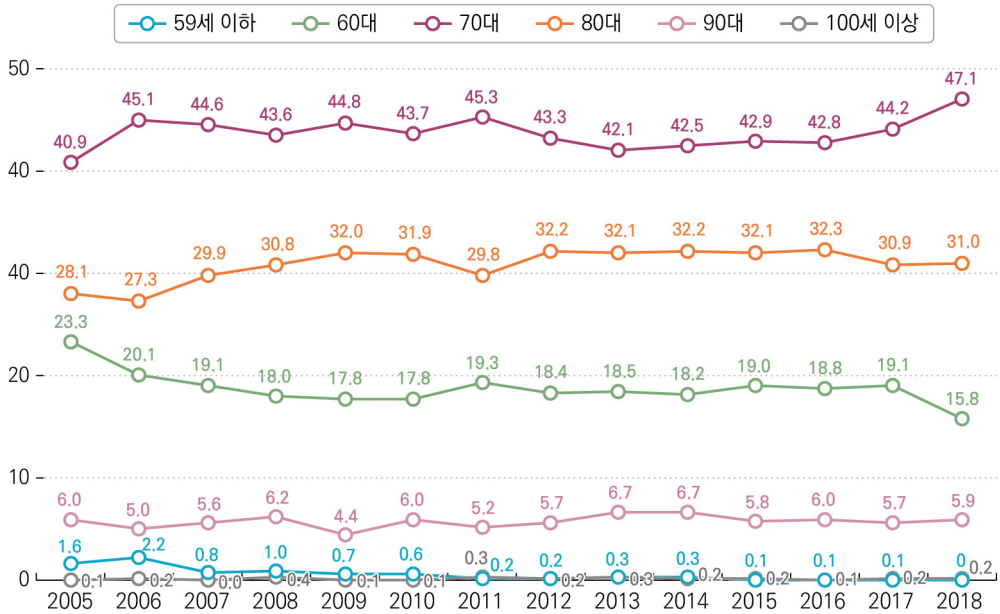
11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를 보면 전체적인 추이는 연도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세 미만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70대에서는 소폭 증가추이를 보였다.

[표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9세 이하	33	51	19	23	20	17	8	8	12	9	3	5	4	-
	1.6	2.2	0.8	1.0	0.7	0.6	0.2	0.2	0.3	0.3	0.1	0.1	0.1	-
60~64세	114	169	127	126	151	153	214	188	189	191	204	213	141	-
	5.6	7.4	5.5	5.3	5.6	5.0	6.2	5.5	5.4	5.4	5.3	5.0	3.1	-
65~69세	361	289	314	300	326	392	451	443	462	452	524	589	740	819
	17.7	12.7	13.6	12.7	12.2	12.8	13.1	12.9	13.1	12.8	13.7	13.8	16.0	15.8
70~74세	418	573	547	511	574	681	752	726	728	654	771	852	969	1,193
	20.5	25.2	23.7	21.6	21.5	22.2	21.9	21.2	20.7	18.5	20.2	19.9	21.0	23.0
75~79세	416	452	483	522	624	660	804	755	753	846	865	978	1,071	1,250
	20.4	19.9	20.9	22.0	23.3	21.5	23.4	22.1	21.4	24.0	22.7	22.9	23.2	24.1
80~84세	389	381	457	437	542	599	618	701	712	716	770	881	900	1,020
	19.1	16.8	19.8	18.4	20.3	19.5	18.0	20.5	20.2	20.3	20.2	20.6	19.5	19.7
85~89세	183	239	234	294	314	379	405	399	420	421	456	499	525	588
	9.0	10.5	10.1	12.4	11.7	12.4	11.8	11.7	11.9	11.9	11.9	11.7	11.4	11.3
90~94세	101	98	100	108	91	147	134	165	193	191	163	206	204	245
	5.0	4.3	4.3	4.6	3.4	4.8	3.9	4.8	5.5	5.4	4.3	4.8	4.4	4.7
95~99세	20	17	30	39	28	38	46	31	42	46	56	53	58	61
	1.0	0.7	1.3	1.6	1.0	1.2	1.3	0.9	1.2	1.3	1.5	1.2	1.3	1.2
100세 이상	3	5	1	9	4	2	9	8	9	6	6	4	10	12
	0.1	0.2	0.0	0.4	0.1	0.1	0.3	0.2	0.3	0.2	0.2	0.1	0.2	0.2
계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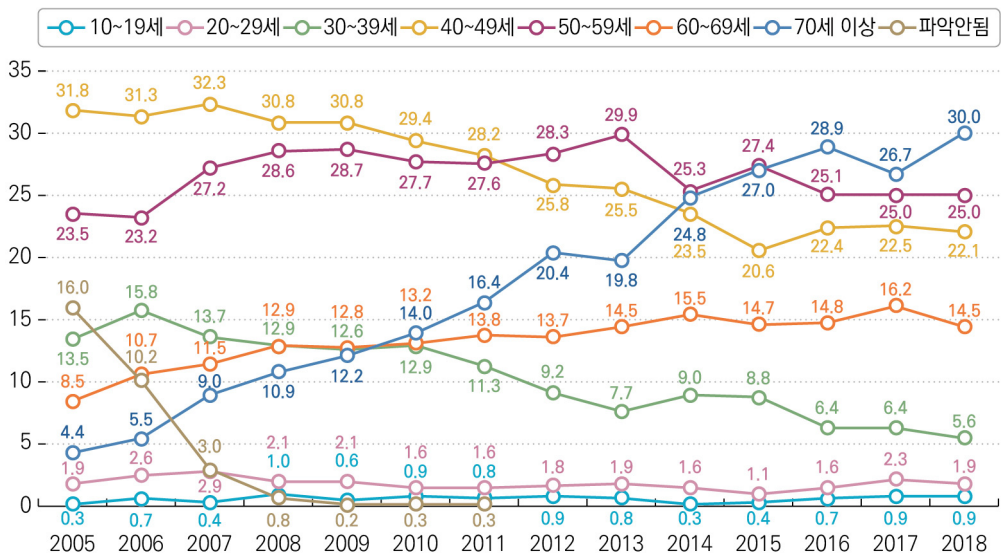
12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2018년 학대행위자의 연령대 현황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701건(3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0~59세가 1,414건(25.0%)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성인자녀 등에 의한 학대 발생 비율이 높았던 이전과는 달리, 갈수록 노(老)-노(老)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19세	7	18	11	26	19	32	30	34	31	12	18	33	46	50
	0.3	0.7	0.4	1.0	0.6	0.9	0.8	0.9	0.8	0.3	0.4	0.7	0.9	0.9
20~29세	46	65	77	57	62	55	61	69	75	63	46	76	115	105
	1.9	2.6	2.9	2.1	2.1	1.6	1.6	1.8	1.9	1.6	1.1	1.6	2.3	1.9
30~39세	327	396	361	353	381	449	436	353	310	347	372	296	325	318
	13.5	15.8	13.7	12.9	12.6	12.9	11.3	9.2	7.7	9.0	8.8	6.4	6.4	5.6
40~49세	770	783	851	841	930	1,022	1,090	993	1,022	911	870	1,040	1,150	1,253
	31.8	31.3	32.3	30.8	30.8	29.4	28.2	25.8	25.5	23.5	20.6	22.4	22.5	22.1
50~59세	569	583	718	781	866	964	1,068	1,091	1,201	981	1,156	1,166	1,275	1,414
	23.5	23.2	27.2	28.6	28.7	27.7	27.6	28.3	29.9	25.3	27.4	25.1	25.0	25.0
60~69세	205	268	302	353	386	460	536	528	580	602	622	687	827	824
	8.5	10.7	11.5	12.9	12.8	13.2	13.8	13.7	14.5	15.5	14.7	14.8	16.2	14.5
70세 이상	107	139	236	298	369	484	633	786	794	960	1,140	1,339	1,363	1,701
	4.4	5.5	9.0	10.9	12.2	14.0	16.4	20.4	19.8	24.8	27.0	28.9	26.7	30.0
파악안됨	387	256	80	21	6	12	12	-	-	-	-	-	-	-
	16.0	10.2	3.0	0.8	0.2	0.3	0.3	-	-	-	-	-	-	-
계	2,418	2,508	2,636	2,730	3,019	3,478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림 7-12]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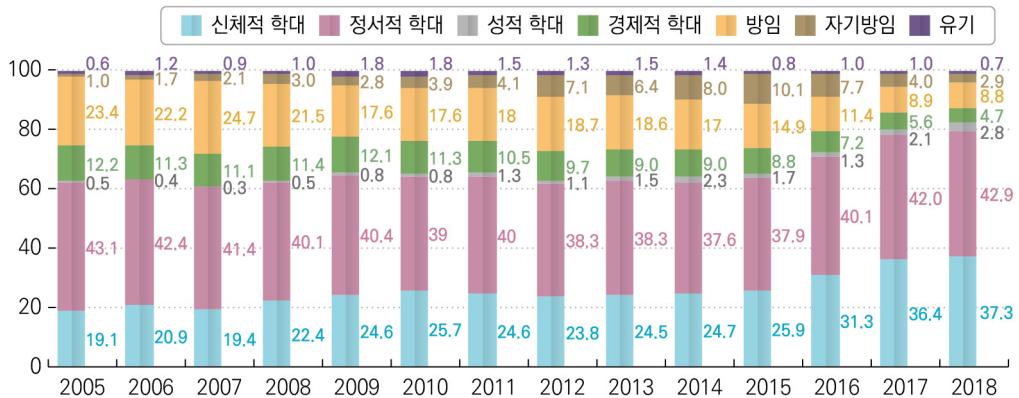
13 •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연도별 학대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2014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2.8%(228건)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방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13]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체적 학대	665 19.1	768 20.9	739 19.4	874 22.4	1,127 24.6	1,304 25.7	1,419 24.6	1,326 23.8	1,430 24.5	1,426 24.7	1,591 25.9	2,132 31.3	2,651 36.4	3,046 37.3
정서적 학대	1,499 43.1	1,557 42.4	1,577 41.4	1,561 40.1	1,853 40.4	1,981 39.0	2,307 40.0	2,134 38.3	2,235 38.3	2,169 37.6	2,330 37.9	2,730 40.1	3,064 42.0	3,508 42.9
성적 학대	18 0.5	15 0.4	12 0.3	20 0.5	37 0.8	39 0.8	72 1.3	63 1.1	90 1.5	131 2.3	102 1.7	91 1.3	150 2.1	228 2.8
경제적 학대	425 12.2	415 11.3	422 11.1	446 11.4	554 12.1	574 11.3	607 10.5	540 9.7	526 9.0	521 9.0	542 8.8	491 7.2	411 5.6	381 4.7
방임	816 23.4	816 22.2	941 24.7	839 21.5	806 17.6	891 17.6	1,038 18.0	1,042 18.7	1,087 18.6	984 17.0	919 14.9	778 11.4	649 8.9	718 8.8
자기방임	36 1.0	61 1.7	80 2.1	117 3.0	129 2.8	196 3.9	236 4.1	394 7.1	375 6.4	463 8.0	622 10.1	523 7.7	291 4.0	240 2.9
유기	22 0.6	43 1.2	34 0.9	40 1.0	82 1.8	91 1.8	86 1.5	71 1.3	89 1.5	78 1.4	48 0.8	66 1.0	71 1.0	55 0.7
계	3,481 100	3,675 100	3,805 100	3,897 100	4,588 100	5,076 100	5,765 100	5,570 100	5,832 100	5,772 100	6,154 100	6,811 100	7,287 100	8,176 100



[그림 7-13]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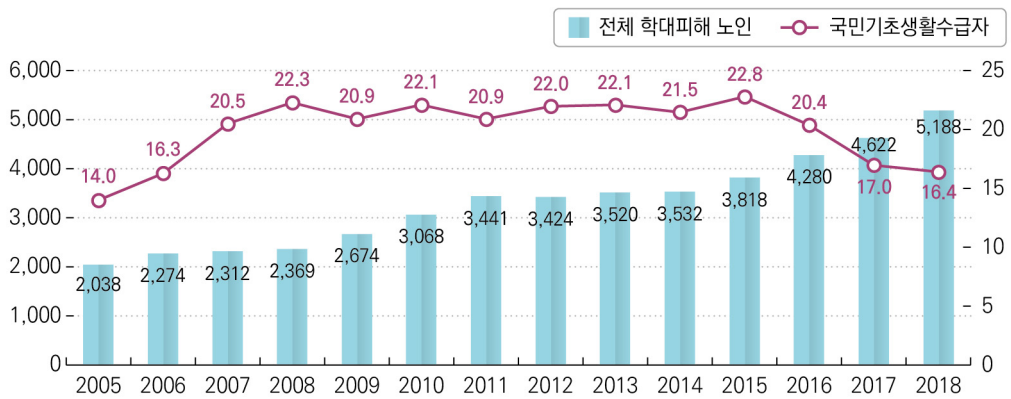
14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70명에서 2018년 851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중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20%대였으나 2018년에는 16.4%로 감소하였다.

[표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285	370	474	528	559	679	719	753	778	758	870	871	785	851
	14.0	16.3	20.5	22.3	20.9	22.1	20.9	22.0	22.1	21.5	22.8	20.4	17.0	16.4
전체 학대피해 노인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그림 7-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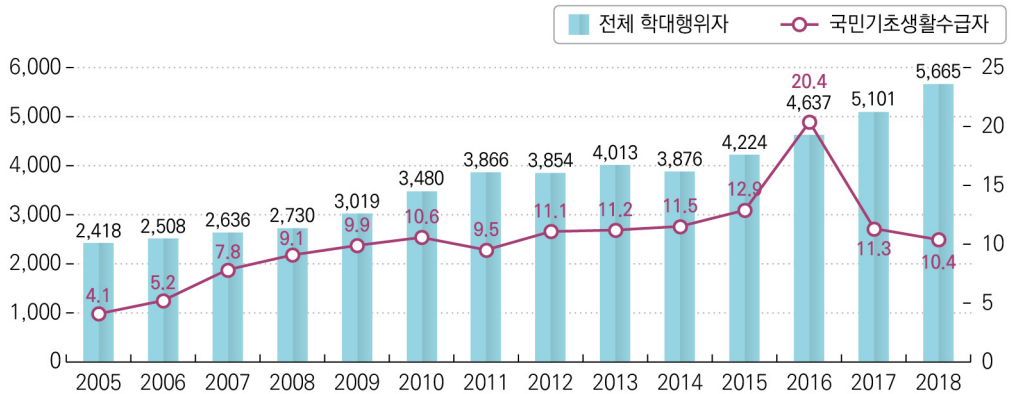
15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연도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는 1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100	130	206	248	300	369	367	429	449	445	546	947	575	591
전체 학대행위자	2,418	2,508	2,636	2,730	3,019	3,480	3,866	3,854	4,013	3,876	4,224	4,637	5,101	5,665



[그림 7-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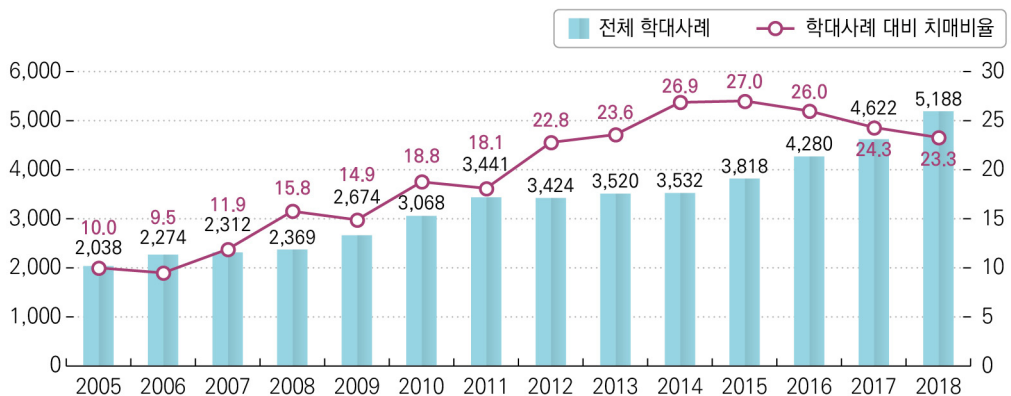
16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진단과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객관적, 주관적 정보와 함께 치매간이조사지표³⁸⁾를 활용하여 치매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치매의심으로 분류된다.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2014년 949건에서 2018년 1,207건으로 27.2% 증가하였다.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단위: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학대사례	2,038	2,274	2,312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치매 정도	치매 의심	157	159	174	248	264	386	389	452	459	488	561	593	488	507
	치매 진단	47	56	102	126	135	191	233	330	372	461	469	521	634	700
	계	204	215	276	374	399	577	622	782	831	949	1,030	1,114	1,122	1,207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10.0	9.5	11.9	15.8	14.9	18.8	18.1	22.8	23.6	26.9	27.0	26.0	24.3	23.3	



[그림 7-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38)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version of MMSE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제8장 결 론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2.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3.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제8장 결론

1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모든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학대 여부, 응급성 정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등의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접수의 단계는 접수된 사례를 학대사례 혹은 일반사례로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의 실태와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신고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5,482건으로, 전년도 대비 16.3%(13,309건 → 15,482건)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의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 대비 전체 신고건수는 46.5%(10,569건 → 15,482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학대사례는 46.9%(3,532건 → 5,188건), 일반사례는 46.3%(7,037건 → 10,294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학대사례의 비중이 12.2%(4,622 → 5,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 건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발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신고경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된 긴급 신고전화(110, 112, 129)에 의해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노인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2018년에도 경로를 대폭 확장하였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112와 같은 익숙한 번호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의 경우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노인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³⁹⁾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2004년 노인학대 관련 법 개정 당시 5개 직업군에서 2011년 8개 직업군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10월 이어 2018년 3월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17개 직업군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018년 신고접수 된 5,188건의 학대사례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767건으로 전체의 14.8%로 집계되었다. 신고의무자 세부유형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1.9% (398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인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구급대 대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등은 0.1%(1건), 0.3%(2건), 0.1%(1건) 등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의 직군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주 이용자가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노인이라는 특정계층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를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로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족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정이나 취약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거나 은폐되어 왔던 학대사례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응급구조사와 의료기사, 구급대의 대원 또한 학대피해노인이 병원을 내원하거나 학대피해로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했을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학대 발생 징후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고의무자 집단은 노인학대사례에 접근성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신고의무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대사례의 조기발견 및 사례발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4,421건으로 전체의 85.2%로 집계되었다. 비신고의무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비신고의무자는 전체의

3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노인복지법 제61조의2).

77.0%(3,402건)를 차지한 관련기관으로, 사회복지관련, 경찰, 관련 민간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발굴을 위한 각 지역기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인 지킴이단 등에 의한 신고를 뜻한다. 뒤이어 친족에 의한 신고가 10.7%(472건),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8.8%(387건),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동거인, 친구 등 타인이 신고한 비율이 3.5%(156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의무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사태에 대한 민감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상담횟수

2018년 노인학대 전체 상담횟수는 127,965회로 학대상담 횟수가 102,172회(79.8%), 일반상담은 25,793회(20.2%)로 나타났다.

학대상담의 경우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의 여러 단계에 걸쳐 상담이 진행되는 반면 일반상담의 경우 단순 정보제공의 경우가 많아 한 사례당 1~2회의 상담이 대부분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상담횟수는 학대상담 평균 19.7회, 일반상담 평균 2.5회로 나타났다.

2 •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학대 유형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등으로 분류된다.

2018년 집계된 노인학대 유형은 총 8,176건으로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한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을 중복으로 집계한 것이다. 보통 학대 유형은 한 가지 학대만 발생되기 보다는 다른 학대 유형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중복 집계된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3,508건(42.9%), 신체적 학대 3,046건(37.3%), 방임 718건(8.8%)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8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 381건(4.7%), 자기방임 240건(2.9%), 성적 학대 228건(2.8%), 유기 55건(0.7%) 등이 있다.

특히 자기방임 유형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통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노인단독가구의 연도별 자기방임 유형건수를 비교해보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⁴⁰⁾.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자기방임 유형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노인단독가구의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학대발생원인

① 학대행위자 원인

학대행위자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9,591건 중 개인의 내적문제가 3,171건(3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의 외적문제가 1,728건(18.0%)으로 나타나, 학대 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원인이 51.1%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신적 의존성이 1,218건(12.7%),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가 1,159건(12.1%),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한 원인이 1,157건(12.1%) 등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의 성격문제를 포함한다. 개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부양부담 스트레스 외), 실직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및 약물장애는 알코올 및 약물의 중독이나 의존을 의미하며, 정신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이 있다.

경제적 의존성으로는 학대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피해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피해노인 부양부담은 학대피해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의미한다. 과거 학대받은 경험은 학대행위자가 아동이었을 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40) 노인단독가구의 자기방임 학대 유형 비율은 '16년(414건, 26.8%), '17년(236건, 16.9%), '18년(187건, 13.7%)이다.

② 가족 - 환경 원인

가족 - 환경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발생원인 5,045건으로 그 중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갈등이 3,064건(6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피해자와의 갈등관계가 학대발생의 주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은 1,268건(25.1%),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713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자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자녀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문제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 학대발생빈도 및 학대지속기간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번 이상 1,574건(30.3%), 1개월에 한번 이상 1,434건(27.6%), 일회성 720건(13.9%), 매일 689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빈도 중 일회성을 제외하고 보면, 한 달 이내의 학대발생 빈도가 71.2%로 대다수의 학대피해노인이 반복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1,738건(33.5%), 1년 이상 5년 미만인 1,696건(32.7%)으로 학대발생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66.2%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장소는 학대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를 보면 가정 내 학대는 학대피해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이 행하는 학대를 의미한다. 생활시설 학대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하며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기타 재가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말한다.

2018년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건수가 4,616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89.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의 증가가 시설학대 건수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작년 대비 9.9% 증가(292건 → 321건)한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8.6% 증가(35건 → 59건)하였다.

2)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및 연령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노인이 3,835명(73.9%), 남성노인이 1,353명(26.1%)으로 나타나며, 연령분포는 70~80대(남성노인 81.4%, 여성노인 7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85세 이상 고령의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이 214명(4.1%), 여성노인이 692명(13.3%)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령의 여성노인일수록 남성노인에 비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 가구형태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부부가구가 1,512(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노인단독가구('17년 1,007명, 21.8% → '18년 999명, 19.3%)는 전년대비 2.5%p 감소한 반면, 노인부부가구('17년 1,216명, 26.3% → '18년 1,512명, 29.1%)는 2.8%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세부구성 비율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전체 비율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도 전체 학대사례의 약 48.4%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다. 노인부부가구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노인단독가구로 전환될 경우 방임 등의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형태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거형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는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무상으로 구분되며, 피해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어 노인을 둘러싼

내·외부 자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본인명의로 된 집에서 사는 학대피해노인이 3,113명(6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가 581명(11.2%), 월세가 467명(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1인이 사는 단독가구의 주거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택(45.6%) - 월세(17.0%) - 전세(9.9%)의 순으로 나타났다⁴¹⁾.

▣ 교육정도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무학 및 초졸 이하가 73.8%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20~5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노인들이 시대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마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순히 낮은 교육수준이 노인학대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발생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건강상태

① 학대피해노인의 질병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의 건수는 4,312건이며 세부 질병 유형을 보면 고혈압 966건(22.4%), 관절염 718건(16.7%), 기타 700건(16.2%), 당뇨병 522건(12.1%)으로 나타나 노인성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대피해노인이 중복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② 학대피해노인의 장애유형

2018년 학대피해노인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548명(10.6%)으로, 이 중 89.6%(491명)가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장애는 68.6%(376건), 정신장애 31.4%(172건)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28.1%(15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우울장애 22.6%(124건), 청각장애 14.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41) 2017년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는 자택(44.4%) - 월세(19.8%) - 전세(10.2%) 순이다.

③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과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실시한 치매간이조사지표의 결과 또는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매로 분류된 사례는 전체 학대피해건수 중 1,20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3.3%이다. 2017년 24.3%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전년대비 7.6% 증가, 1,122건 → 1,207건). 이 중 507건(9.8%)은 치매의심이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700건(13.5%)이다.

④ 학대피해노인의 중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등이 해당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알코올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약물 사용 장애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중독유형은 62건(1.2%)이었으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제공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상담서비스는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가족지원서비스, 재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 연결, 후원 연결, 직접 후원 등을 말한다. 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 연결, 법률 소송 지원,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로 분류되며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송,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방문간호 등의 연계, 이송 및 동행 지원과 의료비 지급이 해당된다. 보호서비스는 지킴이 연결, 시설보호, 일시보호 등이 있다.

2018년 접수된 학대사례 중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제공서비스는 총 145,552회이며 상담서비스가 84,346회(57.9%)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서비스가 48,988회(33.7%), 복지서비스 제공이 9,691회(6.7%) 순으로 나타났다.

3)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대

2018년 학대행위자 수는 5,665명으로 남성은 4,008명(70.8%)이며 여성은 1,657명(29.2%)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약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1,402명(35.0%), 여성 학대행위자는 50대가 476명(28.7%)으로 가장 많았다.

▣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는 친족, 피해자 본인, 타인, 기관으로 분류된다. 친족은 다시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며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학대행위자 전체 5,665명과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이 4,469명(78.9%), 기관 788명(13.9%), 피해자 본인 240명(4.2%), 타인 168명(3.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대행위자가 친족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이 2,106명(3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배우자 1,557명(27.5%), 딸 436명(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비율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부부간의 학대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결혼유형

학대행위자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3,402명(60.1%), 배우자 없음이 2,263명(39.9%)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초혼이 3,089명(54.5%)으로 가장 많고, 미혼은 1,354명(23.9%), 이혼이 624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도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행위자 중 5,665명 중 고졸이 39.1%인 2,2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1,137명(20.1%)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졸 이하는 2,311명(40.8%)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

① 장애유형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766명(13.5%)의 학대행위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신체장애가 26.6%(204명), 정신장애가 73.4%(562건)를 차지하였다. 특히 정신장애 중에서도 정신분열이 239명(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가 177명(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중독유형

전체 학대행위자 5,665명 중 949명(16.8%)이 알코올 등의 중독이 있으며, 이는 학대피해 노인(62건, 1.2%)에 비하며 약 15배정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887명(15.7%), 도박중독은 32명(0.6%), 약물 사용 장애 30명(0.5%) 순이다.

▣ 제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2018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7,464회로 상담서비스의 경우 총 15,422회(56.2%)를 제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예방교육 및 기타 정보제공에 관한 정보제공서비스는 11,026회(4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직접 후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852회(3.1%), 의료서비스가 151회(0.5%), 법률서비스가 13회(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3 · 특성별 노인학대 사례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사례

2018년 신고된 전체 신고건수 15,482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46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650건(4.2%)으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으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504건(3.3%), 가정폭력관련 종사자가 98건(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로 판정된 5,188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67건이며, 이 중 비응급 사례가 444건(57.9%), 잠재적 사례가 301건(39.2%), 응급 사례가 22건(2.9%)로 나타나 비응급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 된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321건, 30.1%) - 방임 251건 (23.6%) - 신체적 학대(237건, 2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 신고건수의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이 가정 내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 복지상담원의 경우 생활시설이나 기타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하는 등 타 직군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학대발생빈도에 있어서는 매일 혹은 1주일에 한번 이상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학대사례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약 18.4%p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회성이거나 학대발생빈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약 18.5%p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대지속기간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등 장기간 지속된 학대일 때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약 9.6%p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발생한 학대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보다 약 15.5%p 높았다.

2) 재학대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를 의미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4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5,188건 중 9.4%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35.9% 증가하였다. 재학대 발생여부는 사례 종결의 적절성, 종결사유, 사후관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종결 이후 원가정 및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시설 혹은 병원 입소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향성을 둔 분석을 통해 재학대 감소에 대한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학대 사례의 주요 신고자는 전체의 92.2%를 차지한 비신고의무자로 나타났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도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사례(6.8%)보다 재학대 사례(13.7%)에서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사례 신고비율(65.3%)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68.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개입 경험을 통해 노인학대의 개념과 신고방법 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성별비율(남성노인 20.9%, 여성노인 79.1%)은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비율(남성노인 26.1%, 여성노인 73.9%)과 비교했을 때도 여성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의 경우 80대 이상의 고령 재학대 피해노인은 남성노인이 46.1%, 여성노인이 34.3%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고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의 경우 자녀동거가구(228건, 46.7%) - 노인부부가구(140건, 28.7%) - 노인단독가구(58건, 11.9%)의 순이었다. 신규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가 자녀동거가구(1,510건, 32.1%) - 노인부부가구(1,372건, 29.2%) - 노인단독가구(941건, 20.0%)인 것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가 신규사례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규사례의 학대행위자 유형이 아들(1,862건, 36.1%) - 배우자(1,398건, 27.1%) - 기관(782건, 15.1%) 순인 반면, 재학대 사례는 아들(244건, 48.8%) - 배우자(159건, 31.8%) - 딸(39건, 7.8%) 순으로 높았다. 특히 재학대의 경우 기관의 비율이 신규사례보다 13.9%p 차이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발생원인을 제거하였거나 혹은 행정처분 등의 처벌로 인해 재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48.9%(202명)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37.0%(153명)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 사례보다(1,465명, 37.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394건, 49.6%) - 신체적 학대(316건, 39.8%) - 방임(37건, 4.7%)로 나타나 전체 노인학대 건수와 유사하게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장소의 경우 가정 내 학대가 480건(98.4%)으로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88.0%)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주일에 한번 이상(33.0%)처럼 잦

은 횡수로 발생하는 학대가 신규사례(30.1%)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대지속기간 또한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된 비율이 신규사례(64.5%)에 비해 재학대 사례(82.0%)가 17.5%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 사례가 신규사례에 비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잦은 횡수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40~50대 학대행위자 중 아들인 경우가 79.0%를 차지하였으며, 재학대 행위자의 약 28.4%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단독가구 현황

2018년 노인단독가구는 999건(19.3%)으로 전년도 1,007건(21.8%)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였다. 노인단독가구 형태의 학대피해노인 연령대의 경우 70대가 419명(41.9%)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401명(40.1%), 60대 106명(10.3%), 90대 이상 73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은 전체 999명 중 29.1%(29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형태는 자택이 45.6%(456건)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 상태는 보통(53.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학대피해노인 질병 유형은 총 955건으로 고혈압 223건(23.4%), 관절염 152건(15.9%), 기타 147건(15.4%), 당뇨병 121건(12.7%) 등 장기간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학대피해노인도 노인단독가구 999명 중 371명(37.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단독가구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매일 학대가 발생하며 그 지속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92건(38.3%), 5년 이상이 67건(27.9%)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이상 학대피해가 지속된 노인단독가구의 10명 중 6명(66.2%)이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등 장기간 학대피해를 받은 그룹의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32.5%)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설학대 현황

전체 학대건수 5,188건 중 421건(7.3%)는 시설학대이고, 성별을 구분하여 보면 여성노인은 282명(67.0%), 남성노인은 139명(33.0%)으로 나타나 여성 학대피해노인이 남성 학대피해

노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40.6%(171건)가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 일회성 28.3%(119건), 매일 19.0%(8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을 합하면 59.6%(251건)로 생활시설 학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타 시설에 비해 학대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 발생하며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59.5%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즉 한번 발생한 시설학대의 경우에는 그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설학대의 학대 유형은 총 534건으로 중복집계 되었으며, 방임이 242건(45.3%), 성적 학대 138건(25.8%), 신체적 학대 107건(20.0%) 순으로 나타났고, 2017년도 시설학대의 학대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⁴²⁾.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모두 방임이 각각 164건(40.0%), 48건(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의 학대행위자는 총 716명으로, 여성이 585명(81.7%), 남성이 131명(18.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남성 및 여성 모두 50대가 각각 52명(39.7%), 215명(36.8%)으로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老) - 노(老)학대 현황

연도별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562건에서 2018년 2,051건으로 5년 간 31.3% 증가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학대행위자의 증가율이 46.2%(3,876건→5,665건)와 비교하면 노(老) - 노(老)학대의 증가율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전체 학대행위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 학대행위자가 아들 - 배우자 - 기관 순이었다면, 노(老) - 노(老)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고령의 부부간 배우자(1,474건, 71.8%), 학대피해노인 본인(240건, 11.7%)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42) 2017년 시설학대의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148건(32.6%), 방임 144건(31.7%), 성적 학대 80건(17.6%)의 순이다.

6)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 현황

2018년 전체 노인학대 5,188건 중 치매노인은 1,207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노인은 884명(73.2%)이고, 남성노인은 323명(26.8%)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연령대는 80대가 569명(4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가 403명(3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의 경우 방임(449건, 26.5%) - 신체적 학대(448건, 26.4%) - 정서적 학대(445건, 26.2%)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유형과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25건(68.4%)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90건(24.0%)인 생활시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발생빈도의 경우 1주일에 한번 이상이 337건(27.9%)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이 296건(24.5%), 1개월에 한번 이상이 241건(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407건(3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22건(26.7%)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다수의 치매노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의 경우 친족이 779건(49.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이 631건(4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친족의 세부 유형으로는 아들(422건, 26.8%) - 배우자(141건, 9.0%) - 딸(125건, 7.9%)의 순으로 나타나 직계가족인 자녀가 친족의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 학대행위자가 친족(401건, 72.6%)인 반면,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기관(575건, 56.2%)이 주 학대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학대행위자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앞서 언급한 부양부담과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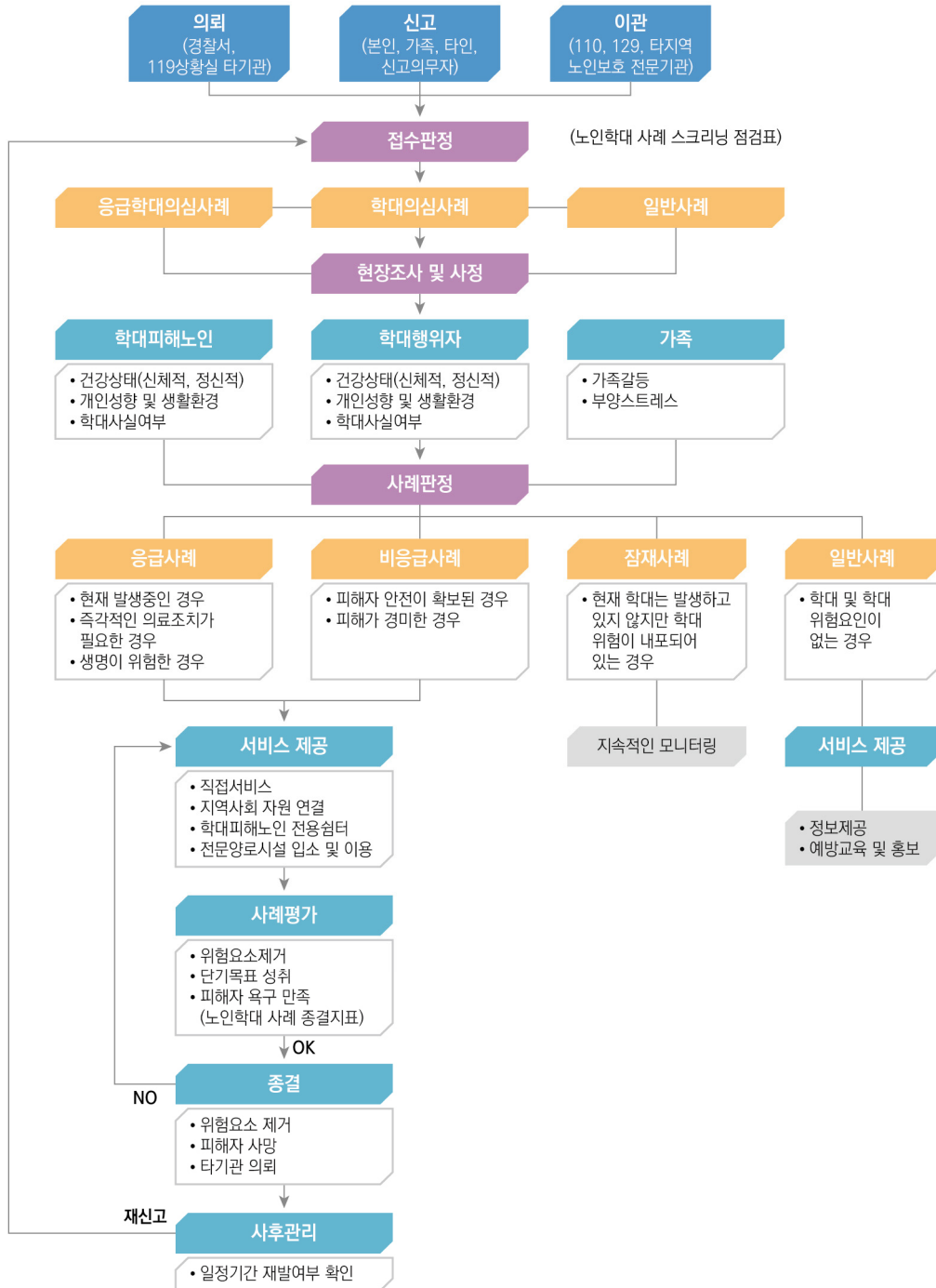
제9장 부 록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9.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02)3667-1389	www.noinboho.or.kr
서울특별시 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 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수유3동)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02)3157-6389	www.sw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051)441-8359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www.ic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042)472-1390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오산2길 28-2, 1층	052)265-1389 052)265-1380	www.us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3층	031)268-1389	www.gepa.co.kr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8 수정노인종합복지관 2층	031)736-1389	www.k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7	031)821-1461	www.gnnoin.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종로 68, 2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033)253-1389	www.1389.or.kr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신봉동) 3층 사무실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 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지현동 1498번지)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모종동)	041)534-1389 041)534-9222	www.cn1389.or.kr
충청남도 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041)734-1398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광동빌딩 3층	063)443-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2-3071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 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남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문화북4길(평화동) 금강노인복지관C동 2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 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동홍동)	064)763-1999	http://sgpnoin.org/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19년 6월

발 행 일 : 2019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이기민

편집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허민지, 김재인, 이해숙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